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2월
박사학위 논문

통일 이후 안정적 국가통합을 위한
북한군 수용문제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김 영 찬

통일 이후 안정적 국가통합을 위한
북한군 수용문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ccommodation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to
Facilitate a Stable Integration Process offer Unification

2017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김 영 찬

통일 이후 안정적 국가통합을 위한
북한군 수용문제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오 수 열

이 논문을 군사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김 영 찬

김영찬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재철(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관수(인)
위원	동신대학교	교수	고재휘(인)
위원	송원대학교	교수	이성춘(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수열(인)

2016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 목차, 도 목차	iv
ABSTRACT	viii
제 1장 서 론	1
제 1절 연구의 목적	1
제 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1. 연구의 방법	4
2. 연구의 범위	5
제 3절 선행연구의 검토	8
제 2장 이론적 배경	16
제 1절 통합의 개념과 유형	16
1. 통합의 개념	16
2. 통합의 유형	19
3. 기능주의 통합이론	20
제 2절 군사통합 개념과 유형	22
1. 군사통합의 개념	22
2. 군사통합의 유형	24
제 3절 분석의 틀	28

제 3장 주요국가의 군사통합 및 군 수용사례.....	30
제 1절 베트남.....	30
1. 분단 및 통일과정.....	30
2. 국가통합과정.....	34
3. 군사통합 및 군(軍)수용사례.....	38
제 2절 독 일.....	40
1. 분단 및 통일과정.....	40
2. 국가통합과정.....	51
3. 군사통합 및 군(軍)수용사례.....	55
제 3절 예 멘.....	63
1. 분단 및 통일과정.....	63
2. 국가통합과정.....	71
3. 군사통합 및 군(軍)수용사례.....	76
제 4장 북한군의 수용 및 활용방안.....	80
제 1절 북한군 수용을 위한 조건.....	80
1. 정치적 조건.....	81
2. 경제적 조건.....	84
3. 사회적 조건.....	93
제 2절 북한군 수용의 규모와 대책.....	98
1. 적정 수용규모.....	98

2. 북한군 재교육 대책.....	104
3. 재교육의 주체 및 예산확보.....	121
제 3절 비수용 북한군 활용 방안.....	131
1.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	131
2. 준군사 분야.....	135
3. 비군사 분야.....	147
제 5장 결 론.....	153
참고 문헌	159

표 목 차

<표 1-1>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남북한 국가통일 형태.....	6
<표 1-2> 무력에 의한 통합과 합의에 의한 통합 분류.....	7
<표 1-3> 한반도 통일국가 형태 및 통일 방식(가정).....	8
<표 2-1> 하아스, 린드버그, 에치오니, 도이취, 제이콥의 통합이론 정의....	17
<표 2-2> 갈통(Galtung), 나이(Nye), 도이치(Deutsch)의 통합유형.....	20
<표 2-3> 다렌돌프의 ‘통합적 사회이론’ 과 ‘강제력적 사회이론’ 의 전제...	21
<표 2-4> 주요 군사통합 정의.....	22
<표 2-5> 군사통합의 유형.....	25
<표 2-6> 군사통합의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	27
<표 3-1> 1911-1945년까지 호치민의 활동.....	31
<표 3-2> 통일 전·후 남북 베트남 군사력 현황.....	38
<표 3-3> 동서독 분단과정 연표.....	42
<표 3-4> 동서독 교역이 대외무역에 차지하는 비율.....	45
<표 3-5> 동서독 통신연결 회선 수.....	47
<표 3-6> 동서독 인적교류 과정.....	48
<표 3-7> 1957년부터 1961년까지 동서독 스포츠 교류.....	50
<표 3-8> 1989~1990년까지의 독일 통일일지.....	54
<표 3-9> 해체이전 구동독군 규모.....	56
<표 3-10> 동독인민군 병력인수현황.....	59
<표 3-11> 동서독 병력변화.....	61
<표 3-12> 구동독군 무기 및 장비인수현황.....	62
<표 3-13> 1972년 ‘트리폴리협정’ 내용.....	69

<표 3-14> 1981년 ‘아덴정상회담’ 주요내용.....	71
<표 3-15> 1990년 5월 22일, 남북예멘의 권력안배.....	74
<표 3-16> 통일예멘공화국 군사력.....	77
<표 4-1> 적응 및 부적응 자 단계별 관리 시스템(안).....	83
<표 4-2>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격차.....	84
<표 4-3> 분단·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개념과 특징.....	87
<표 4-4> 국내외 주요기관의 통일비용 추정.....	88
<표 4-5> 2014년 통일의식조사 -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93
<표 4-6> 북한군 재교육 소요판단(안).....	98
<표 4-7> 통일한국군 적정규모 기존연구.....	99
<표 4-8> 통일한국군 내 수용 북한군 적정규모.....	100
<표 4-9> 9서당의 설립순서 및 구성원.....	102
<표 4-10> 한국군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기준.....	103
<표 4-11> 단계·대상별 북한군 재교육 방안.....	107
<표 4-12> 북한 교육학제.....	108
<표 4-13> 북한 소학교 교과과정.....	109
<표 4-14> 자유민주주의체제 이해분야 재교육 과목(안).....	110
<표 4-15> 북한 경제정책 기조.....	111
<표 4-16> 총 공업생산액 중 소유 형태.....	112
<표 4-17>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 분야 재교육 과목(안).....	113
<표 4-18> 법과 사회질서분야 재교육 과목(안).....	114
<표 4-19>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115
<표 4-20> 북한군 한국사분야 재교육 과목(안).....	116
<표 4-21> 국립국어원 남북언어 연구자료.....	117
<표 4-22> 초급학생용 사전의 남북 차이점 분석.....	119
<표 4-23> 북한군 한국어 분야 재교육 과목과 수준(안).....	120

<표 4-24> 2015년 전국 중학교 통계.....	123
<표 4-25> 연간 전역예정자 교육계획.....	124
<표 4-26> 북한군 재교육에 필요한 추정 예산소요 항목.....	126
<표 4-27> 2016년 남북한 경제지표.....	127
<표 4-28> 통합 한국군 병력규모에 따른 순수 병력운용비 추정.....	128
<표 4-29> 남북한 명목 GNI, 1인당 GNI 차이.....	132
<표 4-30> 통일 당시의 동서독 인구비율과 2014년 남북한 인구비율.....	133
<표 4-31> 독일연방군의 구동독군 무기인수현황.....	135
<표 4-32> 구동독군 무기·장비 처리 현황.....	136
<표 4-33> 구동독군과 북한군의 주요장비비교.....	137
<표 4-34> ‘남북군사보장합의서’ 요약.....	138
<표 4-35> 경의선 군 예산 확정(안).....	139
<표 4-36> 비무장지대 통로연결 공사소요 추정.....	140
<표 4-37> 북한 국경선지역 행정구역.....	142
<표 4-38> 남한지역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	143
<표 4-39> 남북 해안선 인접행정구역.....	144
<표 4-40> 남한 교정시설 수용인원.....	145
<표 4-41> 국가통합이후 교정시설 수용인원 및 교정인원 확충(안).....	146
<표 4-42> 2015년 기준 남한의 학교·학생·교원 수.....	149
<표 4-43> 5km ² 이상의 북한 대표 호수 예.....	150
<표 4-44> 북한지역 건설사업 소요 추정(안).....	151
<표 4-45> 비수용 북한군 활용방안 종합.....	152

도 목 차

<그림 2-1> 통합과 통일에 대한 2가지 견해.....	18
<그림 2-2> 정치통합과 군사통합의 관계.....	24
<그림 2-3> 연구 분석 틀.....	29
<그림 4-1> 북한군 지휘구조.....	82
<그림 4-2> 남북교역현황 - 연도별 남북 교역액.....	85
<그림 4-3> 국내총생산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추이.....	90
<그림 4-4> 2022년 상비병력 감축계획.....	91
<그림 4-5> 지역 방언 및 북한어와 남한의 표준어를 비교했을 때의 차이....	118

ABSTRACT

A Study on the Accommodation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to Facilitate a Stable Integration Process Offer Unification

Kim Young-Chan

Advisor : Prof. Oh Soo-Yeol, Ph.D.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rough the Post-Cold War period into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political-security situation changed rapidly and became fluid. Threat of all-out-war decreased between powerful nations or other nations after the Cold War, but regional dispute due to religion, economic benefit, nationalism, and territory increased and each nation is making sharp conflict for national interests.

The Obama administration reestablished the central policy to the heartland of East Asia in military-political aspect for prosperity and security of America from existing policy which focused in the middle east issues and is pushing a policy, 'Pacific pivot' or 'pivot to Asia,' and Abe Cabinet of Japan is strengthening thei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y claiming 'strong diplomacy' but is in state of political tension and territorial dispute with China. Japan is promoting the exercise of collective self defense on the grounds of their security environment, and they are receiving suspicious and wary look from neighboring countries by legalizing it in Sep 2015. China has been continuously reinforcing their military establishment under the name of modernization of Chinese military forces since 1988, reduced 8 military districts and established rapid reaction forces, and president Xi Jinping declared to reduce 300,000 Chinese forces and modernize it

in the future. Behind the modernization of Chinese forces of the Chinese leadership, they are taking measures to resist America who is pressuring China with 'Chinese Threat', checking Japan who is reinforcing military establishment under the military protection of America, and moreover, it is a measure to secure hegemony of China in Northeast Asia and East Asia. Russia's policy objectives of today in Northeast Asia are to participate actively in new reorganized international order, hold rearmament and powerful military of Japan in check,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pursuing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against America and benefit through equidistant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omoting pragmatic diplomacy called 'New East Asia Policy', and they are putting effort to secure national interests in reorganization process of new international order.

Political conditions of Northeast Asia of today did not completely break the conflict factors of the Cold War but are maintaining unsteady condition, and military spending of Northeast Asia is exceeding the global average. This is because interests of the so-called four powers of the world as U.S, Japan, China, and Russia is sharply entangled while the cold-war conflict of the past is still in existence.

Furthermore, Kim Jung-Un, who actually dominated the North Korean regime by getting selected as the chairman of the North Korean National Defense Commission in April 2012, has been promoting the hardline policy against South Korea as well as neighboring countries since the initial stage of his administration, is raising tension in Northeast Asia through three nuclear tests and a series long range missile tests from 2013 to 2016, and is making South Korea as well as surrounding nations very tense with unpredictable polic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tried to enter the path of gradual unification with established mutual trus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egardless of the third nuclear test in her early days in office, and was actually pursuing the so-called 'Theory of Unification Jackpot' as a unification policy.

Therefore, on the supposition that national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s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that applies South Korea-led liberal democratic system and market economy,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problems of accommodating approximately 1.2 million North Korean People's Army among the North Korean military force who is maintaining unprecedented national power and massive military force compare to the economic power during the military integration process that will inevitably occur when the situation emerges.

The ultimate goal of national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o remove an act of violence by mutual heterogeneous political system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create 'safe community' in Korean Peninsula by unifying various elements of national unification. Furthermore, the final stage of national unity is in reorganizing an ethnic community of 5,000 years of history. To do so,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military integration need to be made mutually and organically, and the organic unification of each area will decrease wasted effort and unexpected risk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and create synergy effect from integration. Military integration needs to be investigated comprehensively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 because it is not an independent factor of national integration, and needs to be investigated in connection with various elements of national integration to make complementary and synergy effect. Moreover, the problem of reducing military strength of North Korean army and reusing the reduced North Korean armed forces can make a profound effect on many other factors a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Therefore, this study will cover the main subjects as shown below based on the existing theories and research cases of national integration and military integration.

First, this study intends to determine the current theoretical position of South

Korea-led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to suggest direction of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hrough studies on the concept of national integration that have been researched in science of international politics aspect and military integration which were investigated in military science aspect.

Secondly,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national integration process and military integration process of the three representative nations who accomplished national integration in 20th century as Vietnam, Germany, and Yemen and to investigate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f using absorbed military strength or adaptation of eliminated military strength on social stability after the integration to suggest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and prepared in national and military integration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Thirdly,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consider and draw distinct characteristics of division and history of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unification of Vietnam, Germany, and Yemen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investigate difference in national and military integration with North Korea from other existing countries by analyz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ystem and society.

Fourthly,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conditions of accommodating North Korean army for peaceful national integration and military integration from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 and to suggest reeducation measures of North Korean army and application plan in military, paramilitary, and nonmilitary area of non-receptive North Korean army after investigating the accommodation scale based on the findings.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이 주도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의 단계에서 이행되어지게 되는 군사통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될 문제인 북한군 감축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북한군의 수용의 측면에서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한의 평화적 국가통합이 궁극적인 완벽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및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남·북한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 등 국가 여러 분야에서 이질화 되었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환경도 분단이전 60여년과는 많이 변모하였다. 탈 냉전시기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분쟁과 통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준비 없는 단순한 정치적 합의에 의한 통일이나 무력에 의한 통일은 통일 이전에 예측한 통일부담보다 더 큰 부담을 야기 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이고 안정된 통합의 지연시키거나 다시금 통합의 양 대상을 분쟁과 전쟁의 상태로 이어지게 하였다.

한반도 국가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북한의 상호이질적인 정치체제에서 오는 폭력행위를 억제하고 국가통합의 제요소들을 통합함으로써 한반도 내에 ‘안전공동체’를 만드는데 있다. 더불어 국가통합의 최종단계는 남북한 통일을 이루어 5천년 역사의 민족공동체를 재구성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통합 등, 각각의 통합대상이 상호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야 하고 이런 유기적인 각 분야별 통합은 통합 과정에서의 노력의 낭비와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줄이고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겠다.

군사통합 역시 군 자체만의 독립적 국가통합의 요소가 아니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고, 또한 여러 국가통합의 요소들과 연계되어 상호보완적이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군사통합은 국가통합과정에서 통일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여러 분야에서 통합의 지속성을 보장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군사통합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인 군비통제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를 축소해야 통일 이후 군사적으로 안정적인가?’, ‘축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가?’ 등, 주로 군축을 전제로 하고 연구하는 경향이 있고, 활용 부분에서는 장비위주로 연구되는 경향 있으며, 병력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어느 정도를 감축하는 것이 좋다’, ‘교육이 필요하다’,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의 개념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했듯이 국가통합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북한군 병력의 감축문제와 감축된 북한군의 재활용 문제는 국가통합이외의 다른 통합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합군에 수용되지 못한 북한군들이 정치세력화 하여 정치적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반 통합세력화 하여 통합과정에 위협요소로 성장하거나 통일국가 자체를 전복시키려 할 경우, 그것에 대한 국가가 갖는 부담과 비용은 매우 클 것이다. 또는 그들이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국가안정과 치안의 불안요소로 발전하게 된다면, 이 역시 국가통합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남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군복무를 하는 북한군들은 일반 북한주민보다 사회적응이 늦어 사회적 통합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가통합을 위한 기간도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되지 못한 북한군이 재무장을 하여 무장 세력으로 성장한다면 이는 통일된 남북한을 내전의 상태로 전락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사통합과정에서 북한군들을 적극적으로 수용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사회에 배출되는 이들은 사회불안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재교육을 통해 사회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줌으로써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한국의 통합불안요소로 성장하는 것을 배제시키고, 더불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통일국가의 일원으로 연착륙 시키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통합 및 군사통합의 이론과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정치학측면에서 연구된 국가통합의 개념과 군사학 측면에서 연구된 군사통합 개념의 연구를 통해, 남한주도의 한반도통일에 대한 이론적 현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20세기 들어 국가통합을 이룬 대표적인 세 나라인 베트남과 독일, 예멘의 국가통합과정과 군사통합과정을 분석평가하고 통합과정에서 흡수된 북한군의 재교육 및 배제된 북한군의 재교육과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통합 이후 사회적 안정에 어떠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연구·분석하여, 이를 통하여 차후 한반도 국가·군사통합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들과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요소들을 제시한다.

셋째, 한반도 지역의 분단과 통합의 역사를 재고하여 그 특수성을 도출하며, 베트남과 독일, 예멘의 통일이 한반도의 통일과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북한 체제와 사회의 특수성을 분석함으로써 북한과의 국가·군사통합이 기존의 다른 국가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넷째, 평화적인 국가통합과 군사통합을 위해 북한군 수용을 위한 조건을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수용규모를 판단한 후에 북한군의 재교육 방안과 비수용 북한군의 군사·준군사·비군사 분야에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한반도 국가통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통합 중, 북한군 병력에 대한 수용과 재활용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분석하는 목적은 대한민국주도의 민주·평화적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합 과정에서 통합의 지연과 더 나아가 실패의 중요요소인 군사통합이 사회적 통합과 기타 통합요소에 어떻게 기여하며 기여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통합과정에서 통일로 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제거하며, 그 지속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국가의 군 건설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방법론적 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연구목적에 따라 ‘기술적(記述的)연구(descriptive research)’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군사통합 시 북한군의 수용에 있어 다양한 여러 현상들을 계량화 하여 정확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구축하며, 수집되어 기술된 각각의 현상의 원인과 발생경위에 대해서는 개별현상에 대해 분석적 연구와 설명연구가 가능한 ‘인과관계연구(causal research)’방법을 적용 한다.

즉, 기술적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한 가운데, 각각의 개별현상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결론도출 시에는 보조적으로 ‘인과관계연구방법’을 택함으로써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이용에 따라서는 응용연구(applied research)방법을 통해 수용 되지 못한 북한군이 남북한 국가통합에 있어 발생시킬 문제를 파악하고, 차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북한군 수용의 가치를 부여하고 타당성 있는 자료 수집을 통해 실질적인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 2장에서 국제관계학 측면의 통합의 이론을 살펴보고 한반도 국가통합과 군사통합에 관련된 이론과 유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3장에서는 20세기에 국가통합을 이룬 주요 국가인 베트남과 독일, 예멘에 대하여, 분단 및 통일과정과 국가·군사통합의 과정 및 결과 중에 국가통합 시 특징적인 내용들과, 군사통합 시 피 수용국가의 군대의 수용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각 국가별로 국가·군사통합 이후 그 국가의 사회적 안정 측면에서 피 수용국가의 군대의 수용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 4장에서는 군사통합에 따른 한반도의 특수성에 대하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환경, 한반도분단과 통합의 역사를 알아보고 남북한의 정치·경제·군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반도 군사통합 시 수용·비수용 북한군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군 수용을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수용규모를 추산하여 기술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군 재교육

방법과 예산확보 및 내용 등과 비수용 북한군에 대한 군사·준군사·비군사 분야에서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군 수용 및 활용 문제에 대한 다양한 상황변수들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북한군수용 및 활용방안을 종합하여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에 대하여 기술하고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방향과 논제들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국가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많은 변수들을 현실적으로 모두 고려하고 증명 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변수의 최소화와 논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 국가·군사통합의 주체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한정하였으며, 군사통합의 여러 제 요소들 가운데 논점을 북한군 수용문제로 한정하였다.

또한, 군사통합은 독립변수가 아니라 안정적인 국가통합에 기여하는 종속변수의 의미를 가진다.

2. 연구의 범위

통합이란 분리되어있던 개별 단위의 국가, 또는 국가 내의 집단 간에 일정한 통일성이 있는 구성단위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¹⁾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남북한 국가통합의 시나리오를 추측해보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독일의 예처럼 남북한이 합의에 의해 통일되는 경우와 예멘의 예처럼 합의에 의한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 상호무력을 사용하여 통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해 대남적대정책을 포기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어 합의에 의한 통일이 가능한 경우와,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대남적대정책이 강화되어 한반도와 남한 지역에 대한 무력사용이 예상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베트남의 경우처럼 남북한의 상호적대관계가 지속 및 심화되다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김수남, 『분단국통일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사례연구를 통해서 얻은 교훈』 (서울: 불명, 2006), p.200.

<표 1-1>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남북한 국가통일 형태

구 분	남북 통일형태	사례
방법적 측면	1.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	독 일
	2. 남북한 합의 이후 통일 과정에서의 무력에 의한 통일	예 멘
	3.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합의에 의한 통일	·
	4. 북한의 급변사태 이후 무력 사용에 의한 통일	·
	5. 전쟁에 의한 통일 (전면전)	베트남

국가통합 이후, 군사통합을 과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통합주체에 의한 일방적인 흡수통합인 ‘급진적 군사통합’과 피 합병국의 군제의 장점을 일부 수용하여 군제를 보완하는 형태의 군사통합인 합의적이고 대등적인 ‘점진적 군사통합’이 있다.²⁾

‘급진적 군사통합’의 경우는 베트남과 예멘의 2차 통일의 예를 들 수 있으며, ‘점진적 군사통합’의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다소 미흡하지만, 과정적인 측면에서 동서독의 군사통합을 예로 들 수 있다.

‘급진적 군사통합’의 전형적인 형태인 무력에 의한 군사통합을 한반도의 상황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크게 북한이 무력사용의 주체가 되는 경우와 남한이 무력사용의 주체가 되는 경우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이 주체가 되는 무력에 의한 군사통합은 북한의 불법기습남침과 남한의 공격에 대한 응전의 명분을 앞세운 합법으로 가장한 남침을 산정해 볼 수 있다.

남한이 주체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산정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한·미 연합군의 반격에 의한 무력통합, 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한미연합군의 선제 원점제거공격의 확대에 따른 전면전 발생에 의한 무력통합, 셋째, 북한이 급변사태로 인하여 북한정권이 정치·군사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남한의 안보위협 시, 남한의 불가피한 무력사용에 의한 무력통합 등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점진적 군사통합’의 대표적인 예인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합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남북합의에 의한 연합 및 연방 방식의 통합과, 둘째, 남북한 중에 한 국가가 다른 한 국가에게 급진적 또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흡수통일 되는 경우를 예

2) 하정렬, 『한반도의 평화통일 전략』 (서울: 박영사, 2004), pp.344-347.

측해 볼 수 있다.

<표 1-2> 무력에 의한 통합과 합의에 의한 통합 분류

구 분	주체	통합 방식
무력에 의한 통합	북한	• 불법 기습 남침
		• 명분을 내세워 남침(남측의 도발이라고 주장)
	남한	• 북한의 선제 공격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반격
		•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나 핵무기 공격징후 파악 시 원점 타격확대에 따른 전면전
		• 북한의 급변사태로 북한 정권의 정치·군사적 통제불능 사태에서의 한미연합군의 군사개입
합의에 의한 통합		• 남북 합의에 의한 연합 및 연방 방식의 통합
		• 남북한 한 국가가 급진적 또는 점진적으로 상대방 국가에 흡수 통일

이와 같은 예측 가능한 다양한 국가·군사통합에 대한 시나리오로 인해 국가통합의 최초 시기나 방법을 한정하기 어렵고, 더불어 이러한 것이 규정되지 못함으로써 통합의 방향이나 이후 통합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통합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것 역시 한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가변성을 제거하기 위해 한반도 국가통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무력에 의한 국가·군사통합은 남한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기존의 남북한 통합 및 통일방식과 배치되므로 배제한다.

둘째, 연합이나 연방에 의한 통합 및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 상호간 동일한 정책결정 구조를 가져야 상대방과의 합의에 대한 신뢰가 발생하고, 호혜의 원칙에 의해 실현 가능한데, 북한정권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이므로 정권 신뢰도에 있어서 그 효용성이 적다.³⁾ 또한 상호 대립되는 정치 및 경제체제와 상대국에 대한 적대정책으로 인해 그동안의 남북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통일논의가 담보상태에 있는 상태이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 김정은 정권과의 연방 및 연합은 배제한다.

셋째,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정부 이래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승해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그 중요 내용 중의 하나인 ‘통일헌법’⁴⁾의 성격은 자유민주주의체

3) Eberhard Kuhrt, 『한국은 독일통일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2015년 10월 22일, 육군기계화학교 세미나실.

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사회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를 가장한 김일성 일가의 1인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로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일 한반도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제체제는 시장자유경제체제를 준용하고, 국가통합의 방식은 일방적 또는 상호보완적인 형태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다.

또한 정권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 지속적인 대남적대정책을 고수하는 현재의 김정은 1인 독재 정권과의 통합은 배제하며, 보다 민주적이고 상호호혜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북한정권을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를 정리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한반도 통일국가 형태 및 통일 방식(가정)

정치체제	경제체제	통일 방식	비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시장자유경제)	남한의 의한 흡수통일	김정은 정권 배제

제 3절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를 기술하는데 있어,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군사통합의 배경에 관한 연구로써, 국가통합의 이론적 배경과 정치통합을 비롯한 각각의 통합대상들과 군사통합과의 상관관계에 관련된 연구,

둘째, 20세기에 국가통합을 이룬 주요 3국에 대한 분단과 통합의 과정에 대한 연구로써, 베트남·독일·에멘의 분단의 배경과 통일 및 국가통합과정과 이들 국가의 군사통합과정과 군(軍)수용 사례에 관련된 연구,

셋째, 현 국제정세와 남북한 정치·안보·경제·사회에 관련된 연구로써, 북한군 수용에 있어 사전 정치·경제·사회적 조건과 관련된 연구,

4)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61>(검색일: 2016. 5. 8).

넷째, 비수용 북한군의 규모판단과 활용방법에 관한 연구로써, 북한군의 재교육 방안과 주체 및 예산 확보문제, 활용을 위한 전제 조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국가통합과정은 개별적인 각각의 통합대상들은 물론이고, 통합대상들 상호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잡하고 유동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진술한 4개 연구 분야는 각각의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연구되었거나, 통합의 대상이 다른 통합의 대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회통합과 군사통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주민들과 통일 한국군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사회에 배출된 북한군과는 차이에 대한 연구나,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과 군사통합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사용에 있어서도, 각 정부 기관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통합의 대상들은 자기 분야의 통합이 타 분야의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다.

1. 국가·군사통합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

국가통합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는 미국 하와이대 국제정치학 박사인, 전 한림대 총장 이상우 박사의 ‘국제관계이론’을 통하여 국제 관계학적 통합 이론에 대하여 참고하였다.

이상우 박사는 국가통합이론에서 통합의 개념과 유형을 제시하면서, 특히 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연방주의(federalism)와 기능주의(functionalism),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및 통합 정도 측정을 위한 상대적 수용 모델을 제시하였다.⁵⁾

그러나 통합의 전제조건변수와 관련된 명제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지리적 인접성과 동질성, 상호작용과 상호간의 지식, 기능적 이익과 사회적 특성, 구조적 틀과 주권-종속지위, 정부의 능률성 등, 통합의 대상들의 상호적대적인 관계 정도나 통합의 적극성에 대한 이론은 한계가 있었다.

군사통합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는 군사 전문가인 김열수, 권양주, 김계동, 이종석, 김의식 박사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였으며,⁶⁾ 위의 군사 전문가

5)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서울: 박문사, 2013), pp.572-574.

5명의 군사통합에 대한 개념연구는 상호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상기의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었는데, 이상우 박사의 경우 국가통합의 주체인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통합에 대한 인식의 수준 정도가 같은 상태를 가정하여 기술하였으며, 요컨대 이론적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한반도 주변국 및 동북아 국제안보환경을 고려 할 때, 한반도 국가통합과 그 과정에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군 및 안보전문가 출신의 5명의 학자들의 연구는 현재 남북한과 동북아 국제외교·안보 환경을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통합구상과 계획을 하기위한 이론적 배경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전문한 국가통합 이론과 군사통합 이론을 참고하여, 남북한과 주변국의 특수성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2. 주요국가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

주요국가 통합사례에 대한 연구는 20세기에 국가통합을 이룬 주요 3국인 베트남·독일·에멘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각각의 국가의 분단의 배경과 통일까지의 상황과 국가통합과정, 군사통합과정과 군 통합사례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분단의 배경과 통일과정은 존 핀스톤 박사의 ‘동남아 정부와 정치’, 베트남 전문가인 김종욱 청운대 교수의 ‘승리의 교훈, 베트남 전쟁’과 일본 도쿄 신문과 산케이 신문 기자로 근무하다가 1967년 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사이공 특파원을 한 토모다 세키(友田 錫)의 저서를 번역한 ‘배반당한 베트남 혁명: 튜뉴탄의 증언’을 참고하였다.⁷⁾

6)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 검토는 ①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파주: 법문사, 2013), ②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구상』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③ 김계동, 『남북한체제통합론』 (서울: 명인문화사, 2006), ④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파주: 한울, 1998), ⑤ 김의식, 『남북한 군사통합과 북한군 안정화 전략』 (서울: 선인, 2014) 등이다.

7) 튜뉴탄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창립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1969년 수립된 남베트남 임시정부의 법무부장관. 북 베트남에게 배신당해 보트피플을 거쳐 1980년 인도네시아 가란섬을 거쳐 프랑스 파리로 탈출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8월 토모다세키와 프랑스 파리에서 하루 6시간씩 연 30시간을 인터뷰한 내용을 기록하였음.

김중욱 교수의 저서는 베트남 전쟁 발발 이전부터의 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편년체 형식으로 기술하여 분단 및 통합의 배경을 일관성 있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토모다 세키의 자료는 일본 ‘중앙공론’ 1981년 2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증보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한 책으로써, ‘남베트남 해방 전선’의 창립멤버이자 1969년 수립된 남베트남 임시정부 법무부장관인 툰뉴탄의 증언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자국민의 입장과 북베트남의 무력통일과정에서 분열된 사회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무력통일에 의한 국가통합 시 겪는 시행착오와 어려움 등을 참고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⁸⁾

그러나 베트남통일은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통일의 방법이 무력에 의한 통일이었기 때문에 연구 자료들이 대부분이 전쟁과정 위주로 기술되어 있고, 이데올로기적 대립관계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한반도 통일에 참고하여 적용하기에는 다소 적합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다.⁹⁾

베트남의 국가·군사통합은 위의 연구 자료와 더불어 유제현의 ‘월남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최용호 박사의 ‘물어보세요!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이영희의 ‘베트남 전쟁’ 황진환 박사의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등을 참고하여 국가통합과정과 군사통합과정 및 군 수용사례에 대하여 참고하였다.

독일의 경우 분단의 배경과 통일과정은 통일부 통일연구원 연구 자료가 시기별로 증보되어 전체적인 분단과 통일 과정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유용하였으며, 단행본으로는 김동명의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과 김영탁의 ‘독일 통일과 동독재건과정’을 주로 검토하고 참고하였다.¹⁰⁾

그러나 독일통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특징은 통일과정과 동독 재건과정, 경제 및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고 잘 분석되어 있었으나, 독일과 한반도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에 대한 비교는 다소 부족하였다.

8) 이 책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북베트남 세력에 의하여 남베트남의 혁명세력이 조차 제거되는 과정이 잘 설명 되어있다.

9) 국회도서관에 등재된 베트남 군사통합에 관련된 학술논문은 총 10편으로 8개가 석사논문이고, 2개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1996년과 1997년에 작성 된 논문이 최신논문이다.

국회도서관, <http://dl.nanet.go.kr/SearchList.do>(검색일: 2016.12.1).

10) 기타 추가로 참고한 논문이나 서적은 권태영·김수영의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황진환의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지크프리드 쿠퍼의, “Die Inner deutschen Wirtschaftsbeziehungen und ihr politischer Stellenwert,” , 바딤 메디시의 『The Soviet Union』, 한스 요아킴의 『Das unliebsame Erbe: Die Auflösung der Militärstruktur der DDR』 등을 참고하였다.

예를 들어 탈냉전 초기의 독일통일과 소련의 경제적 몰락, 상호전쟁경험과 교류 등의 경험적 요소가 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이 다른 것에 대한 분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부분의 보완하기 위해 권태영·김수영의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의 통일’ 등을 참고하였다.

국가통합 및 군사통합과정과 군 수용사례는 위의 선행연구들 보다 더욱더 정확한 데이터가 기술된 통일부 통일정책실의 ‘독일·통합 정책연구’ 1권부터 4권까지의 연구자료와 주독 대사관의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및 외국 학자의 자료를 통해 검토 하였다.

예멘의 경우 분단의 배경과 통일과정은 주 예멘대사를 지냈던 유지호의 ‘예멘의 남북통일: 평화통일의 매혹과 위험성’을 주로 참고하였는데, 예멘 관련 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내전의 배경이나 정치적 대립의 문제, 통일에 대한 환상의 위험성 등을 주장하는 연구 자료들이 많았다.

그러나 전 예멘 대사인 유지호의 저서는 예멘민족의 역사와 종교적 배경을 포함하여 식민지와 분단 및 정치체제의 이원화 배경, 통일과정에서의 내전, 통일과 재분단 및 무력에 의한 통일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당시의 국제 외교적 상황과 함께 잘 기술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통합에 있어서의 국제정세 및 주변국환경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 할 수 있었다.¹¹⁾

예멘의 국가통합 및 군사통합과정과 군 수용사례는 한국중동학회 금상문 연구위원의 ‘남북예멘의 통일 노력과 통일 장애요소에 대한 소고’, 민족통일연구원의 김국신 연구위원의 ‘예멘 통일방식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및 ‘예멘 통합 군사연구’, 유지호의 ‘예멘 통일 이후 문제점’의 학술논문을 주로 검토하고 참고하였다.

예멘의 국가·군사통합과정 및 군 수용사례는 주로 정치적 관점에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위주로 검토되어 있으며, 합의에 의한 통합과 무력에 의한 통합이 병존하여 사실상 베트남의 무력에 의한 흡수 통일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11) 국회도서관에 예멘 군사통합에 관련된 학술논문은 총 9개로 이중 7개가 석사논문이며, 2개의 학술지 논문 중 1개는 베트남·독일·예멘을 통합한 논문이며, 순수하게 예멘의 군사통합을 기술한 학술논문은 1996년에 작성된, 유지호의 “예멘통일과 군사통합”이다.

국회도서관, <http://dl.nanet.go.kr/SearchList.do>(검색일: 2016.12. 1).

3. 국제정세와 남북한 정치·안보·경제·사회에 관련된 연구

국제정세와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국과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는 조선대학교 오수열 교수의 저서인 ‘강대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를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 4개 강국의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전통적인 외교·안보 정책과 한반도 국가통합 시 각국의 이해관계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였으며, 통일부 통일연구원의 ‘2016년 통일문제 연구’를 통해 남북한 국가통합에 대한 우리의 정책과 추진방향 및 북한의 특수성을 확인하였다.

통일 비용과 편익에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는 박병식의 ‘남북통일 비용과 편익 어떻게 볼 것인가?’와 조한범 외 3명의 ‘남북통일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 분야’, 박준홍의 ‘경제의 문 여는 북한, 미래의 돌파구로 활용하자’를 통하여 통일 비용과 편익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참고하였다.

남북한 관계 통일관련 선행연구는 통일부와 국방부 연구결과와 국가통계포털 및 북한정보포털 등을 통한 명확한 관련 데이터를 검토 분석 하였으며, 김정은 정권 들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 도발과 미사일 발사시험 등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주요 일간지의 최신기사와 자료를 검토 분석 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북한의 도발은 제 4·5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시험 등, 그 도발의 간격과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예측하기 어렵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관계로 인터넷 최신자료를 검토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국제 외교·안보환경의 변화 및 통일에 대한 북한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북한변화에 따른 주변국들의 남북통합에 대한 이해관계를 연구 분석하였다.

4. 비수용 북한군의 규모판단과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

비수용 북한군의 규모판단과 활용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는 규모판단에 있어서 조선대학교 한관수 박사의 연구논문과 주용식 박사 등의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통일 한국군의 규모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최소 및 최대 규모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평균값을 도출 하였다.

북한군의 수용규모는 통일부 통일정책실의 ‘독일통일정책연구서’와 ‘통일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의식변화’, ‘독일통일총서 군사 분야 관련 정책분석’등을 연구 검토하여

수용 북한군의 규모를 한정 하였다.¹²⁾

비수용 북한군의 재교육과 활용적인 측면은 통일연구원 자료, 송철의 ‘2015년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양명희 ‘북한의 조선말 사전 분석’, 남한의 한국어능력시험, 국가정보포털을 통한 교육부 통계자료, 통일교육원 연구자료, 대검찰청 및 법무부 교정본부 연구자료, 육군본부 ‘국방백서’ 및 ‘남북철도사업 백서’ 등을 연구 검토 하였다.¹³⁾

이러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각각의 개별적인 연구결과와 통계들을 유의미하게 융합하여 비수용 북한군의 활용에 있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국가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전술한바와 같이 통합의 방향과 시기 및 경제적 효과 등이 각각의 통합대상들 별로 개별적으로 연구된 경향이 있고, 통합을 위한 대상들과 통합 과정에서의 각각의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북한정권이 가지는 불확실성과 복잡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작 남북한 국가통합 구상단계부터, 과정 중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연구의 한계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전 검토하고 고찰한 선행연구들의 특징은 단일 통합대상에 관한 자료보다는 다양한 통합의 대상에게 적용 할 수 있는 일반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였으며, 전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군사통합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통합의 개념과 군사통합과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기능주의적 측면에서 각각의 통합의 대상들과 국가·군사통합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둘째, 주요국가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20세기에 국가통합을 이룬 베트남·독일·에멘의 사례에서 이들 국가의 분단과 통일과정이 한반도의 남북한국가통합

12) 수용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일 한국군의 규모를 추산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1991년 백재하, 1992년 김충령, 1992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97년 이춘근, 1998년 윤진표, 1999년 이철기, 2002년 한관수, 2014년 주용식, 2014년 국방백서를 참고하였다.

13)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국가통계포털, 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 통일원 북한정보포털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을 갖는가에 대한 인식과, 이들 국가들의 군사통합과정과 군(軍)수용 사례 연구하였다.

셋째, 국제정세와 남북한 정치·안보·경제·사회에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와 남북한이 갖는 특수성과 국가통합이 갖는 보편성을 인식하고, 국가통합과정에서 기능적 통합의 대상인 군사통합이 국가통합에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넷째, 비수용 북한군의 규모판단과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국가통합의 가정에 부합된 한반도 통일국가 수립 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비수용 북한군의 활용분야와 규모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활용분야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통합 개념과 유형

1. 통합의 개념

국제정치학 측면에서 볼 때 통합이론의 대표적 연구가로는 데이비드 미트라니(David Mitrany), Ernst B. Haas, Philip E. Jacop, Leon N. Lindberg, Joseph S. Nye, Jr, A. Etzioni, K. W. Deutsch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하아스는 통합을 “몇 개의 다른 국가들이 기존의 국민국가로부터 관할권을 새로이 갖게 되거나 관할권을 요구하는 새로운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린드버그의 경우는 “각각의 국가들이 독자적인 외교정책이나 기타 주요 정책을 합동으로 수립하거나 새로운 중심 기구에 위탁하려는 과정으로, 그리고 정치적 활동의 중심을 새로운 중심으로 옮기도록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⁴⁾ 이 두 학자는 양 국가 간의 통합을 기존의 각각의 정치중심이 새로운 통합된 기구로 옮겨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에치오니는 “하나의 공동체가 폭력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도이취의 경우는 “한 집단의 사람들이 충분할 만한 공동체 의식과 기구 및 관행을 갖게 되는 상태의 조건”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제이콥은, “동일체라는 감정과 자의식을 갖게 해주는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상호연계로 뭉쳐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¹⁵⁾

이 세 학자는 하아스와 린드버그와는 다르게 통합을 과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상태의 결과로 인식하였다. 결론적으로 통합은 크게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시각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두 가지의 시각의 차이는 한반도 통합논의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각과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의 통합일 경우,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분야 등, 통합의 대상이 각각 다를 수 있다.¹⁶⁾

14)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서울: 박영사, 2013), pp.557-558.

15) 위의 책, pp.559-560.

16)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파주: 법문사, 2013), p.345.

<표 2-1> 하아스, 린드버그, 에치오니, 도이취, 제이콥의 통합이론 정의

통합이론 학자	통합에 대한 정의
Ernst B. Haas (Ernst B. Ha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몇 개의 서로 다른 국가들의 정치행위자들이 그들의 충성심과 기대 및 정치적 활동을 기존의 국민들로부터 이들 국가들에 대한 관할권을 새로이 가지게 되었거나 그러한 관할권을 요구하는 새로운 중심으로 옮기도록 설득하는 과정”으로 정의
Leon N. Lindberg (Leon N. Lindberg)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그들의 외교정책이나 기타 주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욕과 능력을 배제하고, 그 대신 합동으로 정책을 수립하려 하거나 새로운 중심기구에 의사작성 과정을 위탁하려 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서로 다른 몇몇의 무대에서 활동하는 정치행위자들이 그들의 기대와 정치적 활동을 새로운 중심으로 옮기도록 설득하는 과정”으로 정의
A. Etzioni (A. Etzioni)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정치공동체가 폭력수단의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으면 통합된 것이라고 본다(통합은 조건을 뜻한다). 이런 공동체는 공동체 전체에 대해 지원과 보상을 배정하며 정치적 자각을 가진 대다수 시민들의 정치적 일체성의 초점을 형성하는 의사작성 중심을 갖고 있다”로 정의
K. W. Deutsch (K. W. Deuts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집단의 사람들이 일정 영역 내에서 이들 내의 문제들에 대하여 평화적인 변경이 가능하다는 믿을 만한 기대를 오랫동안 확신하기에 충분할만한 공동체 의식과 기구 및 관행을 갖게 되는 상태의 조건”으로 정의
Philip E. Jacob (Philip E. Jac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적 통합이란 같은 정치적 실체 내의 인간들간의 공동관계를 뜻한다. 즉, 그들 인간들은 동일체라는 감정과 자의식을 갖게 해 주는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상호연계로 뭉쳐있는 것이다”로 정의

* 출처: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서울: 박영사, 2013), pp.558-562를 근거하여 재구성.

통합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통합에 대한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정치학에서의 통합의 개념은 “개별적 단위를 이루는 부분들이 상호의존관계에서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춘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현상”¹⁷⁾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이질적인 체제를 외형적으로 하나의 체제로 만들고 이를 내부적으로도 동질성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

통합은 각각의 통합의 대상이 하나로 합쳐져 결합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통합과 통일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정치적 통합여부이다.¹⁹⁾ 요컨대 통일은 영토와 국민이 통일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 주권이 하나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을 보는 관점도, 앞서 말한 외국의 학자들을 비롯하여 국내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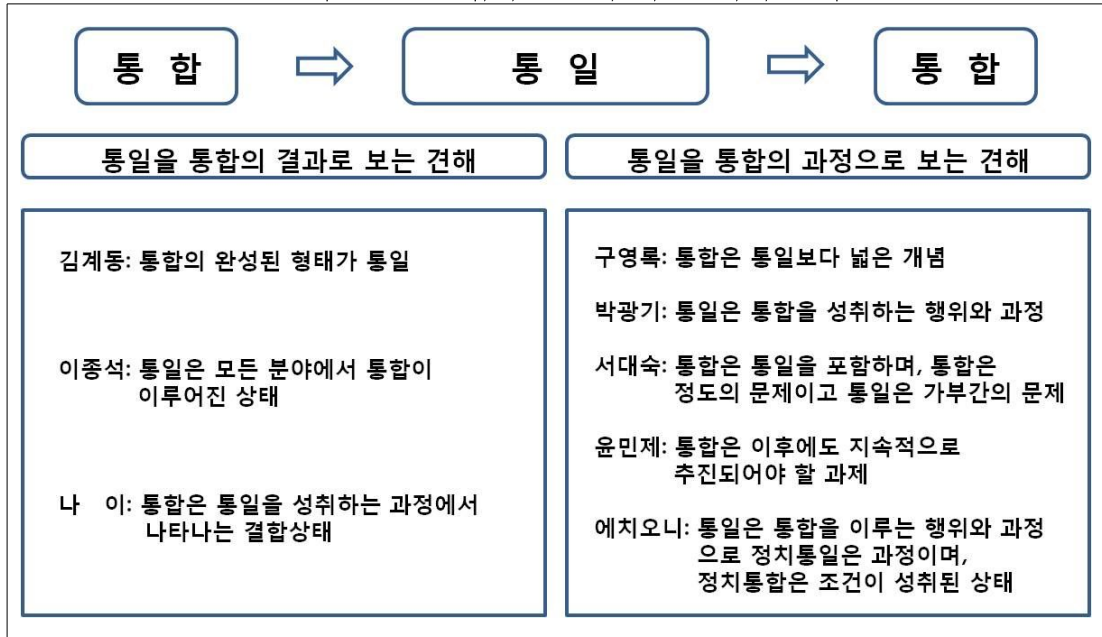
17)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pp.29-30.

18) 김계동, 『남북한 체제통합론』 (서울: 명인문화사, 2006), pp.23-26.

19)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파주: 한울, 1998), pp.18-19.

자들 사이에는 통일을 통합의 완성된 결과로 보는 견해와 통일을 통합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다.²⁰⁾ 이러한 두 가지 견해 차이는 한반도 통일정책 수립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통합과 통일에 대한 2가지 견해



* 출처: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pp.33-35를 근거하여 재구성.

그러나 20세기 들어 통일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들 중, 통일선언 이후 통합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다가, 재분단과 무력에 의한 재통일의 경험을 가진 예멘의 경우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안정적인 통합의 과정과 결과물이 없거나, 각 통합의 대상들이 상호유기적인 상승작용을 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통일을 이루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통일이 있어야 각각의 통합대상들의 유기적인 보완과 최종적 완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통합의 결과가 통일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을 통일로 가는 과정의 중요한 선행조건이면서도 정치적 통일 이후에도

20) 권양주, 앞의 책, pp.33-34.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정책들은 각각의 통일 대상들의 부분적인 통합과정을 통해서 정치적 통일을 이룬 후에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 아래에서 다시 각각의 통일대상들의 통합의 완성을 통해 상호상승효과를 거두고, 노력의 낭비와 균형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겠다.²¹⁾

요컨대 통일만을 목적으로 하여 수립된 정책은 통일 이후 대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통일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분야별 통합은 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 하겠다.

2. 통합의 유형

통합의 유형은 통합을 과정, 또는 결과로 보는가에 따라 학자들마다 이론의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통합의 구분은 각각의 통합이 서로 다른 과정과 조건이 있다고 판단되어 통합의 현상 전체를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하거나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편의성이 존재 할 때 그 가치가 있다.²²⁾ 이러한 인식하에 대표적으로 3명의 학자의 유형 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갈통(Galtung)의 통합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갈통은 통합을 ‘가치통합’과 ‘행위자 통합’, ‘부분과 전체의 통합’ 3개로 구분하고, 각각을 2개씩 세분화 하여 6가지의 유형을 제시²³⁾하였으며, 나이(Nye)는 지역 통합의 유형을 ‘경제적 통합’, ‘사회적 통합’, ‘정치적 통합’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치적 통합은 다시 ‘기관의 통합’, ‘정책의 통합’, ‘태도의 통합’, ‘안전공동체’로 구분하였다²⁴⁾. 마지막으로 도이취(Deutsch)의 경우는 통합을 안전공동체가 완성 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안전공동체를 정책결정의 중심 기준으로 보고, 통합의 유형을 ‘융합안전공동체’와 ‘다원적 안전공동체’ 2가지로 구분하였다.²⁵⁾

21) 위의 책, p.36.

22) 이상우, 앞의 책, pp.562-563.

23) Johan Galtung, "A Structural Theory of Integr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 No. 4(1968), p.377.

24) J. S. Nye, *Peace in Parts: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Boston: Little, 1971), pp.24-54.

<표 2-2> 갈통(Galtung), 나이(Nye), 도이치(Deutsch)의 통합유형

갈 통 (Galtung)	나 이 (Nye)	도이취 (Deutsch)
1. 가치통합 (value-integration) - 형평성 (egalitarian model) - 위계형 (hierarchical model) 2. 행위자 통합 (actor-integration) - 유사성을 기초로 한 모델 (similarity model) - 상호의존성을 기초로 한 모델 (interdependence model) 3. 부분과 전체의 통합 (integration between parts and whole) - 충성심 모델 (loyalty model) - 배분형 모델 (allocation model)	1. 경제적 통합 (economic integration) 2. 사회적 통합 (social integration) 3. 정치적 통합 (political integration) - 기관통합 (institutional integration) - 정책통합 (policy integration) - 태도통합 (attitudinal integration) - 안전공동체 (security integration)	1. 융합안전공동체 (the amalgamated security-community) 2. 다원적 안전공동체 (the pluralistic security-community)

* 출처: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서울: 박영사, 2013), pp.562-563을 근거하여 재구성.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갈통의 이론 중에 ‘가치통합’의 부분과 나이의 이론 중에는 ‘사회적 통합’과 ‘안전공동체’를 수용하였으며, 도이취의 이론 중에는 ‘다원적 안전공동체’ 이론에 입각하여 작성하였다.

3. 기능주의 통합이론

일반적으로 통합이론의 핵심은 여러 기능의 통합에 있다. 따라서 통합이론과 기능주의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²⁵⁾

기능주의 통합이론을 대표하는 미트라니(David Mitrany)는 “비정치적인 기술적 차원의 협조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정치적인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점진론’을 주창하였으나, 이에 반대되는 이론적 접근이 있다. 즉, 정치체제는 통합의 편의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존재에 의한 하나의 체제로 묶임으로써 자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정치적 통합과 군사통합의 종속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가지 견해는 ‘사회 응집의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하는 사회 철학적 문제로써 지금까지도 논의되는 미해결 과제이기도 하다.

25)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Community,” in *International Political Communities*, Ancho Anthology(New York: Doubleday, 1966), pp.1-4.

26) 이상우, 앞의 책, p.568.

다렌돌프(Ralf Dahrendorf)는 이와 같이 사회응집요소에 대한 견해들을 ‘유토피아 학파(the utopia)’와 ‘이성주의 학파(the rationalist)’라고 각각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이 두 학파는 상대의 이론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으며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이나?’하는 문제, 즉, 우선순위의 문제로 상대를 인식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견해를 다렌돌프는 ‘통합적 사회이론’과 ‘강제적 사회이론’으로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²⁷⁾

정리하여 기술하면 ‘통합적 사회이론’은 점진적이면서, 통합은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리는데 유용하며, ‘강제적 사회이론’은 통일이 통합을 이루는데 전제조건이라는 견해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표 2-3> 다렌돌프의 ‘통합적 사회이론’과 ‘강제력적 사회이론’의 전제

통합적 사회이론의 전제	강제력적 사회이론의 전제
1. 모든 사회는 비교적 지속적이며 안정된 요소들로 형성된 구조물이다.	1. 모든 사회는 모든 점에서 변화의 과정을 따르게 된다. 사회적 변화는 어디에서나 일어난다.
2. 모든 사회는 구성요소들이 잘 통합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2. 모든 사회는 모든 점에서 견해의 차이나 갈등을 나타낸다. 사회적 갈등은 어디에나 있다.
3. 사회 내의 모든 요소들은 사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데 공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는 사회의 분해와 변화에 공헌한다.
4. 기능하는 모든 사회구조는 그 구성원간의 가치에 대한 합치된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4. 모든 사회는 그 구성원의 일부에 의한 다른 자에 대한 강제에 기초하여 성립되어 있다.

* 출처: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서울: 박영사, 2013), pp.570-571을 근거하여 재구성.

다렌돌프의 이론에 의하면 통일과 통합의 관계에서 ‘선 통일 후, 통합’과 ‘선 통합 후, 통일’의 개념은 중요도와 우선순위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어떤 것에 주안을 두고 생각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어떠한 이론도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과 함께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도 쟁점화 될 부분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견해를 갖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게 될 군사통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주도하의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통일을 전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합적 사회이론’에 입각하여 기술 하려고 한다.

27) 위의 책, pp.568-570.

제 2절 군사통합 개념과 유형

1. 군사통합의 개념

군사통합은 상호 다른 수개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군의 제반기능과 조직체계를 개편과 통합의 과정을 거쳐 하나로 만드는, 즉,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결합과, 물리적 결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 군의 인적구성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정신적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그러나 군사통합의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그 수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나, 군사통합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2-4> 주요 군사통합 정의

학 자	정 의	특 징
윤진표	국가통합의 핵심과정으로, 결속하려는 국가 상호 간의 군 조직, 지휘명령체계, 병력과 무기체계 등을 통합하여 결속지역 내 국민에게 새로운 통합체제에 대한 일체감을 형성시키는 과정	일체감 형성에 중점을 둠
장흥기	상이한 지휘계통 하에 있는 개별적 기능조직체제를 한데 묶어서 하나로 통일된 단일 지휘계통 하의 공동 기능조직체제로 결합시키는 과정과 상태	기능과 조직을 하나로 결합
제정관	군사 전반의 제반 기능과 조직체계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과정이며, 군사 활동의 일원화와 공동화를 위한 조직적 결합과정	시키는 과정과 상태로 인식
권양주	국가통일을 위한 핵심 분야로, 서로 다른 군사사상 위에 수립된 조직, 기능 및 제도를 통일국가의 이념과 국가목표에 맞게 외형적으로 단일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인의 내면 상태를 하나로 만들어 일체감을 갖게 하는 과정 이자 만들어진 상태	윤진표, 장흥기, 제정관의 정의를 종합

* 출처: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pp.40-41을 근거하여 재구성.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통합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군대를 하나의 체제로 묶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통합이 정치통합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명확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국가통합에 ‘어떻게 기여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 주는 데는 다소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 통합과 통일에 대한 많은 논의가 각각의 통합대상별로 연

28) 김의식, 『남북한 군사통합과 북한군 안정화 전략』 (서울: 선인, 2014), p.39.

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군사통합의 경우는 군사통합만의 연구로 그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적 측면의 통합은 앞서 통합이론에서 언급했듯이 각각의 단위로만 연구되어서는 비효율적이며 노력의 낭비가 될 수 있다.

아무리 군사통합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했다라도 이것이 다른 통합의 대상들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거나 유기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과정에서 정책수립이나 계획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각각의 통합대상들의 개별적인 연구의 결과는 실질적이지 못한 학문적 연구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예를 들어 군사통합만을 생각하고 북한군 수용문제를 다룬다면 수용의 시기와 규모를 정치·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비수용 북한군이 안정적 국가통합의 위협요소로 인식하기 어렵다 하겠다.

군사통합은 일반적으로 정치통합에 종속되어 있다고 한다.²⁹⁾ 정치통합이 이루어져야 일반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 차원에서 보면, 군사통합은 여타 다른 경제적 통합이나 사회적 통합, 문화적 통합 등과는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군사통합은 정치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군사통합이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정치통합 이후 군사통합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치통일 이후에 군사통합이 불완전한 상태로 방치되면 남북예멘의 1차 통일 이후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는 차라리 정치통합을 군사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미루는 것만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인위적 정치통합은 오히려 반목과 정체성의 분열로 이어져 국가가 다시 분리될 수도 있다. 강압에 의해 강제로 통합된 식민지나 종교나 민족 및 역사를 무시한 채 통합한 구소련 및 유고슬라비아, 과거의 통일아랍공화국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³⁰⁾

군사통합은 정치통합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정치통합은 군사통합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³¹⁾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될 ‘비수용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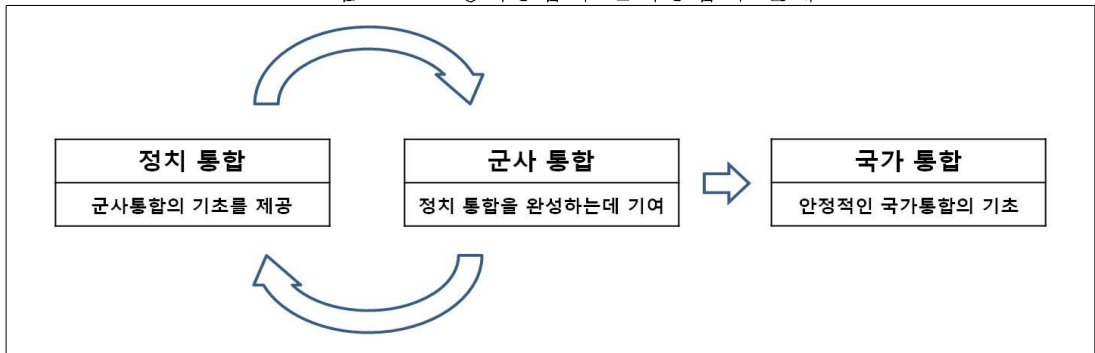
20) 권양주, 앞의 책, p.38.

30) 김열수, 앞의 책, p.347.

31) 권양주, 앞의 책, pp.38-39.

한군'의 문제로 예를 들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비록 남북이 정치통합을 이루었다고 해서, 군사통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용이 거부될 대다수의 북한군이 정치통합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존재하거나 정치통합 자체를 물리적으로 거부할 경우를 생각해보면 군사통합이 정치통합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림 2-2> 정치통합과 군사통합의 관계



* 출처: 김의식, 『남북한 군사통합과 북한군 안정화 전략』 (서울: 선인, 2014), pp.39-39를 근거하여 재구성.

다만 독일의 예처럼 통일문제가 주변국에게 안보적 큰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군사통합이 정치통합보다 우선하여 거론 될 수도 있다. 즉, 정치통합 또는 국가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군사통합의 시기·방법·규모 등을 미리 제한함으로써 군사통합이 국가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겠다.³²⁾

2. 군사통합의 유형

군사통합은 국가통합의 한 분야이므로 군사통합의 방식은 국가통합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양국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구조와 특징에도 영향을 받으며 통합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³³⁾

군사통합 방식은 주로 ‘강제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와 ‘대등하였는가?, 흡수되었는가?’로 구분되어 진다. 김의식은 군사통합의 유형을 ‘무력에 의한 강제 흡수통합’,

32) 김의식, 앞의 책, p.40.

33) 권양주, 앞의 책, p.43.

‘상호합의에 의한 흡수통합’, ‘상호합의에 의한 대등한 통합’으로 구분하였고,³⁴⁾ 권양주도 ‘강제적 흡수통합’, ‘합의적 흡수통합’, ‘합의적 대등통합’으로 구분하였으며, 두 학자의 의견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³⁵⁾

그러나 군사통합도 수준에 따라 연합·동맹·2개국 이상의 국가의 통합이 가능하므로³⁶⁾ 연합과 동맹을 고려한다면 군사통합의 유형은 몇 가지 더 고려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력이나 정치적 압력에 의한 강제적 연합이나 동맹은 대등하지는 않지만 흡수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6.25전쟁 시기에 중공군과 북한군의 관계나, UN군과 한국군의 관계가 그 예이다. 물론 영속성 측면에서 본다면 부적절한 분류이기는 하지만 군사통합 수준과 강도, 통합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분류이다.

군사통합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군사통합의 유형

구 분		군 사 통 합			
		저강도 수준 / 단기·일시		고강도 수준 / 장기·영속	
		연합 및 동맹		통합(통일)	
		흡수	대등	흡수	대등
합의여부	강제	강제적 흡수 연합/동맹	강제적 대등 연합/동맹	강제적 흡수 통합	
	합의	합의적 흡수 연합/동맹	합의적 대등 연합/동맹	합의적 흡수 통합	합의적 대등 통합

* 출처: 김의식, 『남북한 군사통합과 북한군 안정화 전략』(서울: 선인, 2014), pp.41-44;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p.44를 근거하여 재구성.

저 강도 수준이며,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연합 및 동맹은 한반도 군사통합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으로 고강도 수준의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군사통합인 통일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강제적 흡수통합’의 경우는 베트남통일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은 1973년 미국과 남·북 베트남, 베트남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파리회담’ 결과로 미군이 철수하자 1975년 4월, 북베트남과 베트남에 의해 남베트남의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정치·군사통합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통합의 대상이 된 남베트남군은 북베트남 정부에 의해 북베트남군에 강제로 흡수 되었다.³⁷⁾

34) 김의식, 앞의 책, pp.41-44.

35) 권양주, 앞의 책, pp.43-44.

36) 김열수, 앞의 책, p.346.

합의적 흡수통합의 예는 동서독 국가통합의 예에서 볼 수 있다. 구소련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과 동독의 국민들의 민주화요구 및 여행제한해제 등으로 200만 명이 넘는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넘어갔으며, 1990년 3월 서독정당의 강령을 채택한 동독정당들과의 대연정 이후, 같은 해 5월의 경제·사회·통화의 통합에 관련된 조약이 발효되었고, 9월에는 ‘2+4’ 조약이 체결 되어 동독인민군과 서독연방군은 1990년 10월에 통합이 시작되었다.³⁸⁾

세부적인 통일과정은 이후에 기술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동서독은 냉전기와 화해와 협력의 기간을 거쳐 합의에 의한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합의에 의한 군사통합’을 이룰 수 있었으며, 동독이 서독에 흡수됨으로써 군사통합은 ‘합의적 흡수통합’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합의적 대등통합’의 예는 제 1차 예멘통일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남북예멘은 1962년 군사쿠데타로 예멘의 북쪽지방에 ‘예멘아랍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아덴만에 인접한 남예멘은 1967년까지 영국 식민지로 있다가 공산혁명을 통하여 ‘남예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차후 남·북예멘의 통일과정은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남북예멘은 1990년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에 의해 구 소련군이 남예멘에서 철수하자 남예멘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90년 5월에는 통일을 선언하고 정치·경제 분야를 1:1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92년 11월 총선결과 북예멘이 압승하고 정치통합과정에서 공무원, 군, 경찰 등이 통합되지 않아, 1994년에 2개월간의 내정을 통해 북예멘이 통일의 주체가 되는 정치·군사통합을 이뤘다.³⁹⁾ 통일 이후 혼란과 전쟁 등은 차후에 기술하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남·북예멘의 제 1차 통일은 ‘합의에 의한 대등한 통합’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3가지의 군사통합 유형은 몇 가지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보이는데, 그 특징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이다.

협상의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강제적 흡수통합은 협상의 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주체가 있을 수 없으며, 합의적 흡수 및 대등통합은 정부 및 군 통수기능을 유지하

37) 위의 책, p.364.

38) 김열수, 앞의 책, pp.366-368.

39) 위의 책, p.365.

기 위한 협상의 주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제도의 측면에서는 강제적 흡수통합의 경우 흡수의 주체가 되는 국가의 군사제도를 적용하며, 베트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무장해제 여부는 강제적이던 합의적이던 흡수통합의 주체가 흡수되는 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합의적 대등통합의 경우는 해제하지 않는데, 대표적인 예가 예멘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1차 국가통합이 그 예이다.

전역 대상자에 대한 보상은 강제적 흡수통합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합의적 흡수통합의 경우 일정 부분 보상을 하는데, 독일의 경우가 그 예라 하겠다. 합의적 대등통합의 경우 남북예멘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통일의 예처럼 각각의 군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게 된다.

군사자산의 경우 강제적 흡수통합은 흡수되는 군대의 군사자산을 몰수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베트남이며, 합의에 의한 흡수통합일 경우 별도의 합의 내용대로 결정하는데 독일의 경우가 그 예이다. 합의적 대등통합의 경우 기존의 군사자산을 각각 유지 관리하거나 일정부분을 통합 하는데, 남북 예멘의 경우가 그 예라 하겠다.

기타 통합 소요시간과 통합추진기구 구성여부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6> 군사통합의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

구 분	강제적 흡수통합	합의적 흡수통합	합의적 대등통합
협상의 주체	없음	있음. 정부 및 군 통수기능유지	
통일군(軍)의 군사제도	주도국 군제적용	주도국 군제 중심	합의에 따라 결정
무장해제 여부	해 제		비 해제
전역에 따른 보상	미 보상	합의에 따라 보상	기존제도 유지
군사자산	몰 수	합의에 따라 결정	유지, 통합
통합 소요시간	단기간	.	장기간
통합추진기구 구성	불필요	필요	

* 출처: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pp.49-50을 근거하여 재구성.

위와 같은 사례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쟁을 통한 ‘강제적 흡수통합’이나 재분리의 가능성이 높은 ‘합의적 대등통합’은 배제하고 남북한 합의에 의한 ‘합의적 흡수통합’을 전제로 기술하였다.

제 3절 분석의 틀

본 연구는 각각의 통합의 대상들의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통합이 완성되는 ‘기능주의 통합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즉, 군사통합역시 국가통합을 위한 하나의 기능이라는 관점이다.

기능주의통합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미트라니(David Mitrany)의 이론을 준용하면서도 그가 주장한 점진적인 기능주의 통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이성주의 학파의 ‘강제력적 사회이론(the cearcion theory of society)’을 전제하였다.

이는 군사통합이 다른 여타의 기능별 통합과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군사통합이 정치통합보다 선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치통합이 완성된 상태를 가정하여 군사통합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북한군 수용과 활용문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자 했다.

첫째, 남북한 국가·군사통합 시, 통일 한국군에 수용되지 못하고 사회로 배출되는 북한군이 국가통합의 방해 및 위협요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군사통합이 국가통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합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국가·군사통합의 개념과 유형을 정의하였다.

또한 국가통합과 군사통합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연구와 각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의 기술 방향과 중점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연구 자료를 선별하고 한계를 인식하였다.

둘째, 한반도 국가·군사통합의 과정과 사례 연구를 위하여 20세기에 국가통합을 이룬 주요 3개국인 베트남·독일·예멘의 분단과 통일과정, 국가통합과정, 군사통합과정, 군(軍)수용 사례를 검토하여 각각의 국가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국가통합의 특수성을 도출하고 차이점을 식별하여 통일국가 수립 및 군사통합 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인식하였으며, 남북한의 분단 및 통일과정과 한반도가 갖는 특수성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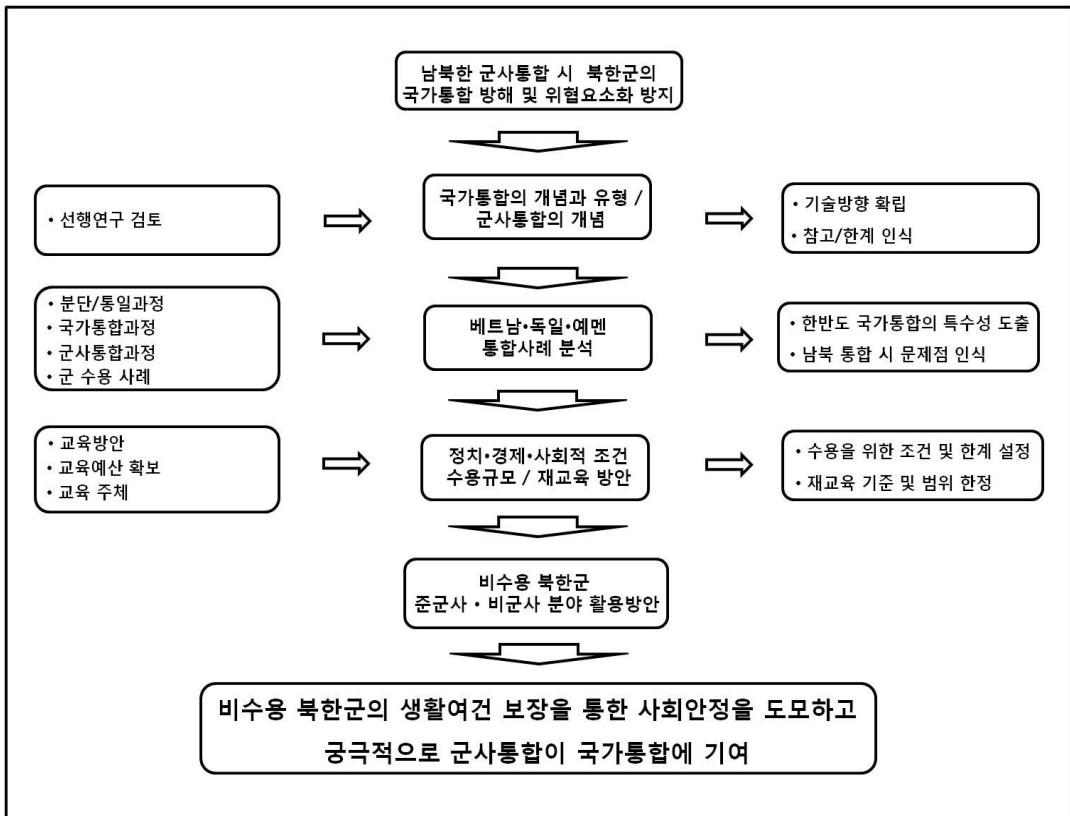
셋째, 이러한 특수성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국가의 군사통합과정에서 북한군의 수용규모를 알기 위해 먼저 통일 한국군의 규모를 추산하였으며, 규모 확인을 위해서는 기존 학자들의 사전 연구 자료와 합의에 의한 군사통합을 한 독일의 예, 경제·안보 상황이 유사한 선진국들의 군사력 등을 확인하여 개략적인 통일 한국

국의 규모를 한정 하였다.

넷째, 산정된 통일 한국군 내에서 북한군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북한군 수용을 위한 정치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수용 되는 북한군과 비수용 되는 북한군을 구별하였으며, 이렇게 산정된 수용·비수용 북한군에 대한 재교육 방법과 수준, 과목, 교육 주체에 대해 연구 검토한 후에 비수용 북한군 활용에 대하여 준군사분야와 비군사분야에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연구 전반에 걸쳐, 한반도 주변국과 국제환경과, 한반도의 분단과 통합의 역사 및 외국의 통합사례, 남북한이 처해있는 정치·경제·안보적 환경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비수용 북한군의 규모 및 그들에 대한 재교육 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2-3> 연구 분석 틀



제 3장 주요국가의 군사통합 및 군(軍)수용 사례

제 1절 베트남

1. 분단 및 통일과정

현재의 베트남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인류가 살고 있었다. 이후 높은 문화수준과 정치체제를 갖춘 반랑(文朗, Văn Lang)국 출현이래에 베트남 고대문명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동썬(東山, Đông Sơn)문화를 꽃피웠다. 그러나 베트남 민족은 기원전 3세기에 중국을 통일한 진(秦)나라의 침입으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외침을 받은 민족이다.⁴⁰⁾ 이러한 베트남의 역사는 그들이 외세에 대항하고 내부의 권력 투쟁에 익숙한 민족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민족 구성은 낌(Kinh)족이라고도 불리는 87%의 비엣족 이외에 약 13%에 달하는 54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⁴¹⁾

근세 이후 베트남의 투쟁의 역사를 보면 몇 단계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우선 인도차이나전쟁으로도 불리는 프랑스와의 투쟁의 시기 및 독립과 공산화의 시기, 미국과의 전쟁 시기, 미군 철수 후 남베트남군과의 통일전쟁시기로 나눌 수 있다.

가. 대 프랑스 투쟁 및 독립과 공산화시기

1802년 응우옌아인(Nguyễn Ánh)이 푸쑤언(Phủ Xuân)에 수도로 하는 베트남을 건설하였고, 이 시기에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들은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기로, 이때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에 대한 제국주의 정책을 피고 있었다.

1858년부터 약 30년간 프랑스군은 베트남의 다낭(Đà Nẵng)지역을 공격하였다. 1873년부터 1874년, 1982년부터 1884년까지 베트남 북부지역으로 공격을 확대하였으며, 결국 1883년 응우옌 왕조는 투항하였고, 1884년 ‘빠떼노뜨르조약’ 이래 약 80여 년 간 프랑스의 반봉건 식민지 상태가 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봉기가 있었으나 실패하였다.⁴²⁾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인 호치민은 1911년 서양 유학 중 미국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참고로, 1919년에 베트남 민족의 자유·민주·평등을 담겨있는 8개 요구사항을 ‘베

40) 김종욱 번역, 『승리의 교훈, 베트남 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p.3-4.

41) 존 펀스톤 엮음, 정연석 외 옮김, 『동남아의 정부와 정치』(서울: 심산, 2004), p.490.

42) 김종욱 번역, 앞의 책, pp.19-26.

르사이유회의'에 보냈으며, 1920년에는 프랑스공산당 창립에 참가하여⁴³⁾ 당원이 되었다.

외국에서 공산당활동과 베트남혁명 준비를 하던 호치민은 1941년에 귀국하여 '베트남 독립동맹'을 결성하고 서방의 연합국과 협력을 모색하기도 하였으며, 1942년 8월에는 중국국민당과 협력을 시도하기도 했다.⁴⁴⁾

그러나 본격적으로 베트남혁명을 시작되면서 1944년 12월 22일 '베트남해방군전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고 1945년 8월 19일 베트남총궐기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⁴⁵⁾

호치민은 1945년 9월 2일에 독립선언문 낭독하여 프랑스에 대한 투쟁을 공식화 하였으며, 1951년 이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공산당 동맹 '비엣-미엔-라오 동맹'을 체결하여 프랑스에 공동으로 대항하였다.

<표 3-1> 1911-1945년까지 호치민의 활동

년도	활동내용	년도	활동내용
1911	서양 유학 중 미국혁명과 프랑스 혁명 경험을 고찰	1929	하노이에 최초의 베트남 공산당 지부 설립 이어 인도차이나-안남, 인도차이나 공산연맹 창립
1919	'베르사이유회의'에 자유·민주·평등 내용의 8개항 보냄		
1920	프랑스 공산당 창건에 찬성표 행사, 창건에 관여	1930	3개 공산당 지부 통합, '베트남 공산당' 발족
1921	1929년까지 막스-레닌주의 전파, 혁명 노선 제창	1941	호치민 귀국, 베트남 혁명 시작
1924	제 5차 국제 공산당회의 참가	1944	12월 22일 '베트남해방군전대' 창설지시
1925	'베트남청년회의동지회' 설립, 신문 '청년' 발간	1945	8월 19일 베트남 총궐기 주도

* 출처: 김종욱 번역, 『승리의 교훈, 베트남 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19-38을 근거하여 재구성.

이러한 투쟁을 통해 베트남은 1954년 3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벌어진 '디엔비엔푸 전투'의 승리하였으며, 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종결 되었다. 그러나 디엔비엔푸 전투의 결과로 전쟁이 종결되자 전후처리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했으며 그 결과로 '제네바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양분되었다.⁴⁶⁾

43) 유제현, 『월남전쟁』(파주: 한울, 1992), p.45.

44) 최용호, 『물어보세요!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17.

45) 김종욱 번역, 앞의 책, pp.26-35.

46) 위의 책, pp.40-79.

나. 미국과의 전쟁 시기

1954년 5월 7일, 프랑스 식민 상태의 베트남은 ‘디엔비프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같은 해 7월 27일, 정전협정을 통해 프랑스는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억제를 위해 프랑스를 대신하여 베트남에 자연스럽게 개입하게 되었다.⁴⁷⁾

유엔헌장 제 2조 4항에는 ‘모든 회원국은 UN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무력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해 놨다.⁴⁸⁾ 따라서 남북베트남 간의 전쟁은 국제법상 UN이 개입할 수 없는 정치적 사안으로서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의 형태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북베트남은 1957년 제 12차 중앙당 회의에서 북베트남 군대창설을 결의하고 1960년 9월 제 3차 전당대회에서는 미국에 대한 항진노선을 결의하였다. 이후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제 1차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항미군사계획’을 실현하고 몇 가지 중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였다.

베트남은 내륙과 해안의 방어선 구축하고 주력부대를 재조직 하였으며 기동과 전투를 위해 조직과 편제, 무기와 장비를 확보하면서 정치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술훈련체계 역시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이에 남베트남군은 1963년부터 1964년까지 미국의 지원 아래에 약 18개월 동안 대규모 전략촌을 건설하여 남부를 평정하였다. 그러나 1963년 말, 남베트남 응오딘 지엠(Ngô Đình Diệm)대통령과 그의 동생이며 대통령 고문이자 비밀경찰의 수장이었던 응오딘누(Ngô Đình Nhu)이 쿠데타로 실각함으로써 남베트남은 1965년 6월까지 14차례의 쿠데타와 반 쿠데타가 벌어지는 혼란한 상태가 이어졌다.

이러한 혼란한 베트남 상황에서 1964년 8월 5일 미국은 베트남 북부 해안지역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였고 이듬해 2월 7일에는 북베트남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에 북베트남은 1965년 3월 제 11차 중앙당 회의에서 북베트남의 모든 경제와 인민 생활의 모든 부분을 전시상황으로 전환할 것을 결의하였다.⁴⁹⁾

47) 최용호, 앞의 책, p.23.

48) 국제연합(UN), UN헌장 제 2조 4항,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chapter-i/index.html>(검색일: 2016. 1.25).

미국은 1965년부터 1966년 사이에 남베트남군 72만 명과 18만 명의 미군이 북베트남에 대해 공격하였으나 성과가 미비하였으며, 재차 1966년부터 1967년 사이에 총병력 남베트남군 98만 명, 미군 39만 명을 전선에 투입하였으나 이 역시 별다른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⁵⁰⁾

그러나 1967년 말에 들어, 북 베트남군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베트남 역시 미국과 연합국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민들과 분리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충원과 병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 최대 명절인 음력 1월 1일 ‘땃(Tet)’을 기해 대공세를 취하였다.⁵¹⁾

1968년 1월에 벌어진 북베트남의 대대적인 공세로 인하여 같은 해 3월에 린든 B 존슨 미 대통령은 첫째, 북부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을 중지하고, 둘째, 미국 대통령 경선에 나가지 않을 것과, 셋째, 파리회의에서의 북베트남과의 협상을 수용 한다는 내용을 선포하게 되었으며, 결국 미국의 맥나마라와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였다.⁵²⁾

다. 통일전쟁시기

1973년 3월 29일 미군과 연합군은 베트남남부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때부터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간의 ‘강제적 흡수통합’이자 진정한 통일전쟁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73년 5월 북베트남 정치국회와, 1974년 7월에 개최된 제 21차 중앙당회의에서 당 서기장 레주언은 ‘남부해방전략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북베트남 정치국과 중앙위는 1975년부터 1976년까지 2년간 베트남 남부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략을 결정하고 계획을 통일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대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러한 북베트남의 대공세로 1975년 4월 30일 11시 30분에 남베트남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으며, 1977년 9월 20일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49) 김종욱 번역, 앞의 책, pp.111-119.

50) 위의 책, p.122.

51) 최용호, 앞의 책, pp.28-29.

52) 김종욱 번역, 앞의 책, pp.123-124.

근세 이후 프랑스의 반식민지 상태에서 무장독립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였으나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베트남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을 두고 통일 전쟁을 겪어야 했다. 한반도의 남북한도 통일 전쟁을 경험했으나 통일로는 이르지 못했다. 이제 반해 베트남은 무력에 의한 ‘강제적 흡수통일’을 이루었다.

2. 국가통합과정

가. 통합과정

베트남과 우리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분단 이후 통일과정은 다르다. 제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분단된 베트남과 한반도는 똑같이 전쟁을 통해 통일국가를 수립하려고 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국이 개입한 사실 역시 같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은 UN이 창설되고 제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벌어진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데올로기적 국제전이였다면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주도하에 몇몇 국가들이 연합한 6.25전쟁 보다는 국제적 이해관계가 적은 전쟁으로 볼 수 있다.

북베트남의 통일 이후의 국가목표는 베트남 전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완수였으며, 정책의 방향도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일국가와 사회를 구성 하는데 있었다.⁵³⁾

남부베트남을 점령한 북베트남은 기존의 남베트남 사이공 정부에 대항하여 수립된 남부공화국 ‘임시혁명정부’나 ‘해방 전선’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북베트남 주도의 통합에 대항하기 위해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는 1975년 7월 당시 UN사무총장이었던 콜트 하임에게 남부공화국 임시정부를 남베트남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해줄 것과 옛 사이공 정부를 대신하여 UN에 옵서버 자격으로 의석을 부여해 주고 UN 대사로 임명된 ‘진바치’를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과거 사이공 정권과 외교 관계가 있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시정부가 계승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교섭하기도 하였다.⁵⁴⁾

53) 이영희, 『베트남 전쟁』 (서울: 두레, 1991), p.163.

또한 베트남혁명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북부지역의 소수민족들도 1954년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난 후에는 자치구를 세워 자치구내의 지방공무원 임명이나 민병대 조직 등의 권한을 인정받았으나, 남부가 완전히 평정된 1975년 이후 북부의 자치구들의 자치권한이 폐쇄되어 불만이 증폭되었으며, 1976년부터 1981년까지 ‘피압박종족의 투쟁을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공산정부에 저항하기도 하였다.⁵⁵⁾

1975년 8월 베트남 노동당은 제 24회 중앙위원회 총회를 열어 조기에 남·북베트남의 통일과 사회주의화를 촉진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른 우선적인 조치로 하노이와 사이공에서 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남베트남 지역의 사이공에서는 ‘남베트남 임시정부’와 ‘해방 전선’, ‘평화세력연맹’의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이 회의에서 남북베트남이 통일을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였으나 시기와 속도를 두고 의견차가 컸다. 결국 이 의견차는 좁히지 못하고 통일을 한다는 대원칙만을 인정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1975년 11월에 남북회의에서는 1976년 전반기에 통일을 달성한다는 원칙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1976년 4월 25일에 남북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총선거 결과로 뽑힌 통일국회의원은 총 429명으로써 북베트남 출신이 249명, 남베트남 출신이 243명이 선출되어 같은 해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⁵⁶⁾

총선거에 의한 베트남통일국회의원의 수는 거의 1:1의 비율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북베트남출신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후에 공산당원이 되는 노동당원들의 수가 ‘제네바 협정’ 당시에는 남북베트남 전체 수천 여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4년이 되면 약 10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남베트남 출신들은 1만 여 명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남베트남 측은 총선에 의한 국회의원 수는 북베트남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당 간부나 행정 간부, 경제 분야를 운용할 간부들을 양성하지 못한 반면, 북베트남은 빠르게 사회주의로 전환하면서 이들을 양성했고, 이러한 결과 통일베트남의

54) 토모다 세키(友田 錫) 저, 양창식 역, 『배반당한 베트남 혁명-툰뉴탄의 증언』 (서울: 알파, 2002), pp.225-230.

55) 존 펀스톤, 정연식 외 옮김, 앞의 책, pp.490-491.

56) 토모다 세키(友田 錫) 저, 양창식 역, 앞의 책, pp.230-235.

주도권은 북베트남이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이유는 북베트남의 정규군이 하노이 주변에 주둔해 있었고 사회주의 특유의 사회 감시망도 북베트남 출신들로 채워져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남베트남 지역의 임시정부’나 ‘해방 전선’, ‘평화세력연맹’은 차례로 해체되는 수순을 밟았다.⁵⁷⁾

남베트남혁명세력과 북베트남 사회주의세력간의 대결에서는 결론적으로 무력과 조직력, 양성된 인적자원, 빠른 사회주의화로 무장한 북베트남이 자연스럽게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베트남의 혁명세력들은 북베트남과 정치투쟁을 통해서 패배하였지만,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사이공 정부의 관료와 군인들은 정치투쟁 자체를 할 수 없었다. 다만 미약한 수준의 반 사회주의 반정부 투쟁을 일부 전개하기는 하였다.

또한 ‘정치투쟁’ 패배하면 같은 세력이라도 철저하게 배제하는 사회주의 정권의 특징에 의하여, 북베트남은 뜻을 같이 했던 남베트남의 ‘임시혁명정부’와 ‘해방 전선’, ‘평화세력연맹’을 철저히 소외시켰으며, 통일과정에서의 공은 최대한 축소하고 그들의 활동을 일반 인민들의 기억에서 철저히 지웠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통일과 승리는 오로지 공산주의만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기억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나. 차별과 부패

북베트남에 의한 통일 이후에는 통일베트남의 미래를 결정지을 어린 학생들에게서도 차별이 일어났다. 남베트남의 과거정권의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아이들은 통일정권의 아이들과 차별을 당했는데, 예를 들어 자격시험이나 진급시험에서 과거정권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자녀들과 새로운 공산정권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둘로 나누어 차별하였다.

우선적으로 북베트남 공산주의자 아이들을 뽑은 다음, 기존 자유사이공정부의 자녀들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떨어뜨리는 전형적인 수법을 썼으며, 이런 조작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시험까지 모든 경우에 적용되었다.

또한, 고급 당 간부 자제들을 위해 특수학교도 세워졌는데 이는 공산당 간부 집에서 태어나 당 간부 손에서 직접적인 교육하고 훈련한 세대만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의 발로였다.⁵⁸⁾

57) 토모다 세키(友田 錫) 저, 양창식 역, 앞의 책, pp.240-242.

또 하나의 대표적인 부패의 예는 부정 축재의 문제로써, 남베트남 지역으로 내려온 북베트남 당 간부나 당국자들은 요직을 맡게 되면 퇴직 후를 위해 부정 축재를 하였는데, 중국계 베트남인을 탈출시키면서 축재를 하던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주민들을 신 경제구역 등으로 추방하고 그들의 집을 압수하거나 가구 및 비품 등을 압수하는 방법 등이며, 이러한 부패는 오히려 자유남베트남 사이공정부보다도 심하였다.⁵⁹⁾

차별과 부패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가 양극화 되어간다는 것으로써, 이러한 양극화의 결과는 가진 자는 더욱더 부를 축적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점점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상태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며, 이런 현상은 통일베트남도 예외는 아니었다. 통일 이후 극심한 부패는 통일주체세력인 북베트남 출신의 당 간부나 정부지도자들마저도 더 이상 그대로 덮어둘 수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 수동적인 저항

이렇듯 소위 철저하게 숙청을 당해 적극적인 투쟁의지와 수단을 망각하거나 빼앗긴 자유남베트남 사람들은 수동적인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수동적인 저항의 방법은,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는 저항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치집회에 줄거나 자는 척을 한다든지 현실과 사회주의 이론의 괴리를 말하거나 농촌지역에서는 가족이 먹고 살만큼만 농사를 짓고, 경작용 가축을 도축하여 팔거나 하는 행동으로 저항하는 것들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생산기계 등에 과부하를 걸어 망가지게 하거나 일부러 기계를 파손하고 가급적 이익이 나지 않도록 수작을 부리거나 자재를 낭비하거나 흠치는 방법으로 저항했다. 군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캄보디아 등, 외국파병에 동원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며, 이들을 일부러 숨겨주는 집들도 있었다. 또한 파병을 피하기 위해 당국자에게 뇌물을 쓰거나 일단 동원되면 탈출을 감행하는 방법으로 저항했다.⁶⁰⁾

58) 위의 책, pp.257-258.

59) 토모다 세키(友田 錫) 저, 양창식 역, 앞의 책, p.261.

60) 위의 책, pp.267-268.

3. 군사통합 및 군(軍) 수용사례

1944년 34만 명의 규모로 창설된 ‘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의 북베트남군은⁶¹⁾ 남베트남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면서 베트남전역을 통일 하였다.

북베트남에 의한 군사통합은 두 말할 것 없는 ‘강제적 흡수통합’의 형태를 띠었다. 더 나아가서는 이념도 같이하고 베트남과 함께 통일전선을 같이했던 남부공화국 임시혁명정부의 무장력도 동시에 북베트남군에 강제로 흡수해 버렸다는 것이다.

통일베트남의 군사력은 기존의 북베트남군의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북베트남군의 군제·편성·운용을 모두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군사통합은 통합의 기준과 목표가 명확하여 통합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정 중에 사회통합에 반하는 비인간적인 행동과 만행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고 하겠다.⁶²⁾

<표 3-2> 통일 전·후 남북베트남 군사력 현황

구 분	통일 전		통일 후	
	북베트남	남베트남		
병 령 (명)	계	583,000	565,000	615,000
	육군	570,000	450,000	600,000
	해군	3,000	55,000	3,000
	공군	10,000	60,000	12,000
부 대 (개)	육군	보병사단(18), 포병사단(1) 기갑연대(4), 독립보병연대(20) 대공미사일연대(15)	보병사단(11), 독립보병연대(2), 공정사단(1), 기갑항공중대(18) 독립포대(14)	보병사단(18), 포병사령부(1) 기갑연대(3), 독립 보병연대(15) 대공미사일 연대(20)
	해군	해안경비전대, 소형무장정크	해안경비전대, 상륙전대, 해병사단	호위전대, 경비전대, 상륙전대
	공군	항공중대(13)	항공중대(31)	항공중대(15)
장 비 (대/문)	육군	전차(900), 야포(2,500), 대공포(8,000)	전차(600), 야포(1,675)	전차(1,400), 장갑차(1,300), 야포(3,800)
	해군	간편조립교(28), 고속어뢰정(18) 소형정찰보트(20), 상륙정(20), 헬기(4)	프리깃함(9), 경비정(8), 소해정(7), 정찰보트(46), 상륙정(40)	프리깃함(2), 간편조립교(30), 경비정(72), 상륙정(37)
	공군	전투기(203), 헬기(18), 훈련기(50)	전투기(509), 헬기(685), 훈련기(48)	전투기(198), 헬기(35), 훈련기 (30)

* 출처: 장흥기·이량·이만중, 『남북군사통합방안연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4), p.40을 근거하여 재구성.

61) 존 펀스톤, 정연식 외 옮김, 앞의 책, p.504.

62) 권태영·김수영,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국방논총』, 제 20호(한국국방연구원, 1992), p.25.

북베트남은 무력으로 남베트남을 흡수 통일하였기 때문에 국가통합이나 군사통합에 있어서 피 통합대상인 남베트남에 대한 배려의 폭을 자신들이 쉽게 정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그들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할 수 있었다.

사이공이 함락되고 난 뒤 1개월 후, 북베트남은 혁명의 완성을 위한 과거역사청산으로 자신들의 적대계층을 탄압하였는데, 특히 약 15만 명에 달하는 과거 남베트남 사이공정부의 군인이나 공무원을 일반주민들과 분리한 별도 시설에서 재교육을 병자한 강제 수용을 하였으며, 이 과정 중에 약 6만 여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³⁾

남베트남 장병들과 옛 사이공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은 과거의 신분과 계급에 따라 그 기간이 달랐는데 병사나 하급 공무원은 3일간, 하급 군 간부나 공무원은 10일간, 고급 군 간부나 공무원은 1개월간 재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었다. 재교육은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교화소에 강제로 수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초 약속과는 다르게 그들은 최장 재교육 기간인 1개월이 지난 후에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었다.⁶⁴⁾

수용소의 종류는 ‘재교육수용소’, ‘강제노동수용소’가 있는데, ‘재교육수용소’는 과거 군인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반정부 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나 또 다른 수용소인 ‘강제노동수용소’는 반혁명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붙여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의 낙인을 찍어 수용하였다.

이 ‘강제노동수용소’는 1978년이 되어서야 인민재판에 의해 수용 여부가 결정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공안당국이 직접 운용하였다.⁶⁵⁾ 즉, 북베트남 정책에 반대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조직이나 개인은 공안당국을 장악하고 있는 북베트남 출신의 간부들에게 낙인찍혀 바로 ‘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 될 수밖에 없었다.

‘빈손사건’⁶⁶⁾ 이후 재교육을 피했거나 복역이 끝난 남베트남의 옛 군인들은 당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작은 지하활동조직을 만들어 지구 당국자, 공안 간부, 병

63) 황진환,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서울: 봉명, 1998), p.199.

64) 토모다 세키(友田 錫) 저, 양창식 역, 앞의 책, p.233.

65) 위의 책, p.252.

66) 사이공지부 카톨릭 교회가 재교육수용소를 피하기 위해 도주한 옛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숨겨준 사건, 주모자는 휴룡지구 교회 신부로 무기까지 숨기고 있었다. 이후 관련자는 재판에 회부되고 강제노동수용소에 보내졌다. 토모다 세키(友田 錫) 저, 양창식 역, 앞의 책, p.252.

사들을 암살하였다. 그러나 북역 중인 소위 ‘반동분자’들은 ‘신호치민루트’ 도로를 만드는데 투입되었고, ‘강제노동수용소’도 이 도로를 따라 설치되었다.

‘재교육수용소’와 ‘강제노동수용소’이외에도 ‘교도소’가 있었는데 이 교도소는 전쟁 당시에 자유남베트남에 대항하여 투쟁했던 ‘해방 전선’ 탄압에 관여한 사람들이 수용되었다. 주요 수용 대상들은 ‘해방 전선’ 소탕작전인 ‘휘닉스 작전’에 참가한 특수부대 군인들이나 자유남베트남 정부의 공안간부, 해방 전선 간부로서 이중간첩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다.

1978년에 쓰여진 도안판토아의 저서 ‘베트남 열도 수용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1978년 기준으로 강제수용소와 감옥 등에 수감된 인원이 80만 명이 넘는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인원은 5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⁶⁷⁾

북베트남에 의한 ‘강제 흡수통일’은 국가통합이나 군사통합 측면에서 통합주체의 주도하에 강력하게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북베트남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된 통일베트남은 통일과정에서 과오의 정도를 평가하여 앞서 언급된 격리나 수용, 도태의 처분을 내렸다.

베트남통일 이후 서방의 언론들은 ‘크메르루즈’나 다른 여타 무력에 의한 강제통일을 이룬 나라들에 비하여 베트남은 ‘피의 숙청’은 없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피의 숙청은 없었을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 집요한 숙청과 천천히 말살하는 ‘눈물의 숙청’은 존재 했으며, ‘눈물의 숙청’은 베트남 인민들을 저항할 수 없는 체념의 단계로 몰아갔다고 할 수 있다.⁶⁸⁾

제 2절 독 일

1. 분단 및 통일과정

1806년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으로 ‘신성로마제국(962-1814년)’이 멸망한 이래, 여러 소국가로 분열되었던 독일은, 프로이센이 주축이 된 ‘통일독일제국(1871-1918년)’을 건국하였고, 이후 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패한 뒤, 1919년 6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패전국의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다시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후 또

67) 토모다 세키(友田 錫) 저, 양창식 역, 앞의 책, pp.252-255.

68) 위의 책, p. 262.

다시 패전하여, 연합국에 의해 동서독으로 국가가 분단되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가. 분단과정

독일은 1871년 철혈재상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에 의해 통일된 이후,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유럽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세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독일 분단의 논의는 1941년 12월 소련의 수상 스탈린(Iosif Stalin)에 의해 분할에 관련된 구상이 제기 되었고,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도 이에 원칙적인 차원에서 동의한 바 있으며, 1943년 11월 테헤란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독일을 5개의 주로 나누어 분할 통치하는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⁶⁹⁾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가까워진 1945년 2월, 지금의 우크라이나 알타(Yalta)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미국·영국·소련 3국 정상은 ‘유럽자문위원회’의 건의에 의해 독일과 베를린을 미·영·소·프 4개국이 분할점령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이후 1945년 5월 7일 독일 국회의사당을 방어하던 독일군이 소련군에게 항복하면서 독일 3제국은 멸망했다.⁷⁰⁾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미국과 일본이 전쟁 중이었고 소련의 참전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1945년 6월 5일에 ‘베를린 선언(Berliner Deklaration)’을 공포되고, ‘런던의 정서’에서 결의된 내용대로 독일 전 지역과 베를린을 미국·영국·독일·프랑스 전승 4개국이 분할통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독일 전체의 통치를 위해서 사전에 구성된 ‘연합국 통제위원회’로부터 독일 통치를 위임받음으로써 이때부터 독일은 분단과 함께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⁷¹⁾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열린 포츠담 협정에서는 전후 독일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통치 원칙(5-D)을 결의하였다.⁷²⁾ 그러나 소련 주변국이 점차 공산

69) 김동명,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과주: 한울, 2010), p.21.

70) 김영탁, 『독일 통일과 동독 재건 과정』 (과주: 한울, 1997), p.52.

71) 김동명, 앞의 책, p.22.

72) ① 독일 군사력 감축과 무기산업 폐지를 통한 ‘비군사화’, ② 모든 나치 잔재를 청산, ③ 중앙정부의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화’, ④ 중공업과 금속산업시설 해체, ⑤ 독일 사회의 민주화 등이었다.

화됨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소련의 팽창주의 정책에 대해 독일을 침병으로 인식하고 1947년 1월에 점령지를 통합하였으며, 소련은 포츠담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체를 요구하였다.⁷³⁾

1948년 초에 미국과 서유럽 정부 6개국은 서방 연합국이 점령하고 있는 독일 지역을 민주주의연방정부체제로 통합하기로 하고, 1949년 5월 24일에 드디어 기본법이 공포 및 발효되면서 서독지역에 ‘독일연방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소련이 점령한 동독지역에서도 1949년 10월 7일에 ‘독일민주공화국’헌법이 선포되고 동독지역에서도 정부가 출범하였다.⁷⁴⁾

독일지역에 동서독으로 각각 정부가 구성되고 나자 분단은 점점 더 가속화 되어, 1950년 9월에 동독은 소련이 주도하는 ‘코메콘’에 가입하였고, 1951년 4월에는 서독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가입하였다. 또한 정치·안보·군사측면으로는 서독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표방하였고, 1955년 5월 9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였으며, 동독은 1955년 5월 14일에 ‘바르샤바조약기구(WTO)’에 가입하였다. 최종적으로 1956년에는 동서독 모두 ‘동독 인민군’과 ‘서독 연방군’을 창설 하였다.⁷⁵⁾

<표 3-3> 동서독 분단과정 연표

년도	활동내용	년도	활동내용
1945	포츠담회담에서 미·소·영·프 통치원칙(D-5) 결의	1949	서독, 기본법 공포(5.24), ‘독일민주공화국’ 선포(10. 7)
1946	영국 처칠, 소련의 ‘철의 장막’ 경고	1950	동독, ‘코메콘’ 가입
1947	미·영 점령지 통합(1969년 프랑스 동참)	1951	서독,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가입
	미국 ‘유럽부흥계획’(마셜 플랜) 발표	1955	서독,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가입(5. 9)
1948	미국 및 서방 6개국 독일지역 연방정부체로 통합 결의		동독,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가입(5.14)
	서독, 기본법 제정을 위한 ‘의회 위원회’ 구성	1956	동독 ‘동독 인민군’, 서독 ‘서독 연방군’ 창설

* 출처: 김동명,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과주: 한울, 2010), pp.25-29를 근거하여 재구성.

나. 분단시절 동서독 교류협력

동서독은 분단시절부터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고 교류와 협력을 했다. 역사적으로

위의 책, pp.22-24.

73) 김영탁, 앞의 책, p.54.

74) 김동명, 앞의 책, p.29.

75) 위의 책, p.29.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독일입장에서는 사회주의경제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서독은 건국 이후에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독일의 사회주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물자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경제를 계획·조정·통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다.⁷⁶⁾

그러나 동서독은 상호교류와 접촉에 대한 기본입장의 차이가 있었다. 서독은 동독과의 교류를 내독(內獨)의 문제로 생각하는 반면에 동독은 이를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로 접근하였다.⁷⁷⁾ 하지만 동서독이 가진 이러한 특수한 역사적 경험은 동서독이 교류하는데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분단 시절 동서독의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정치·경제·교통·인적자원·우편 및 통신·스포츠·자매도시 간 교류, 종교·방송분야 등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다.⁷⁸⁾

1) 정치 분야

동서독 간 관계개선의 대표적인 조치로는 1989년 11월 9일부터 통일이 될 때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된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등이며, 여기에 더해 ‘베를린 지위관련 전승 4개국 협정’을 들 수 있다. 1970년 3월 18일 최초의 정상회담이 동독의 에르프르트에서 서독총리인 브란트와 동독총리 빌리 슈토프프 간에 이루어졌고, 같은 해 5월 21일에는 서독 카셀에서 동독총리의 답방이 있었다.⁷⁹⁾

동서독 간 3차 정상회담은 1981년 12월 11일에 동베를린에서 동독 사통당 서기장 호네커와 서독 수상 슈미트 간에 개최 되었다. 당시의 국제정제는 미소 간에 대립이 격화 되었을 때인데 이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기인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동서독은 협력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4차 정상 회담은 1987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동독의 호네커 서기장과 서독의 콜 수상 간에 개최되었으며, 이 회담을 통해 ‘원자력안전을 위한정보와 경험

76) 김동명, 앞의 책, p.30.

77) 김영탁, 앞의 책, p.87.

78) 김동명, 앞의 책, pp.85-106.

79) 주독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서울: 통일부, 1993), pp.41-42.

에 관한 교환협정' 등에 합의를 했다.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이후부터 통일이 되기 전까지 추가로 4차례의 공식회담이 있었으며 비공식 회담도 수차례 열렸다.⁸⁰⁾

동서독 정당 간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당은 동독의 사통당과 서독의 사민당이었는데, 이 두 정당은 사회주의 전통과 노동운동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민당은 동독의 사통당을 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했으며 동독정권과의 대화의 창구를 항상 유지하고 있었다. 이 두 정당은 1980년대 유럽의 군비통제를 통한 평화구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했다.⁸¹⁾

공산당에 대한 강경입장인 서독의 기민당은 1985년까지 동독과의 공식적인 접촉과 대화는 없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동서독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와 접촉을 시작했고 동독에 대한 강경노선을 완화하고 동독의 기민당과 동독의 군축과 평화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접촉하였다.

동독의 기민당은 서독의 기민당처럼 의회민주주의와 기독교사회주의를 표방했으나 사통당의 장기집권의 영향으로 위성정당으로 전락하다가 1990년 10월 초에 서독의 기민당에 흡수되었다. 동독의 자민당은 반공산당 성향의 지식인들과 중·소 제조업자와 같은 자본가를 겨냥해 사통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하다가, 결국 자민당은 1990년 8월에 서독의 자민당에 흡수되었다. 독일민주노동당은 농민층을 끌어들이면서 사통당을 측면 지원했고 1950년대 사통당 주도의 '농업집단화'에 적극 앞장섰으나 동독에서 치러진 마지막 총선에서 의회 진출에 실패 하였다. 독일 민족민주당의 경우는 전범협약이 없는 과거 퇴역장교들과 나치잔당들을 동독의 사회주의체제로 흡수하기 위해 소련과 사통당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통일 이후 서독의 자민당으로 흡수되었다.

동서독의 자민당은 공통의 자유주의 이념 아래에 동독의 대 서방 입장에 서독 자민당이 활용 되었는데, 이는 서독에서 연합정부가 출범 할 경우 외교부 장관은 자민당이 맡는 관례에 따른 동독의 전략이었다.⁸²⁾

80) 김영탁, 앞의 책, pp.82-86.

81) 김동명, 앞의 책, pp.86-89.

82) 위의 책, pp.88-90.

2) 경제 분야

미국은 이미 1947년부터 소련을 비롯하여 그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를 막고 있었으며, 일본을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지원 때문에 동참하고 있었다.⁸³⁾

동서독 간의 서로 다른 경제체제와 소련에 의해서 달라진 화폐에 의해, 1951년 9월 동서독 간 경제 협정인 ‘베를린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사실상 양 국가 간 경제교류는 불가능 했다. 이 협정은 1990년 7월에 ‘경제·화폐·사회연합’이 발효되기 전까지 동서독 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에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1972년까지 국제법과 국가법상으로 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정이라기보다는 교역을 위한 잠정 협정에 가까웠다.⁸⁴⁾

동서독 간 거래는 현격한 구매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에 설치된 각각의 중앙은행에서 ‘청산단위(VE=1 동서독 마르크)’로 이루어졌다. 또한 수입의 양이 동독이 훨씬 많은 것을 고려하여 동독에 대해서는 ‘무이자 초과인출’이 가능한 ‘스윙(swing)제도’를 적용 하였다.

<표 3-4> 동서독 교역이 대외무역에 차지하는 비율 단위: %

구 분	1955년	1970년	1987년
동 독	12.3	11.4	7.6
서 독	2.3	1.8	1.5

* 출처: 김동명,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과주: 한울, 2010), p.90을 근거하여 재구성.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 협력은 서독이 1951년에 가입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협정(GATT)’이나 1957년에 가입한 ‘유럽경제공동체(EEC)’에서 서독이 동독과의 거래가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님을 강조하여 동독은 서독을 통해 관세 없이 서유럽에 동독 제품을 수출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동서독간의 경제 교류는 서독 입장에서는 큰 경제적 효과는 없었으나 동독에게는 매우 큰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⁸⁵⁾

83) 주독대사관, 앞의 책, pp.332-333.

84) 김동명, 앞의 책, p.90.

85) 위의 책, pp.90-92.

개인 간의 경제교류는 1972년에 여행이 허가되기 전까지는 주로 우편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선물증계회사’를 통해 동독에 물건을 보내기도 했다. 1960년대에는 현금 송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로 현물을 지원했으며, 1957년부터 1990년 사이에 총 13억 970만 마르크가 동독에 지원되었고, 천주교회는 약 3억 4,000만 마르크에 달하는 물자를 지원했다.

서독의 자발적인 지원 이외에도 서독주민과 정부는 동독에 개인적으로는 ‘도로이용료’, ‘비자 신청금’, ‘강제 환전금’을 지불해야 했고 정부는 서비스시설 이용대금, 정치범석방, 통행세 및 도로이용료, 일반투자어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⁸⁶⁾

그러나 동서독 간의 용역과 재화의 교류는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으나, 비상업적인 경제적 교류, 즉 개인적인 재화의 규모는 표본추출 등을 통해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며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⁸⁷⁾

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동독경제발전에 기여 보다는 동독의 경제의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동독의 국제거래에서 지불능력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1972년 소규모 외환의 보유가 가능해진 동독국민들은 서독 마르크화를 제 2의 결제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서서히 서독 경제에 종속되어 갔다.

서독으로부터 지원 받은 동독교회는 동독주민에게 지원받은 물품을 나눠주고 서독 경제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동독 내 반체제 인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동독 정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아이러니하게 동독의 안정보다는 동독체제의 와해를 초래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3) 교통 및 우편·통신 교류

최초 전승 4개국은 점령지역의 교통과 통신을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냉전이 점점 심화되면서 점령지역에 대한 통일된 관련법규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동서독간의 민간교통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⁸⁸⁾

분단 이후 동서독은 소련군 점령사령관이 각각 하나씩 허용한, 도로·철도·항공을

86) 김동명, 앞의 책, pp.95-96.

87) Siegfried Kupper, “Die Inner deutschen Wirtschaftsbeziehungen und ihr politischer Stellenwert,” *Politische Bildung*(January, 1990), S.2.

88) 김영탁, 앞의 책, p.98.

통하여 왕래할 수 있었다. 이마저도 1952년 5월 5일 소련통제위원회의 통제가 강화되자 상호간의 왕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동서독간의 교통 교류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소련과 서독간의 우호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급진전하게 되었다.

1971년 12월에는 ‘베를린 교통협정’이 동서독 간 체결 되어, 육로 및 철도, 수로를 이용한 동서독 간의 이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독주민들의 동독 지역에 대한 여행이 한결 수월해 졌다.⁸⁹⁾

1972년 5월 26일에는 동서독 간 ‘교통조약’이 체결되어 교통교류는 급증했고 여행은 더 쉬워졌다. 교통교류가 늘어나면서 동서독 간에는 더 많은 물질·인적 교류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하여 동서독은 민족동질성을 잃지 않고 통일에 가까워 질 수 있었다.⁹⁰⁾

우편과 통신 분야 교류역시 분단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베를린 봉쇄와 1952년 5월 27일 동독이 서베를린과의 전화선을 끊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동독과 서독의 우편 및 통신교류는 활발해 졌으며, 1972년 12월에 체결된 기본조약을 바탕으로 1976년 3월 30일 동서독 간 우편 및 통신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전에는 동서독 간 모든 지역이 직통전화로 통화가 가능했다.

서신교류의 경우는 동독의 완전히 단절된 적은 없었고 1988년에는 편지가 2억 건, 소포가 3,600만 건의 왕래가 있었다.⁹¹⁾

<표 3-5> 동서독 통신연결 회선 수

단위: 개

연도(년)	전화	전보	텔레кс
1965	34	28	46
1971	284	86	102
1979	1061	88	126
1988	1529	88	130

* 출처: 주독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서울: 통일부, 1993), pp.512-513을 근거하여 재구성.

89) 위의 책, p.100.

90) 김동명, 앞의 책, pp.97-99.

91) 위의 책, pp.101-102.

4) 인적 및 자매도시 간 교류

분단 이후에도 동서독 간 인적교류는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서독정부의 경우는 동서독 간 인적교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서독주민들에게 동독방문을 장려하였으며 동독주민의 서독방문을 환영했다. 그러나 1952년 5월 동독 당국에 의해 국경이 완전히 차단되어 동베를린을 제외하고는 왕래 할 수 없었으며 이마저도 1961년 베를린장벽이 설치 된 이후에는 왕래할 수 없었다.

전술한바와 같이 1971년 12월 11일, 31회에 걸친 장기간의 협의를 거쳐 동서독 간에 최초의 교통조약인 ‘동서독정부 간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민간인과 재화에 통과 교통에 관한 협정’이 체결⁹²⁾되어 1972년 이후 부터는 서베를린 주민들의 여행이 크게 좋아졌다. 이와 반대로 동독당국은 동독주민들의 서독방문을 최소화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허용의 범위는 서독정부의 재정지원에 마지못해 제한적으로 응하는 수준이었다.

<표 3-6> 동서독 인적교류 과정

년도	활 동 내 용	년도	활 동 내 용
1946	소련 점령군 여권 소지자만 동독지역 여행가능	1963	동·서독 ‘통과사증협정’ 체결, 서독 주민 동독지역 친척방문 가능
1952	소련의 동독 국경 폐쇄, 동베를린만 방문 가능	1964	동독 연금수령자 중 서독지역 친척 있는 경우 4주간 체류 가능, 서독주민도 동독지역에 친척 있는 4주간 체류 가능
1953	동독 연금수령자만 제한적 서독지역 방문 가능		
1961	베를린 장벽 설치, 동·서독 왕래 완전 차단	1972	서독 주민 동독지역 여행여건 개선

* 출처: 김동명,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과주: 한울, 2010), pp.99-100을 근거하여 재구성.

동서독 인적교류는 1970년대 초를 기준으로 260만 명의 서독주민이 동독을 방문했고, 같은 기간 동독주민은 100여만 명이 서독을 방문 했으며, 1970년대 말까지 평균적으로 300만 명의 서독주민이 동독을 방문했고, 같은 시기 동독주민은 약 140만 명이 서독을 방문 했다.

1987년부터 1989년에는 동독을 방문한 서독주민은 연평균 550만 명으로 늘었으며, 서독을 방문한 동독주민은 2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⁹³⁾

92) 주독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부, 1993), p.266.

동서독은 인적교류와 함께 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통한 민족동질성 유지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진 자매결연은 1989년 12월 말까지 62개 도시가 자매결연을 했고, 700여개의 서독도시가 동독도시들과 자매결연 맺기를 희망한 상태였다. 동서독은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통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환경문제에 관련된 문제와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거나 문화행사나 청소년교류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⁹⁴⁾

5) 종교·스포츠·방송 교류

1970년대 이전까지 동독은 동서독 간 교회단체를 분리하려고 노력하거나 교회탈퇴운동을 장려하고 동독내의 종교단체를 사회주의 사상이 체제를 홍보하거나 대변하는 기관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다 호네커정권이 들어선 뒤부터는 종교에 대한 탄압이 점차 줄어들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독일신교 연합회’는 종교대회를 통해 분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으며, 1961년 베를린장벽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통일문제까지도 논의될 만큼 활발하였다.⁹⁵⁾

베를린장벽 설치 이전에는 독일신교연합회(EKD)가 주관하는 종교대회가 동서독이 번갈아 가면서 2년마다 개최되었으나,⁹⁶⁾ 베를린장벽 설치 이후에는 동서독 신도들이 만날 수 없게 되었으며, 1969년에는 동독 내 ‘신교연합회’는 ‘독일신교연합회’에서 분리되어 ‘사회주의 내에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독일신교연합회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평화교육을 하였으며 동독 내 반체제인사나 단체들을 보호하고 동독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통일 직전 혼란의 시기에는 동독 시민들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기여했다.⁹⁷⁾

경제적으로 서독의 교회들은 동독정부에게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들을 지원하여 동독교회 분배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일 전까지 동독지역 교회에 지원된 금액은 약 28억 마르크에 달했다.⁹⁸⁾

93) 김동명, 앞의 책, p.101.

94) 위의 책, pp.103-104.

95) 김동명, 앞의 책, pp.104-105.

96) 김영탁, 앞의 책, p.119.

97) 김동명, 앞의 책, p.105.

스포츠의 경우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로 1950년대 초반부터 ‘1국가 1올림픽위원회(NOC)원칙’에 따라 단일팀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렬되었다. 그러나 1956년 1월 ‘제 7회 동계올림픽’, 1956년 ‘제 16회 멜버른 올림픽’, 1960년 ‘제 17회 로마 올림픽’, 1964년 ‘제 18회 도쿄올림픽’ 등 4차례에 걸쳐 단일팀을 구성해 출진했다.

1965년 10월, IOC 마드리드 총회에서 동서독 각각의 국내 올림픽 위원회(NOC)를 인정함으로써 1968년 ‘제 19회 멕시코 올림픽’부터는 동독과 서독이 각각 출진했다. 스포츠에 대한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스포츠교류가 재개 되었으나 동서독의 서로 다른 스포츠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동독의 엘리트 체육인들의 서독 탈출의 우려로 인하여 활발하지는 못했다.⁹⁹⁾

이렇듯 1957년부터 1961까지 동서독간의 스포츠 교류는 활발하였으나 베를린장벽이 설치된 1961년부터 1966년까지 교류는 거의 없었다.¹⁰⁰⁾

<표 3-7> 1957년부터 1961년까지 동서독 스포츠 교류 단위: 회

연도(년)	교류 횟수
1957	1,530
1958	386
1959	624
1960	683
1961	738

* 출처: 주독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서울: 통일부, 1993), p.658을 근거하여 재구성.

언론과 방송은 1950년대부터 동독언론인은 서독에서 서독언론인들과 같은 차별 없이 같은 조건으로 취재가 가능했으나 서독언론인의 동독 내 취재는 1972년까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72년 기본조약이 체결됨으로써 1973년과 1974년간에 동독은 28개의 특파원 상주를 허용했고, 서독 내에도 6명의 동독 특파원이 주재했다.

서독 언론들이 동독을 취재한 기사내용이 알차고 심도 있어지자 오히려 동독주민

98) 김영탁, 앞의 책, pp.120-121.

99) 김동명, 앞의 책, pp.102-103.

100) 주독대사관, 앞의 책, p.658.

이 서독방송에 나오는 동독 소식을 듣고 동독의 현 실정을 파악하는 수준이었다.¹⁰¹⁾

동서독간의 기본조약 제 7조에 의해 양국은 문화 분야에 대한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서독과 달리 동독은 사회주의 문화의 독창성을 주장하며, 서독과의 교류를 내독관계로 보지 않고 외국과의 교류라고 생각하였다.¹⁰²⁾

1970년대에 언론인 활동조건 개선에 따라 그 이전 보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동독주민들은 서독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서독과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많았고 동독의 공산체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¹⁰³⁾

2. 국가통합과정

독일은 1806년 나폴레옹 전쟁으로 신성로마제국이 멸망한 이래 1871년 프로이센 왕국이 주축이 된 ‘통일독일제국’이 될 때까지 연방과 연합에 대한 경험이 많았으며 이전의 ‘한자동맹’과 1834년 1월 1일에 공포된 ‘독일관세동맹(Deutscher Zollverein)’, 등 일종의 경제통합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의 경험이 많았다.¹⁰⁴⁾

또한 300여개의 개별 국가로 나누어진 역사적 경험 때문에 연합과 연방의 경험이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독일 정부나 국민들에게 있어서 상대 세력과의 협상과 조정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드리기 쉬웠다고 할 수 있다.

동서독의 통일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요인은 몇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로, 동서냉전이 종식되면서 동독의 맹주였던 소련이 몰락하고 그 여파로 동구권이 몰락이며, 둘째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고, 셋째는 동독 공산체제의 붕괴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서독체제의 우월성과 서독정부의 일관된 독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⁵⁾

위의 4가지 조건이 우연 또는 필연적으로 서로 상승작용을 했기 때문에 독일통일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1985년 3월 10일에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101) 김동명, 앞의 책, p.105.

102) 김영탁, 앞의 책, p.124.

103) 김동명, 앞의 책, p.106.

104) 1815년 비인회의에서 독일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바이에른, 작센 등 39개의 국가들이 연방회의를 구성하였다. 김영탁, 앞의 책, p.25.

105) 위의 책, pp.127-147.

로 교체된 이후 개혁과 개방이라는 기치아래 소련과 동구권국가들의 정치와 경제 체제를 개혁하려 했다.

1987년 1월 고르바초프는 당시 동구권에 대한 소련의 실패한 정책, 예를 들어 동구권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민주주의의 결여, 열악한 경제상황, 인권문제, 주거 및 여행의 자유제한 등의 문제가 대두 될 때마다 소련공산당이 강경진압한데 대한 실책들에 대해서 공산당과 사회의 개혁을 요구했으며,¹⁰⁶⁾ 1988년 5월 23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개혁과 페레스트로이카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고 민주주의와 개방을 역설했다.¹⁰⁷⁾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정책은 그동안 탄압의 대상이었던 시민운동과 민주화를 위한 재야운동가들에게 소련이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서독은 1989년 9월, 국경 개방에 따른 대규모 동독탈출 이후부터는 공개적으로 동독정부에 개혁을 요구했고, 1989년 9월 4일 라이프니치에서의 첫 시위를 필두로 많은 도시에서 대규모시위가 벌어졌다.

이어서 1989년 10월 7일, 동독 창설 40주년 기념식을 기해서 동독 전 지역에서 사통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극렬한 반정부시위가 벌어졌으며, 1989년 10월 18일 사통당 서기장 호네커가 사임하고 다음날 에곤 크렌츠(Egon Krenz)가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이어 10월 24에는 동독인민위원회가 시위 격화를 이유로 동독당국에 정치개혁을 요구하였다.¹⁰⁸⁾

1989년 11월 3일에 동독당국이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한 동독주민의 서독여행을 허가하자, 겨우 2일 만에 15,000명의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을 했으며, 다음날인 11월 4일에는 100만 명의 동독시민들이 사통당의 퇴진을 요구하며 동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 모여 시위를 했는데 이는 동독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결국 11월 8일 사통당 정치국요원 전원이 사퇴했고, 11월 9일에는 정치국 요원 귄터 샤브브스키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동독주민의 전면적인 해외여행자유화를 공표했다. 이것이 결국 베를린장벽을 무너트렸고, 이날 하루 약 20만 명의 동독주민들이 서독 땅을 밟았다.¹⁰⁹⁾

106) 김동명, 앞의 책, p.109.

107) Vadim Medish, *The Soviet Union*(New Jersey: Prentice Hall, 1991), pp.351-352.

108) 김동명, 앞의 책, pp.110-111.

1989년 10월 바르샤바조약기구 외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회원국의 주권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 공표되자 폴란드, 헝가리의 민주화의 불길이 동독으로 번졌으며, 이후 독일과 더불어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도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¹¹⁰⁾

동독 인민회의의 비밀투표를 통해 1989년 11월 13일 호르스트 진더만(Horst Sindermann)이 이장에 선출되었으며, 총리에 한스 모드로(Hans Modrow)가 선출되었다. 이때 한스 모드로는 성급한 통일론에 반대했으며, 오히려 동독통일의 독자성과 통일논의 간에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독 역시도 이때까지는 통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11월 28일 콜 수상은 통일방안 10개항을 제시하면서 통일의 과정에 동서독 간의 국가연합을 제안하였다. 전 수상인 브란트도 ‘공동성장변영’정도의 수준만을 언급하였고, 동독의 시민단체도 민주화와 개혁, 여행자유화정보만 요구하는 상황이었다.¹¹¹⁾

그러나 상황은 급변하여 1989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동독지도부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동독의 시민들도 ‘우리도 같은 독일국민’, ‘우리는 하나의 통일된 독일국민’이라는 구호아래 처음으로 통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¹¹²⁾ 1989년 11월 20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이후 조사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독일국민의 70%가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³⁾

1989년 12월 19일에는 서독의 콜 수장과 동독의 모드로 총리 간에 ‘협력 및 근린공동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은 동독의 평화적 혁명과 독일통일이 최종 목표임을 밝혔다. 이를 통하여 동서독 간의 통일이 대외적으로 가시화 되었다.

동독의 시위대는 요구는 12월부터 더욱 거세졌으며, 동독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시위는 줄어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선거와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시위대도 줄어들었는데 이는 그들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었기 때문이었다.

1990년 2월부터 이미 독일의 통일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소련은 ‘2+4’ 회담에 쉽게 동의했고, 1990년 5월에 ‘2+4 외상 회담’을 시작 이래 총 4차례에 걸친 회담을 실시하였으며, 1990년 4월 12일 동독인민회의는 대 연정을 통하여 동독을 서독으로

109) 위의 책, p.114.

110) 김영탁, 앞의 책, pp.130-131.

111) 김동명, 앞의 책, pp.114-115.

112) 위의 책, p.115.

113) 김영탁, 앞의 책, p.138.

편입을 추진했다. 서독정부도 통일준비를 위해 1990년 5월 18일 ‘경제·화폐·사회연합’에 서명하였고, 이에 따라 독일은 1990년 7월 1일부로 서독마르크화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서독경제에 편입되었다.¹¹⁴⁾

1990년 8월 23일 동독의회는 기본법 23조에 의한 통일을 가결하였는데, 기본법 23조란 1945년에 동독 5개주의 의회가 서독편입을 결정하면 서독에 간단히 귀속되는 법이며 이는 동독이 서독의 주로 편입된다는 것은 현재의 동서독의 국경선을 유지한다는 의미로써 인접국과의 영토분쟁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표 3-8> 1989~1990년까지의 독일 통일일지

년 도	내 용	년 도	내 용
1989.6.27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개방	1989.11.28	서독수상 콜, 10개항 발표. 통일과정에서 국가연합 제안, 궁극적 목표는 통일이라고 밝힘
1989.9.19	재야단체를 등장, 신 포럼(NF), 민주주의 지금 당장(DJ), 민주약진(DA)	1989.12.4	시위대가 슈타지 건물 점령, 모든 자료 존안 요구 '슈타지 문서 특명관'에 의해 지금도 보관
1989.8.8	동독주민 서독 대사관 진입	1989.12.7	5개 정당과 7개의 시민단체가 원탁회의를 개최. 동독 신헌법 제정과 슈타지 해체 결정
1989.9.30	체코 프라하 독일 대사관에 진입했던 6,000명의 동독 주민들이 열차를 이용 서독으로 탈출	1989.12.19	동·서독 정상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회동. 동독의 평화적 혁명과 독일 통일이 최종목표임을 밝힘
1989.10.7	동독건국 40주년 기념식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벌어짐. 11일 뒤에 호네커 사임	1990.2.24	콜 수상과 조지 부시 대통령 간 회동. 미국은 독일의 통일을 지지하고 나토가입 입장 밝힘
1989.11월	수십만의 라이프치히 월요 시위대가 반정부 시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통일구호 등장	1990.3.18	동독 인민의회 선거. 1,220만 명의 유권자와 24개 정당 참가. 독일연맹이 48.1%로 압승
1989.10.18	신임 사통당 서기장 크렌츠 등장 12월 초 모든 공직에서 물러남	1990.7.1	동·서독 국가조약 체결. '경제·화폐·사회연합'창설 동독이 완전히 서독 경제체제에 편입
1989.11.4	동베를린 대규모 시위 (50~100만 명) 반체제 인사들의 연설	1990.7.14	독일-소련 정상 코카서스 회동. 소련은 독일 통일 승인. 군사체제 독일에 일임. 소련 경제지원 약속
1989.11.9	정치국 요원 샤보브스키가 TV인터뷰에서 전면적 여행자유화 발언으로 베를린 장벽 붕괴.	1990.9.12	'2+4 조약' 체결. 국경선, 핵·화생방 무기 보유, 독일 연방군 병력 규모, 전승 4개국 책임 종료 등을 논의
1989.11.13	개혁성향의 공산주의자 한스 모드로 동독총리 취임, 12월 1일부로 '사통당의 선도주의' 삭제 됨	1990.10.3	분단 45년 만에 독일 통일.

* 출처: 김동명,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과주: 한울, 2010), pp.122-126을 근거하여 재구성.

1990년 8월 31일 서독 연방장관 쇼이블레와 동독의 정무차관 크라우제는 ‘통일조약’에 서명하고 발표하였으며, 9월 20일에는 서독 연방회의와 동독의 인민회의를 모

114) 김동명, 앞의 책, pp.116-117.

두 통과하고 다음날 서독 연방 상원을 통과한 후에 9월 28일에 발효되었다.¹¹⁵⁾

통일조약은 전문과 함께 총 9장 45개조의 본문으로 이루어져있고 각 조문 적용 기준을 명시한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내용은 동독의 독일연방 가입 절차와 독일 통일에 관련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2+4 조약'이 체결 되어야 국제법상 인정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다.¹¹⁶⁾

1990년 10월 3일 동독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탈퇴했으며, 10월 2일에는 동독인 민의회를 해산, 1990년 12월 2일에는 8월 13일에 동서독 간 체결된 '선거협정'에 따라 '제 12대 전체독일연방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이후 1991년 1월 17일, 드디어 초대 통일독일수상으로 콜 수상이 취임했고 동일의 회 의원 663명이 독일의사당에 등원했다.¹¹⁷⁾

3. 군사통합 및 군(軍) 수용사례

통일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1990년 1월에 동독당국은 일련의 군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을 6개월 줄여 12개월로, 장기복무자의 복무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으며, 장기복무직업군인들의 최소군무기간을 25년에서 24년으로 줄였다. 이런 조치로 동독인민군은 몇 개월 만에 4만여 명의 병력을 줄일 수 있었으며 통일직전에는 약 10만 여명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할 수 있었다.¹¹⁸⁾

동서독 양 군대를 통합하는 일은 최초부터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로 큰 논쟁이 있었다. 서독은 1국가 1군대의 원칙에 따라 동독인민군을 해체하고 연방군이 병력·장비·물자·시설 등을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동독인민군은 서독연방군과 동독인민군이 각각 존립하는 1국가 2군대를 주장하였다.

또한 동독인민군은 기존의 바르샤바조약기구에 그대로 남고, 서독 역시 NATO에 남아 각기 다른 군사동맹체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1990년 7월 콜 수장과 고르바초프의 회담에 따라 동독인민군의

115) 김영탁, 앞의 책, p.150.

116) 김동명, 앞의 책, pp.118-119.

117) 위의 책, pp.120-121.

118) Hans-Joachim Gießman, *Das unliebsame Erbe: Die Auflösung der Militärstruktur der DDR*, (Baden-Baden: Nomos, 1992), S.24-40.

주장은 수용되지 못하고 일단락되었으며, 군사통합 원칙에 따라 동독인민군은 해체되었다.¹¹⁹⁾

가. 통합과정

동서독군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2+4’ 국가들과의 담판이 필요했으며, 이런 이유로 동서독군 통합을 위한 시간은 1990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의 시간 밖에 없었고, 실제 통합준비를 위한 작업시간은 1990년 8월부터 동년 10월 2일까지 약 5주간의 시간 밖에 없었다.¹²⁰⁾

1990년 8월 17일, 본격적인 군사통합을 위해 동독국방부에 20여 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연방국방부통합대비단’이 설치되었다. 통합대비단의 역할은 ① 정확한 동독인민군 실태 파악, ② 명령권 및 지휘권 인수에 따른 문제점 사전해결, ③ 동독지역에 배치될 연방군 조직구성과 주둔지 준비 등이었다. 기존의 ‘통합대비단’은 통일 이후에 임무를 연방국방부 베를린 외청(外廳)에 넘겨주고 해체하였다.

<표 3-9> 해체이전 구동독군 규모

구분	정규군 규모	구분	예비군 규모
계	약 170,000	계	1,760,000
직업군인	73,000	직장 예비군	500,000
민간인(군무원)	52,000	국경 수비대	40,000
사관생도	4,000	민간 방위대	500,000
군사아카데미 장교수강생	1,500	기동경찰	120,000
징집병	약 40,000	군사스포츠협회 회원	600,000
* 국가안전부 소속 제르키스 연대와 동독 8~9학년 학생들의 교련수업은 미포함			

* 출처: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5 국방부』 (서울: 통일부 통일정책실, 2011), p.394를 근거하여 재구성.

통일이 다가오자 동독은 1990년 9월 24일에 바르샤바조약기구에서 탈퇴했으며, 동독 국방장관 에펠만은 10월 2일자로 동독인민군 장군들과 제독들에게 제대를 지시

119) 김영탁, 앞의 책, p.190.

120)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5 국방부』 (서울: 통일부 통일정책실, 2011), p.391.

하였다.¹²¹⁾

해체 이전의 동독인민군 총 병력은 약 17만 명이었으며, 전시대비 무기는 33만 명에 맞춰져 있었다. 예비군의 경우는 약 176만 명으로, 여기에는 직장예비군을 포함하여 군사스포츠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¹²²⁾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기해 동독국방부 장관의 일일명령으로 103,000명의 동독군인들을 국방의 의무로부터 해제시켰고, 연방군은 1,500개의 단위부대와 시설, 9만여명의 군인들과 각종 장비·물자·시설 등을 인수하였다. 이로써 동독인민군은 완전히 해체되었으며, 독일연방군이 통일독일의 국방을 책임지게 되었다.¹²³⁾

구동독군이 연방군에 인수 될 당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연방군과 인민군의 기대가 서로 달랐으며, 재량권 역시 달라 실제로 인민군은 약자의 입장이었다. 또한 인수에 대한 경험과 정보도 부족했으며, 준비기간 역시 매우 짧고 부족했다. 이러한 이유로 연방군에 인수될 동독인민군의 사기는 매우 낮았으며, 인민군 내에 불안과 좌절감이 팽배한 상태였다.¹²⁴⁾

이러한 장애요인 있었지만 독일연방군은 동독지역까지 관할을 넓히고 ① 군 조직 재정비, ② 동독인민군 선별 흡수 및 교육훈련, ③ 무기와 시설 정비, ④ 군인 복지 개선, ⑤ 지뢰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독일연방군의 내부 통합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통합 작업을 위해 연방국방부는 동독국방부가 있던 슈트라우스부르크에 연방 ‘국방부 외청’을 설립하였고, ‘동부사령부’와 제 ‘7병무행정청’ 등을 설립하였다.

이어서 원활한 통합을 위해 베를린에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가 외청을 설치하여 동독국방부의 해체와 이에 따른 부가 임무를 수행했다. 이로써 그 동안의 동서독군의 통합 임무를 수행하던 ‘통합대비단’은 해체되었다.¹²⁵⁾

연방국방부는 동독지역에 ‘동부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으로 쇤봄 장군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동독지역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지휘하도록 하였다. ‘동부사령부’는 통합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동독지역의 군대를 연방군 지휘체제로 편입시키고 그

121) 위의 책, p.191.

122)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5 국방부』, 앞의 책, p.394.

123) 김영탁, 앞의 책, pp.191-192.

124)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5 국방부』, 앞의 책, p.400.

125) 김영탁, 앞의 책, p.192.

들이 사용하던 각종 시설과 물자, 장비와 무기를 보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동독지역에서 인수한 1,500개의 단위부대 및 근무처들 중 불필요한 관련 기구들은 해체하고 잔존한 부대들은 기존연방군 체제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하고 조정 및 개편하였다. 이 모든 작업을 9개월 동안 완료하고 1991년 6월 30일 해체하였다. 해체 전 동부사령부는 마지막으로 모든 지휘권을 연방 육·해·공군 및 의무군 참모총장과 합참차장에게 단계적으로 넘겨주었다.¹²⁶⁾

통일 이후 장교 1,200명, 부사관 800명으로 구성된 2,000여 명의 서독출신 군인들이 동독으로 파견 되었는데, 사단급 이상은 전원이 서독출신 장교로 보직되었으며,¹²⁷⁾ 대대급 이하의 지휘관의 경우는 동독과 서독출신이 1:1 비율로 보직되었고, 연대급 이상은 대체로 서독출신들이 보직되었다.¹²⁸⁾

병무행정은 동독지역의 제 7병무행정청과 동서독 각 주에 병무행정청이 설치되어 담당하였다. 과거 동독은 병무행정을 위한 기관과 군에서 병무행정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동독지역의 병무행정체제를 새로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 채용된 병무행정 요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각 기능별로 기초·중급과정의 연수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된 교육내용은 법치국가의 행정행위의 기본원리, 필수병무행정 등이었으며, ‘제 7병무행정청’의 공무원들 중 약 35,000여 명이 이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¹²⁹⁾

나. 병력통합

통일 당시 동독인민군 103,000명 중에 군을 떠난 인원은 7,000명으로, ① 장군(제독), ② 직업군인 중 55세 이상, ③ 군 사법요원, ④ 정치장교, ⑤ 국가보위부(슈타지) 관련 요원, ⑥ 과거 인권유린 전력자 및 의혹자, 등에 보직된 군인들이었다.¹³⁰⁾

그러나 6,000명에 달하는 국경수비대와 민간방위요원들은 일단 연방군 내의 민간 보직으로 자리를 바꾸었다. 따라서 통일 후 독일연방군이 인수한 총 동독인민군은 군인 90,000명과 군속 48,000명 수준이었다.¹³¹⁾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0년 연말까지

126) 위의 책, pp.192-193.

127) 김동명, 앞의 책, pp.304-305.

128) 김영탁, 앞의 책, p.193.

129) 위의 책, p.193.

130) 김동명, 앞의 책, pp.306-307.

연방군 내의 동독군은 약 69,000여 명으로 줄었다.¹³²⁾

<표 3-10> 동독인민군 병력인수현황

단위: 명

구 분	인수된 장기복무군인	2년간 시한부 근무 지원자	2년간 시한부 근무 전 선발자	연방군 근무지원자	연방군 근무 선발자
계	50,000	25,000	18,000	15,000	10,800
장교	24,000	11,700	6,000	5,600	3,000
부사관	23,000	12,300	11,200	9,200	7,600
병	3,000	1,000	800	200	200

* 출처: 김영탁, 『독일 통일과 동독재건 과정』 (과주: 한울, 1997), p.196을 근거하여 재구성.

인수된 90,000여 명의 군인들의 복무형태는, 장기복무 및 직업군인 50,000명, 의무복무군인 39,000명, 전역대기자 1,000명이었다. 장기복무 및 직업군인 50,000만 명은 9,000명의 참모장교와 15,000명의 기타 장교, 14,000명의 중사급 이상 하사관, 9,000명 이하의 중사급 이하 하사관, 3,000명은 병사였다. 이 중에서 전역대기 병사들은 6개월 간의 생계지원비를 받고 대부분 전역하였으며, 동독에서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은 통일 연방군의 병역도 완료한 것으로 인정했다.¹³³⁾

인수된 90,000명의 구동독군 중에서 1990년 10월에 ‘임시 계속고용자’로 인수된 병력의 수는 장교 24,000명, 병부사관 23,000명, 의무복무 병 3,000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인민군 해체업무에 종사하였고 1계급 강등 당했으며, 해체업무가 끝나면서 대부분 전역하였다. 또한 연방군은 2년 기간제로 25,000여명을 지원받아 이 중 약 10,000여명을 2년 후 받아들여졌으며, 대부분 더 낮은 계급으로 강등되었다.¹³⁴⁾

구동독군에서 통일 연방군에 편입을 원하는 장기복무 군인과 직업군인은 3단계의 검증을 거쳐 인수여부를 결정하였다.

1단계는 이들에게 기존계급 그대로 연방군계급을 부여하고 동독인민군에서 받던 봉급수준 그대로 지급했다. 이때 전역을 원하는 자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전역하는 경우 7,500마르크 퇴직금을 주었으며 이 제도로 약 20,000명이 제대를 하였다.

131) 김영탁, 앞의 책, p.193.

132) 김동명, 앞의 책, p.307

133) 김영탁, 앞의 책, pp.194-195.

134)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5 국방부』, 앞의 책, p.410.

이후 병무행정으로 전직을 한 2,000명을 포함해서 4,000명이 추가적으로 전역했다. 또한 계속 군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2년간 시한부 군인으로 복무하게 하였으며, 전역대기병의 경우도 2년간 시한부로 복무할 수 있게 하였다.¹³⁵⁾

2단계는 시한부군인을 지원한 사람 중 심사를 통하여 정식 연방군에 편입하는 작업이었다. 선별의 기준은 ① 군인 법에 명기된 적성, ② 자격, ③ 능력, 등이 판단 기준이었으며, 특히 과거에 기무나 국가보위부에 근무했거나 정치장교일 경우에는 철저히 배제했다. 이 단계에서 18,000명이 시한부 군인으로 2년간 복무 할 수 있었다.

이들은 ‘계급인수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연방군 계급과 봉급법에 의해 지급 하였는데, 이들의 봉급수준은 같은 동독출신 근로자들의 봉급보다 약간 높았으며 1995년 10월 기준으로 서독군인의 약 84% 수준이었다.

계급의 경우는 연방군의 평균 진급연안에 맞춰 조정하였고 통상적으로 1계급 낮게 조정 되었으며, 해당 계급의 경력이 짧으면 2~3계급 낮게 부여받기도 했다. 그러나 동독출신들도 진급에 필요한 경력과 자격을 갖추면 모두 진급할 수 있었다.¹³⁶⁾

마지막 3단계는 2단계에서 선발된 2년 시한부복무군인들 중에 직업군인이나 2년 이상 복무를 원할 경우, 즉 장기복무 군인들을 선발하는 단계인데, 기준은 적성과 경력평가이다. 장교의 경우는 초당적인 적성검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까지 남은 직업군인 및 장기복무 군인들의 수는 10,800명이었다.¹³⁷⁾

동독군의 연방군 편입규모는 1990년 7월 13일에 고르바초프와 서독의 콜 수장 간의 회담 2일 전까지만 해도 6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같은 해 8월 4일에는 5만 명 수준으로 낮아졌고, 최종적으로 11,0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구동독군들의 실망은 매우 컸다.¹³⁸⁾

동독연방군 중에서 통일독일연방군의 선별이 완료 되었다는 것은 병력 통합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했다. 선발 되지 못한 군인들에게는 퇴직금, 실업수단, 직업훈련 등의 복지혜택을 주어 전역 후 생활고를 없도록 조치했다. 연방군에 편입되어 근무하

135) 김영탁, 앞의 책, p.195.

136) 위의 책, pp.194-195

137) 김영탁, 앞의 책, pp.195-196

138)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5 국방부』, 앞의 책, p.408.

다가 전역한 군인들은 최초 편입되지 못한 군인들 보다 더 많은 퇴직금과 직업 준비금을 받았다.

연금액은 봉급의 75%를 받았으나 다만 동독시절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였고, 동독 시절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동독시절의 특혜가 없어졌으므로 연금수준이 일정부분 하향 조정되었다. 48,000명 수준의 군무원이나 군속들의 고용은 당분간 지속하다가 점차적으로 22,000명으로 줄었다¹³⁹⁾

<표 3-11> 동서독 병력변화

단위: 명

구분	1989년	1990년	1991년	2009년
계	667,000	606,700	476,300	250,000
서독	494,000	469,000	476,300	250,000
동독	173,000	137,000	.	.

* 출처: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5 국방부』 (서울: 통일부 통일정책실, 2011), p.412를 근거하여 재구성.

다. 장비 및 물자 통합

장비의 경우는 기존의 구입이 예정되었던 것을 취소하고 동독군의 무기를 연방군에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매각해야 했다. 이러한 매각을 위해 ‘경제조정팀’이 구성되어 매각단가를 높이는데 지원하였으며, 매각과정은 연방정부와 공조 하에 이루어 졌다. 또한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군과 병원 사이에 교환거래도 이루어 졌다.¹⁴⁰⁾

동독인민군이 운용하던 전차 및 장갑차, 야포, 각종 군용차량, 등의 지상무기와, 항공기 및 전투용 헬리콥터의 항공무기, 군함 등을 폐기하였으며, 소총을 포함한 대인용 화기, 탄약 등을 연방군에 인계하였다. 요컨대 대부분의 장비는 연방군에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이를 위해 수십 개의 창고를 이용해 집중관리를 하다가 ‘유럽 재래식 무기협정’에 따라 모두 폐기처분하였다. 또한 기타 자료의 파기나 탄약의 관리 및 폐기비용 등은 서독 마르크로 약 35억 마르크가 소요되었다.¹⁴¹⁾

139) 김영탁, 앞의 책, p.196.

140)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5 국방부』, 앞의 책, pp.412-413.

<표 3-12> 구동독군 무기 및 장비인수현황

무기 및 장비	수 량	무기 및 장비	수 량
전 차	2,337 대	소 총	1,200,000 정
장갑차	5,980 대	탄 약	300,000 톤
야 포	2,245 문	항공기 및 전투용 헬기	470 대
각종 군용차량	100,000 대	군 합	71 척

* 출처: 김영탁, 『독일 통일과 동독 재건 과정』 (파주: 한울, 1997), p.197을 근거하여 재구성.

연방군은 1995년 11월 말까지 대부분의 동독무기들을 폐기하고 의무를 지켰다. 탄약의 경우는 30만 톤의 10%인 3톤만 활용하고 나머지 27만 톤은 민간회사를 이용하여 전부 폐기처분하였다. 개인화기도 1993년 말까지 모두 폐기하였으며, 그 외 개인 장비와 야전물품, 전장장비와 군용차량 등 수십 만 톤이 폐기처리 되었다.¹⁴²⁾

병영시설의 경우에는 숙영시설과 막사, 창고 및 훈련장, 비행장 등, 약 2,280건의 군용 부동산을 인수하였고 이 중 20%정도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민수용으로 전환하였다. 지속적으로 사용해야할 400여 개의 병영시설은 낙후된 동독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였고, 기타 군관사와 부속건물, 난방·위생시설 등도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정도였다.

연방군은 총 35억 마르크를 투입하여 1994년에 병영시설 증개축을 완료하였다.¹⁴³⁾ 또한 기존의 인민군 병영을 연방군과 같이 현대화 시키는 데는 최소 약 100억 유로가 필요하였다.¹⁴⁴⁾

연방군이 인수한 토지 및 시설의 총 규모는 2,285개소의 토지와 약 900여개소의 기지를 인수하였고, 과거 서독연방군이 사용 가능한 규모의 훈련장 9개소와 대형 연병장 19개소를 인수하였으며, 이러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고전압 전기철책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시설의 인수에도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다.¹⁴⁵⁾

병영시설 증개축과 동시에 분단당시의 국경차단시설을 제거하기위한 ‘국경차단시

141) 김영탁, 앞의 책, p.197.

142) 위의 책, p.198.

143) 김영탁, 앞의 책, p.198.

144)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5 국방부』, 앞의 책, p.413.

145) 위의 책, 437.

설제거단'을 설치하여 차단시설 제거와 지뢰제거 작업을 했는데, 이때 과거 동독 국경수비대원들이 대거 투입되어 실시하다가 1991년 10월부터는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실시하여 1995년에 완료하였다.¹⁴⁶⁾

독일연방군의 규모는 최초 병력을 37만 명으로 감축하였고, 병 의무복무기간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였으며, 병역대체복무 기간을 20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완료한 후에, 1995년 초부터는 병력을 37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3만 명을 더 감축하였다. 또한 병 의무복무기간도 12개월에서 10개월로, 병역대체복무기간은 15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하였다.¹⁴⁷⁾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9년 667,000여명의 동서독군은 1991년 구동독군이 서독 연방군에 완전히 편입된 이후 476,000여명으로 감소했으며, 2009년 기준으로는 250,000여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 3절 예 멘

1. 분단 및 통일과정

역사적으로 고대 시바의 여왕이 다스렸다고 하는 예멘은 1517년부터 오스만터키의 지배를 받다가, 1839년 영국이 남예멘 지역을 위임통치 하면서부터 분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⁴⁸⁾

예멘은 베트남이나 독일과는 다른 독특한 통일과정을 겪었다. 분단한 두 국가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을 하고도 불과 4년 만에 내전을 통해 다시 분단되고, 또 다시 재통일 한 사례는 매우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의 6.25 전쟁과 같이 내전을 겪었음에도 내전의 후유증인 상호불신과 반목, 적대적 감정들을 내려놓고 이룩한 평화통일 역시 흔치 않은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3년간의 통일과정에 있어서 정치·군사·사회적 통합 실패는 다시금 예멘을 내전으로 몰아넣었으며, 무력에 의하여 재통일이 되는 전례 없는 국가통합의 사례를 낳았다.¹⁴⁹⁾

146) 김영탁, 앞의 책, p.198.

147) 위의 책, p.199.

148) 금상문, “남북예멘의 통일노력과 통일장애에 대한 소고”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0집(한국중동학회, 1989), p.362.

가. 분단의 배경과 남북예멘 독립

1) 종파적 문제

전체 아랍세계의 12개국 중 레바논을 제외한 11개국은 이슬람교를 국교 또는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헌법에까지 명시해 놓고 있다.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사망한 이래 이슬람 종교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종파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슬람의 양대 계파는 시아파와 수니파이다. 시아파는 시아파의 시조인 제 4대 정통 칼리파인 알리의 12대 후손인 무함마드의 존재를 믿는 계파이다.

또 하나의 계파인 수니파의 특징은 정치적 분열이 아니라 율법의 해석 차이에서 분열되었기 때문에 정파가 아니라 학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수니파의 학파는 ① 이븐 한발, ② 알-샤피, ③ 말리크, ④ 하나피 등 4개 학파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알-샤피’학파는 영국 보호령 근처의 남부 예멘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기타 지역으로 홍해 연안의 ‘타하마’지역과 북예멘의 남부지역 고산지대 및 ‘타이즈’시 남부에 분포되어 있다. 정리하면, 북예멘은 시아파 계열의 ‘다섯 이맘파’이며, 남예멘은 수니파 계열의 ‘알-샤피’ 학파가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그들의 관계는 그다지 대립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라비아반도 남단의 수니파들은 수니파의 4대 학파와 더불어, 북예멘의 ‘다섯 이맘파’를 수니파의 ‘제 5학파’라고 부른다고도 한다.¹⁴⁹⁾ 요약하면 남북예멘은 종파적으로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비교적 대립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예멘의 국경문제

아라비아반도 지역의 여러 국가들의 국경문제는 대부분 20세기 초에 오스만 제국이 서구 열강에게 패권을 잃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스만 제국이 제 1차 세계대전에 패전함으로써 중동지역을 포함한 아라비아 반도는 서구 열강-프랑스·영국·이탈리아·러시아의 각축장이 되었고, 오스만 제국이 가진 영토는 분할되고 지배당했다.¹⁵¹⁾

149) 유지호, 『예멘의 남북통일-평화통일의 매혹과 위험성』(서울: 서문당, 1997), p.14.

150) 위의 책, pp.44-53

아덴 항을 중심으로 한 남예멘은 1839년부터 영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주변 토후들의 땅을 조금씩 흡수하면서 세워진 곳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예멘은 1839년부터 1967년까지 약 128년 동안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았다.¹⁵²⁾

북예멘의 국경문제는 서북지역의 경우 1934년 영국의 중재로 잘 설정되어 있었으나 특별한 지형지물이 없는 동부사막지역의 경계는 일반적으로 지도에 점선으로만 표기되어 있었는데, 1980년대 후반에 예멘에서 석유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동부지역에 인접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지역에 대한 충돌과 간섭이 시작되었다.¹⁵³⁾

이와 같이 북쪽지역과 동부지역은 북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국경분쟁이었으나, 북예멘의 남부지역의 국경분쟁은 19세기 중엽부터 196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예멘의 이맘들과 그들을 계승하는 공화국이 영국과 별이는 독립투쟁이자 반제국주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¹⁵⁴⁾

아덴지역을 제외한 남예멘 지역에는 20여개로 분할 된 독립적인 왕국이 있었는데, 1882년부터 1914년까지 영국은 이들 국가들과 보호협정을 맺었으며, 이들 왕국에 내정은 인정하였으나, 다른 국가와의 외교관계는 승인을 받게 하는 등 제한하였다. 또한 영국과 오스만터키제국은 1914년에 남북예멘의 국경선에 관한 협정을 맺어 이 후 사실상 예멘의 분단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

북예멘의 경우는 오스만터키제국이 철수한 후 1911년 ‘자이드부족’의 이맘 야회야에 의해 통치권이 행사되어오다가, 1918년에 회교군주국을 선포하였다. 이는 아랍 최초의 독립국으로서 이탈리아와 소련에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은 북예멘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¹⁵⁵⁾

북예멘의 입장에서는 남쪽으로의 진출은 사실상 영국에게 막혀있는 상태였으므로 북쪽으로 진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며, 북쪽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도 당시에 영국에게 완전히 포위된 형국으로 북예멘 지역으로 밖에 진출할 곳이 없었다.¹⁵⁶⁾

북예멘은 남쪽은 영국에게, 북쪽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협공당하는 상황을 타개하

151) 유지호, 앞의 책, pp.24-27

152) 김국신, “예멘통합 군사연구”, 『연구보고서』, 93-19(민족통일연구원, 1993), p.6.

153) 유지호, 앞의 책, p.26.

154) 위의 책, p.29.

155) 김국신, “예멘통합 군사연구”, 『연구보고서』, 앞의 논문, p.7.

156) 유지호, 앞의 책, pp.34-35.

기 위해 기존의 쇄국정책을 포기하고 모든 반영세력과 제휴·협력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1927년에 이탈리아와 우호조약을 맺고 1929년엔 공산화된 구소련과도 유사한 조약을 맺으려 노력하였다. 또한 1950년대에는 군사 혁명을 통한 공화정 체제를 수립한 이집트의 나세르와도 친급하게 된 계기도 반영연대의 결과였다.¹⁵⁷⁾

3) 남북예멘 정부수립

북예멘의 초대 왕인 이맘 야히야가 죽고 아버지에 이어 손자 모하메드 알-바드르도가 이맘 직을 계승한지 8일 만에 궁정장교들로 구성된 ‘자유장교단’에 의해 축출되었다.¹⁵⁸⁾

자유장교단의 공격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모하메드 알-바드르도는 북쪽으로 탈출하여 부족 민병들을 다시 규합하고 왕정파의 진열을 가다듬었고, 공화정 체제의 확산을 두려워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를 지원했다. 그러자 이집트의 나세르는 군사혁명으로 공화정을 수립한 북예멘의 ‘자유장교단’을 지원하기 위해 수만 명의 이집트군을 북예멘에 파견하였다.

이로서 공화파와 왕정파의 북예멘 내전은 국제전 양상을 띠게 되었다. 정리하면, 왕정파에는 영국과 요르단 이란이 추가로 가담하였고, 공화파에는 소련, 시리아, 알제리 등이 가담하였다.¹⁵⁹⁾

1968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여파로 북예멘지역의 자유장교단을 지원하던 이집트군이 철수하자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은 실각하였다. 왕정파는 북예멘의 수도 사나를 포위하고 공화파의 항복을 기다렸으나 공화파군도 알제리와 시리아의 긴급원조 덕분에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안정을 되찾고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¹⁶⁰⁾

1970년 3월, 이슬람연맹 외상회의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렸는데, 북예멘의 내전 상황을 화해와 협상으로 중재하여 약 8년간의 북예멘내전을 종식시켰다.¹⁶¹⁾

북예멘 내전기간동안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까지 희생되었는데, ‘제다협정’

157) 위의 책, p.41.

158) 금상문, 앞의 논문, p.363.

159) 유지호, 앞의 책, p.42.

160) 금상문, 앞의 논문, p.363.

161) 김국신, “예멘 統一方式이 한반도 統一에 주는 示唆點”, 『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집』, 세미나시리즈 94-04(민족통일연구원, 1994), p.7.

에 의해 왕정과의 알-바드리 및 직계 왕족들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이 허용되었고, 공화파와 왕정과의 연립정부가 북예멘에 들어섰다. 이로서 서기 9세기 말부터 이어져온 북예멘의 신정정치체제는 소멸되었다.¹⁶²⁾

남예멘의 경우 북예멘이 공화국을 선포하게 되자 1963년 6월 아랍민족주의와 좌파계열의 학생들과 지식인들에 의해 무장투쟁 성격의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고¹⁶³⁾ 1965년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1967년 11월 230일 영국과의 독립협정을 맺어 ‘남예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¹⁶⁴⁾

나. 남북대립과 통일협상

1) 제 1차 남북 국경전쟁(1967-1972년)

1967년 남예멘이 독립하자 남북예멘의 정부당국은 통일추진을 위한 ‘예멘통일담당부’를 조직하였으며, 남예멘은 영국보호령 당시 북예멘인들의 남예멘 입국금지를 해제하였다. 또한 북예멘인들이 남예멘 국적을 얻으려고 할 때는 다른 외국인들보다 쉽게 국적획득이 가능하도록 ‘아텐국적법’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남북예멘은 단일 국가임을 견지하여 상주대표나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합의하였다.¹⁶⁵⁾

하지만 남북예멘은 최초 5년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이념적으로 남예멘은 좌경화되고 내전을 겪은 북예멘은 우경화 되면서 이념적으로 갈라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1972년 2월에 북예멘의 주요 부족장 60여 명의 추종자들이 남예멘 국경지역에서 전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북예멘은 남예멘의 초청연회에 참석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하였고, 남예멘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주를 받고 2,000여명의 병력으로 남예멘을 공격하다가 사살되었다고 주장 하였다.¹⁶⁶⁾

이러한 과정에서 1972년 9월 남북예멘간의 국경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국경분쟁은 무력충돌로 발전하였다.¹⁶⁷⁾

162) 유지호, 앞의 책 p.43.

163) Helen Lackner, "The Rise of the National Liberation Front as a Political Organization," in Pridham, ed., *Contemporary Yemen*, p.50.

164) 김국신, “예멘통합 군사연구”, 『연구보고서』, 앞의 논문, p.16.

165) 유지호, 앞의 책, pp.159-160.

166) 위의 책, p.163.

1970년 초부터 ‘민족해방전선’이 아덴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면서부터 남예멘은 소련의 무력에 의지하게 되었고, 북예멘은 사우디를 위시한 인접 아랍국가들의 경제력에 의지하는 형국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근본적으로 북예멘의 이슬람주의는 남예멘의 세속주의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남예멘도 북예멘의 봉건주의적 통치와 맞지 않았다. 요컨대, 남북예멘은 상대방의 반정부 조직들을 지원하고 상호 비방하는 행동을 하였다.¹⁶⁸⁾

북예멘의 친 사우디아라비아 장교들은 남예멘의 선제공격을 주장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에 각종 무기를 지원하였으며, 남예멘 출신 북예멘 거주 인들로 구성된 ‘남예멘 민족전선연합’이 구성되기도 하였다.

남예멘 경우는 리비아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결국 남북예멘은 1972년 9월 25일에 북예멘 비정규군의 선제공격으로 제 1차 국경전쟁을 개시하였다. 이 전쟁은 같은 해 10월 19일에 휴전을 통해 종결 되었다.¹⁶⁹⁾

2) 제 2차 남북 국경전쟁(1973-1981년)

휴전 이후 아랍연맹의 중재로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남북예멘 간에 정전협정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체결되었고, 추가로 통일원칙에 대하여 합의 하였으며, 1972년 11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통일협의를 구체화한 6개 항의 협정문이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체결되었다.¹⁷⁰⁾

트리폴리 협정에 의해 남북예멘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도, 남예멘의 사회주의 아덴 정부는 북예멘 반정부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

또한 북예멘의 친 사우디아라비아계 수상은 1934년 ‘타이프 협정’에 의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조차된 북예멘의 북부의 3개성을 1973년에 포기하였고, 북예멘 국경지역에서 남예멘 반정부 무장단체도 성장하는 등의 상황을 남북예멘의 당국은 통제하지 못했다.¹⁷¹⁾

167) 금상문, 앞의 논문, p.368.

168) 유지호, 앞의 책, pp.161-162.

169) 위의 책, p.164.

170) 김국신, “예멘 統一方式이 한반도 統一에 주는 示唆點”, 『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집』, 앞의 논문, p.18.

171) 유지호, 앞의 책, pp.164-166.

<표 3-13> 1972년 ‘트리폴리협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국호 및 수도	• 국호는 예멘공화국으로 하고 수도는 북예멘의 수도 ‘사나’에 준다
국교(國敎)	•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이슬람 성전(코란)을 주요 법원으로 한다.
언어	• 아랍어를 공식 언어로 한다.
국가목표	• 국가는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정치체제	• 민족적 민주체제의 정부와 단일 통합정치조직으로 한다.
추진위원회	• 기본 구상의 제도화를 위한 8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헌법, 외무·외교·영사, 경제·재무, 교육, 문화·공보, 보건, 군사, 행정·공공시설

* 출처: 유지호, 『예멘의 남북통일-평화통일의 매혹과 위험성』 (서울: 서문당, 1997), p.165를 근거하여 재구성.

이 당시 남북예멘의 통일협상의 분위기는 남북예멘 모두 내부적 분열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남예멘은 대통령과 사회당 서기장과의 분열이 있었으며, 북예멘은 앞서 언급했듯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함디 대령이 자기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분열이 발생했다. 또한 남예멘대통령은 북예멘과의 통일협상을 통하여 사회당당수를 견제하려고 하였고 북예멘에 있어서의 통일정책은 정쟁의 재료로 활용되었다.¹⁷²⁾

북예멘의 함디 대통령은 정권강화를 위해 남예멘과 친 소련 계 등의 단체와 통합함으로써 사회주의 계열의 남예멘과의 대화를 용이하게 하였다.¹⁷³⁾

남북예멘은 1974년에 중단된 정상급회담을 1977년 2월 15일부터 이틀간 국경지대 도시 ‘카타바’에서 성사시켰다. 여기서 남북예멘정상은 정기적으로 6개월 마다 통일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남북연합자료회의를 결성하였으며, 회의의 구성원은 양국 대통령을 포함한 경제·외무·기획·무역·국방장관으로 합의하였다.¹⁷⁴⁾

남북예멘의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는 무렵, 1977년 10월 11일, 북예멘의 함디 대통

172)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함디는 1976년 2월 11에 5개의 정치세력과 통합을 하여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이중 2개는 남예멘 아덴 정부와 가까웠고 2개는 친 소련·시리아 계열로 역시 사회주의와 가까웠으며, 나머지 1개는 마르크스주의자와 바스 당원, 제 1차 내전 때 공화파에서 싸웠던 민병들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위의 책, p.168.

173) 북예멘 5개 정치그룹을 통합하여 민족민주전선(National Democratic Front)을 결성하였다. 통합된 5개의 정치세력은 ① 혁명민주당(RDP), ② 예멘반항자조직(OYR), ③ 인민민주여합(PDU), ④ 인민전위당(PVP), ⑤ 노동당(LP)였으며, ①, ②는 아덴의 민족전선(NF)과 가까웠고, ③, ④는 친 소련·시리아 계열이었으며, ⑤가 과거 공화파 세력이다. 유지호, 앞의 책, p.169.

174) 김국신, “예멘통합 군사연구”, 『연구보고서』, 앞의 논문, p.72.

령은 남예멘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 중에 암살되었다.¹⁷⁵⁾ 이에 남예멘 아덴 정부는 북예멘 함디의 암살을 규탄함과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신임 북예멘의 대통령인 알 가시미는 암살된 전 대통령 함디와는 다른 정책을 펴므로써 남예멘의 아덴정부는 북예멘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¹⁷⁶⁾

이와 같이 남북예멘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남예멘 살림 루비야 알리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사망하였고 그가 사망하기 전에 북예멘의 알 가시미 대통령이 폭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두고 북예멘은 알 가시미에게 폭탄선물을 보낸 것은 남예멘이라고 규탄하였고, 남예멘집권당 다수파는 남예멘대통령 알리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비난했다. 남북예멘의 지도자가 사망하고 특히 북예멘의 알 가시미 대통령이 폭발물에 의해 사망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예멘에 대한 고립을 추진하였다.¹⁷⁷⁾

남북예멘의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1979년 2월24일에 1차 국경전쟁과는 반대로 남예멘 측 정규군에 의해 3월 3일까지 무력충돌이 발생했다.¹⁷⁸⁾

남예멘 측의 지원을 받은 ‘민족민주전선’은 북예멘의 취약한 살레정권을 선제공격함으로써 북예멘 정권을 붕괴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국제정세는 중동지역에서 사회주의의 확장에 대한 반대기류가 높았다. 종전까지 남예멘 아덴에 우호적이었던 이집트와 시리아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정전을 지지하였으며, 미국도 북예멘에 대한 3억 9,000만 달러에 달하는 무기원조와 미 합대를 홍해지역으로 급파하는 행동을 취했다.

남북예멘의 2차 국경전쟁의 배경과 과정은 1차 국경전쟁과 다르지만, 같은 점은 정규군 동원, 짧은 전쟁기간, 아랍중제의 과정을 겪은 것이며, 차이점은 남예멘에 의한 공격, 신속한 주변국 개입 등이다.¹⁷⁹⁾

175) 김국신, “예멘 統一方式이 한반도 統一에 주는 示唆點”, 『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집』, 앞의 논문, p.19.

176) 신임 알 가시미 북예멘 대통령은 전임 함디와는 달리 북예멘 북쪽 부족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폈으며, 전 대통령 측근 장교들의 반란에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유지호, 앞의 책, pp.170-171.

177) 위의 책, pp.171-172.

178) 김국신, “예멘통합 군사연구”, 『연구보고서』, 앞의 논문, p.73.

179) 그러나 2차 남북국경전쟁은 남북예멘의 국정에 변화를 가져왔다. 북예멘에서 활동하던 반 남예멘 세력은 약화된 반면에 반북예멘 세력인 민족민주전선(NDF)의 활동은 활발해 졌다. 이는 남예멘 당국의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북예멘 지역의 민족민주전선에서 예멘인민통일당(Yemeni People's Unity Party)가 창당되어 나왔다. 기존의 민족민주전선은 5개 정치세력이 연합한 비교적 느슨한 연합체였다면 예멘인민

2. 국가통합과정

가. 국가통합과정과 혼란

1) 통일 전 남북 상황 (1982-1988년)

1981년 12월 2일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과 남예멘의 나세르 대통령은 홍해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대외정책목표를 채택하고 통일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하였다.¹⁸⁰⁾

이어서 1981년 말에는 전문 136조에 달하는 예멘통일헌법 초안이 완성되었고 1989년 11월 30일에 채택되었으며, 1989년 5월 22일, 통일에 즈음해서는 통일헌법의 모체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멘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평화공존의 시기를 가졌으며, 이 기간 중에 예멘최고회의 3회, 공동각료회의는 4회, 사무국회의는 12회나 열렸다. 또한 1985년 1월에는 남북공동으로 국경지대 공동석유개발 및 생산을 위해 공동경제구역을 설치하였다.¹⁸¹⁾

<표 3-14> 1981년 ‘아덴정상회담’ 주요내용

정책조정	경 제	교 육	상호 왕래	외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멘 최고회의의 구성 - 대통령 포함 - 6개월 마다 통일 분과회의 개최 • 예멘 공동각료회의 - 총리, 외무, 내무, 교육, 조달·기획, 군 참모총장 - 3개월 단위 개최 • 사무국 설치 - 최고회의 행정 지원 - 북예멘 수도 사나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 개발계획 조정 • 지질 및 수자원 공동 조사 및 개발에 협력 • 농업기술 지도와 판매를 위한 공동기구 설치 • 카타바와 두라인 간 연결도로 건설 • 국경마을에 편의를 위한 공회당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지대에 공동학교 설립 • 문화 정보위원회 설치 • 사회과목내용 개발 및 교육과목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예멘인들의 자유로운 왕래 권리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국 시온주의 반대 • 아랍권과 행동 통일 • 외국 군사기지 설립 반대 • 외국군 주둔 배척 • 일체의 정치·군사 불복 및 협정에 반대 • 비동맹운동 지지

* 출처: 유지호, 『예멘의 남북통일-평화통일의 매혹과 위험성』 (서울: 서문당, 1997), pp.182-183을 근거하여 재구성.

통일당(YPUP)은 5개 정치세력의 단일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인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우선 북예멘의 예멘인민통일당이 북예멘의 정권을 장악하고 남예멘 아덴정부의 예멘사회당(YSP)와 통합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유지호, 앞의 책, pp.173-174.

180) 김국신, “예멘 統一方式이 한반도 統一에 주는 示唆點”, 『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집』, 앞의 논문, p.20.

181) 유지호, 앞의 책, pp.183-185.

그러나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예멘의 통일정책은 큰 위기를 맞았는데, 1986년 1월 13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약 9일 간 남예멘 수도에서 내전이 발발했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던 남예멘의 알리 나세르 대통령이 북예멘으로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¹⁸²⁾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북예멘도 남예멘 내전에 개입할 것을 고려하였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태인데다가 소련과 쿠웨이트 등 북예멘 정부에 영향력 있는 주변 국가들의 반대로 내전 종식 중재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 더욱이 남예멘 군대가 알리 나세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자 북예멘군은 살레 대통령에게 남진에 대하여 신중할 것을 권고 하였다.¹⁸³⁾

남예멘의 당과 군부는 기존의 알리와는 반대 성향의 지도층을 형성함으로써 남북의 대화는 다시 냉각되기 시작하였으며,¹⁸⁴⁾ 북예멘에서 후퇴한 ‘민족민주전선’ 및 ‘예멘 통일당’ 거물들이 두 개로 분열되면서 남북관계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¹⁸⁵⁾

이러한 북예멘의 조치에 남예멘의 새로운 정부도 1986년 1월에 체결한 대외정책의 승계와 준수를 약속함과 동시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¹⁸⁶⁾

2) 통일과정에서의 권력안배(1989)

1989년부터 남북예멘의 본격적인 협상의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소련과 동구권이 와해됨으로써 그동안의 남예멘에 대한 소련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가 중단되고,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에 종식에 따라 이라크 주도의 ‘아랍협력위원회(ACC)’가 등장하고서 부터이다.

이 ‘아랍협력위원회’는 이미 1980년대 중엽부터 구성된 기존의 걸프지역 연안의 산유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위원회(GCC)’에 대항한 안보·경제 협력기구로서 북예멘이 ‘아랍협력위원회(ACC)’에 가입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안보적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었다.¹⁸⁷⁾

182) 김국신, “예멘통합 군사연구”, 『연구보고서』, 앞의 논문, p.80.

183) 유지호, 앞의 책, pp.187-188.

184) 김국신, “예멘 統一方式이 한반도 統一에 주는 示唆點”, 『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집』, 앞의 논문, p.20.

185) 유지호, 앞의 책, pp.188-189.

186) 위의 책, p.189.

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예멘은 통일을 위한 협상에 마주앉게 되었는데, 여기서 남북예멘은 국가통합의 형태를 최초에는 연방제로 고려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연방제에 대한 이질감이 없었던 이유와 함께 현실적으로 북예멘의 부족세력과 남예멘의 사회주의 세력 간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정리하면, 북예멘은 기능주의적 연방제를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던 남예멘은 단일정부를 고집하였다.

사실상 연방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기존부터 논의된 적이 있어 생소하지는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북예멘 보다 국내·외적 환경이 불리했던 남예멘이 연방제를 주장하지 않은 점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남예멘의 예상 밖의 단일정부 제의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북예멘이 부족세력의 반대로 인해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통일 이후에 유리한 정치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북예멘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남예멘의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¹⁸⁸⁾

1989년 11월 28일 남예멘을 방문한 살레 대통령은 남예멘 국민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이어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¹⁸⁹⁾

정상회담의 내용은 남북예멘의 이념과 인구수와 상관없이 통일정부의 권력비율을 1:1의 비율로 나누고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남북정상의 합의는 통일 이후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궁극적으로 남북통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¹⁹⁰⁾

이러한 합의에 의해 5명으로 구성된 ‘대통령위원회’는 북예멘이 3명, 남예멘이 2명으로 구성 되었고 1명을 양보한 대가로 남예멘은 총리와 국회의장을 비롯한 21개의 고위직을 양보 받았다. 분배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남북예멘은 한쪽 정부에만 있는 기구를 없애기 보다는 그 기구가 없는 다른 정부에 창설 등을 통하여 서로간의 비율을 맞춰갔다.¹⁹¹⁾

187) 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ACC(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북예멘). 유지호, 앞의 책, p.193.

188) 위의 책, pp.205-213.

189) 김국신, “예멘 統一方式이 한반도 統一에 주는 示唆點”, 『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집』, 앞의 논문, p.22.

190) 유지호, 앞의 책, pp.263-264.

191) 위의 책, pp.265-267.

<표 3-15> 1990년 5월 22일, 남북예멘의 권력안배

구분	남예멘	북예멘
대통령 위원회 (남2명, 북3명)	부위원장, 위원	의장, 위원(2)
각료 (남17명, 북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 • 안보 국방담당 부수상 • 노동행정개혁담당부수상 • 해외교포 담당 장관 • 석유광물자원 장관 • 조달무역장관 • 법무장관 • 공보장관 • 운수장관 • 수산장관 • 주택·도시계획 장관 • 국방장관 • 노동·직업훈련 장관 • 고등교육과학 장관 • 기획·개발 장관 • 외무담당 국무장관 • 국회담당 국무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부수상 • 내무담당 부수상 • 건설 장관 • 외무장관 • 공업장관 • 내무장관 • 재무장관 • 교육장관 • 종교지도 장관 • 문화관광 장관 • 보건 장관 • 농업·수자원 장관 • 전기·수도 장관 • 정부 인사담당 장관 • 체신 장관 • 법제 장관 • 사회보장담당 장관 • 청년체육 장관 • 내각담당 국무장관 • 무임소 장관

* 출처: 유지호, 『예멘의 남북통일-평화통일의 매혹과 위험성』 (서울: 서문당, 1997), pp.393-394를 근거하여 재구성.

1989년 11월에는 이미 1982년에 채택된 남북통일헌법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89년 11월 30일 정상회담에서 6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는 사실상 최종적인 통일이 1990년 11월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통일헌법이 6개월 이내에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1년 이내에 예멘 공화국을 선포한다는 합의가 같은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이다.¹⁹²⁾

3) 극심한 혼란(1990-1993)

1990년 5월 26일자로 남북예멘은 완전히 통일하고 30개월간의 과도기를 거치기로 했으나, 북예멘의 부족세력과 남예멘의 사회주의자들이 통일반대운동을 준비하고 일부 정치 집단의 통일반대 운동의 기미가 보이자 남북예멘은 최초 계획했던 통일 일자를 4일 앞당겨 같은 해 5월 26일에 아덴에서 통일을 선포 하였다.¹⁹³⁾ 그러나 1990년 5월 22일에 실제로 출범한 통일 정부의 형태는 연방제에 의한 통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단일정부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다.¹⁹⁴⁾

192) 유지호, 앞의 책, p.268.

193) 김국신, “예멘 統一方式이 한반도 統一에 주는 示唆點”, 『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집』, 앞의 논문, pp.22-23.

1990년 5월 22일부터 1993년까지는 남북예멘의 각각의 통합의 대상들이 기능주의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하지만 1993년부터 서서히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과거 남예멘 측이 주장하여 채택되었던 단일정부체제를 연방제로 전환시키려는 과거 남예멘 측의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에 북예멘 출신들은 그들을 분리 주의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1993년 4월 27일 통일예멘의 총선거가 치러졌으나 1993년 9월, 부통령으로 선출된 과거 남예멘 측의 알-비드는 새로 선출된 과거 북예멘 측의 살레 대통령에게 18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 할 경우 연정에 참여하겠다고 제시 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중앙정부가 가진 군·보안 분야 개혁문제,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권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과거 북예멘이 흡수통합을 하려고 한다고 살레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에 살레 대통령은 역으로 19개 조항을 남예멘 측의 알-비드 부통령 측에게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거절하였다.¹⁹⁵⁾

그러나 이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교하면 미봉책에 불과 하였다. 5명의 대통령위원회의 남측 사회당 인사는 1993년 12월 20자 ‘예멘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예멘통일국가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음을 기사화 하였고, 여기서 또다시 통일예멘을 4~5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 하였다.

이보다 3개월 전에 그는 과거 남예멘 사회당측이 제안한 개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예멘은 분열 될 것임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남측인사들의 발언은 북측 인사들에게 분리주의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¹⁹⁶⁾

과거 남예멘 측의 서열 1위인 알-비드 부통령과, 2위격인 살렘 살레 무함마드의 발언은 이미 북예멘 출신의 국민회의당과 남예멘 출신의 사회당이 연정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북측의 살레 대통령은 남예멘의 다른 개혁안은 수용하겠지만 연방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였다. 최초 통일 전에는 북측이 연방제를 제의하였으나 남측이 거절하였고,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94) 유지호, 앞의 책, p.221.

195) 위의 책, p.288.

196) 유지호, 앞의 책, pp.289-290.

이렇듯 통일에멘의 남측과 북측은 상호신뢰가 떨어지면서 연정의 고리마저 끊어지고 나아가 상호대립의 상태로 진전되었다.

남북에멘은 1990년 5월 22일 통일이 공표되고 1993년 4월 27일 총선에 의해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되었음에도 1994년 2월에 들어와서는 양측의 군대는 국경지대로 집결을 완료하였고 충돌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다.¹⁹⁷⁾

이러한 남북에멘의 국가통합과정의 예는 군사적 통합이 없이 단순히 정치적 통합만으로 국가통합을 추진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군사통합 및 군(軍)수용 사례

가. 군사통합과정

통일협상과정과 통일과도기 기간 중 남북에멘 군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남북에멘 양국 모두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정치·외교·안보적 상황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¹⁹⁸⁾

남북에멘의 통일과정에서 가장 큰 과오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일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사전에 군을 통합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남북의 정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통일이란 각각의 정부가 처한 당시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의 의미가 일정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5월 22일 기능주의적 측면에서 각각의 통합의 대상이 서로 조율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군의 통합은 마지막으로 미루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서로에게 유·불리를 가져올 경우 즉각적으로 무력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이러한 군사통합의 정책적 실수는 평화적이며 합의에 의한 통일 이후에 강제적인 무력에 의한 통일의 과정을 다시 한 번 겪게 만들었다.

이러한 남북에멘의 군사통합의 과정과 형태 및 방식은 차후 한반도 군사통합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197) 위의 책, pp.297-298.

198) 유지호, “에멘 統一 以後 問題點-政治·軍事 問題點을 中心으로”, 『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집』, 세미나시리즈 94-04(민족통일연구원, 1994), p.41.

<표 3-16> 통일에멘공화국 군사력

구분	군사력 규모
총계	139,500명
현역	64,500명
예비역	75,000명
육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력: 60,000명 (의무복무자 42,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갑여단(10), 보병여단(23), 기갑여단(5), 공수특전단(2), 민방위 여단(5), 포병여단(7), 지대지미사일 여단(3) •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차(1,275), 정찰기(335), 장갑전차(300), 장갑자동차(670), 견인포(477), 공격포(약 50) - 다발로켓포(370), 박격포(640), 지대지 미사일(28), 대전차 유도탄(700), 무반동총(85) - 대전차포(82), 대공포(857), 지대공 미사일(SA-7, SA-9-미상)
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력: 1,500명 • 주 기지: 아덴항, 호데이다항 • 시설: 알 무카함, 페림도, 알 무칼라함, 스코트라도 •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 경비함(160), 소해정(9), 상륙용 주정(4), 지원 함정(2)
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력: 3,000명 •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투용 항공기(109), 무장헬리콥터(10), 지상공격전투기(4개 전대-46), 전투기(4개 전대-47) - 수송기(27), 헬리콥터(58), 훈련기(31), 방공포대(30), - 공대지 미사일(AS-7, AS-9, AT-2, AT-6), 공대공 미사일(AA-2, AIM-9)
준군사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보안조직: 20,000명 • 부족징병: 최소 20,000명 • 연안용 쾌속정(6-세관당국 운용)
외국 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고문단(약간 명)

* 출처: 유지호, “예멘 統一 以後 問題點-政治·軍事 問題點을 中心으로”, 『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집』, 세미나사리즈, 94-04(민족통일연구원, 1994), p.41을 근거하여 재구성.

내전의 발단은 예멘총선거를 실시한지 1주년이 되는 1994년 4월 27일에 벌어졌다. 통일에멘의 수도이자 과거 북예멘의 수도인 사나의 북쪽 60km 지점에 위치한 ‘암란’이라는 소도시에서 주 예멘 미국·프랑스 무관들로 구성된 ‘공동군사위원회’가 보는 앞에서 남북 양측의 군대가 충돌하였다.¹⁹⁹⁾

이 무력충돌로 인하여 최소 800여 명의 사상자와 남예멘 기갑여단 소속의 85대의 전차가 파괴됨으로써 통일 이후 정국이 안정 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²⁰⁰⁾

이와 같이 과거 북측 지역에서 남예멘 측의 기갑여단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통일 군이 자국의 영토방위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군대의 성격이 아니라 협상과정

199) 유지호, 앞의 책, pp.275-276.

200) 유지호, 앞의 논문, p.46.

에서 남북 양측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1993년 4월 27일 총선 이후 신정부수립 시까지 상대방에게는 정치적 위협으로 사용하고 통일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의 영토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²⁰¹⁾

과거 남예멘군의 경우 북예멘 지역에 5개의 여단을 두었고 과거 북예멘군은 남예멘 지역에 2개의 여단이 상호 배치되어 있었으며, 각각의 독립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암란 지역에서의 전투로 거의 괴멸상태에 빠진 남예멘 측의 3기갑여단은 남예멘 측과 가까운 북예멘 지역의 ‘바킬’부족 연맹지역으로 후퇴하였으며, 기세를 잡은 북예멘군은 4월 28일 사나 남쪽 약 60km지점인 다마르에 주둔하고 있는 남예멘군 ‘바사합 여단’ 근처로 빠르게 이동하여 공격하였다.

북예멘의 공격에 남예멘 ‘바사합 여단’은 간단히 와해되어 버렸으며 북군은 여세를 몰아, 다마르를 지나 야립 지역에 배치된 남측의 ‘제 1여단’을 비교적 손쉽게 제압하자 사나 동남부지역의 ‘10월 14일 여단’과 여타 부대들은 항복하였다.²⁰²⁾

이에 대한 반격으로 5월 4일 밤에 남측 공군들이 북예멘 사나 등을 비롯한 공항 시설, 대통령궁, 화력발전소, 석유저장탱크, 송유관 등을 습격했다. 이에 다음날 북측 공군은 남측의 아덴 공항을 공격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다.

결국 북군은 지상군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천천히 남진하여 6월 초에는 4개의 전선을 확보하였고 이중 3개 방향으로 공격하여 6월 6일에는 달라 지역 남부에 주둔하고 있는 남군 22여단을 포위하는 작전에 성공하였다.

6월 12일에는 남군 저지선을 돌파하여 무칼라 지역의 30km 까지 진격하였다가 6월 20일에는 다시 후퇴하였으며, 결국 7월 5일에는 무칼라 항구와 라이얀 공항을 점령하여 아덴의 턱 밑까지 진격 하였다. 결국 7월 7일 오후에 이르러서 북군은 아덴 시내와 탈라 및 타와히 지역으로 진군하지 남군 수비병들은 와해되었다.²⁰³⁾

전체 17개 주 중에서 4월 27일 교전에 의해 약 7개 주가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 북측의 살레 대통령은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측의 알-비드 부통령과 총리를 파면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측 각료들은 전원 해임되었다.

201) 유지호, 앞의 책, p.277.

202) 위의 책, pp.282-283.

203) 유지호, 앞의 책, pp.304-307.

이로서 1990년 5월 이래 통일과정을 겪고 총선까지 치른 통일에멘은 다시금 남북 에멘으로 분리되었으며, 결국 무력에 의한 재통일 과정을 겪어야 했다.²⁰⁴⁾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1994년 4월 27일 발생한 에멘내전은 북군이 6월 초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남에멘 지역을 공격하여, 7월 5일 항진하던 하드라마우트 지역사령관 후사이눈을 전사시키고 무칼라 항구와 라이얀 공항을 점령하였으며, 7월 7일 오후, 아텐시내 크레이터 지역과 말라, 타와히 지역으로 진군하자 남군은 와해되었으며,²⁰⁵⁾ 결국 살레 대통령을 위시한 북측에 의한 무력을 사용한 재통일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204) 위의 책, pp.283-286.

205) 유지호, 앞의 책, pp.306-308.

제 4장 북한군의 수용 및 활용 방안

제 1절 북한군 수용을 위한 조건

오늘날 동북아지역은 여전히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력을 앞세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은 한·미·일 동맹체계를 굳건히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는 정치·경제적으로 견제 및 협조하면서 비핵화를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 내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호주 등 동맹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 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²⁰⁶⁾

또한, 미국의 국제정치의 미래가 아시아 지역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아시아지역의 우방 및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중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변화는 중국입장에서는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봉쇄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²⁰⁷⁾

결론적으로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자국에게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외 진출을 억제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일본을 미국의 통제 안에 둘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다.²⁰⁸⁾ 이러한 정세 속에서 미국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제 3차 핵실험을 감행 하자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얻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를 이끌어 냈으나,²⁰⁹⁾ 중국의 저지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6일에 감행된 제 4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이어 감행된 사실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일반적 수준의 미온적 대응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동북아와 한반도의 국제정세는 사실상 과거 냉전시대의 한·미·

206)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5), pp.162-167.

207) 위의 책, pp.168-169.

208) 오수열, 『강대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부산: 신지사원, 2004), pp.131-132.

209) 2012년 12월 12일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087호를 이끌어 냈으며, 2013년 2월 12일에 감행된 제3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094호를 이끌어 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문제이해』 앞의 책, pp.169-170.

일과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재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¹⁰⁾

이러한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 할 때 한반도의 국제정세는 매우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과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통일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통일 여건 조성으로 인해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군사통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북한군 수용문제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북한군 수용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정치·경제·사회적 수용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수용한계는 경제적인 수용한계와 더불어 국가·사회통합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수용이 커지면 사회 및 국가통합의 성과는 커질 수 있으나, 경제적인 비용 문제와 군사력 유지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며, 특히 외교적 측면은 불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정치적 수용이 작아지면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통합비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용의 적정선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 정치적 조건

가. 최초 수용단계

전술한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최초수용단계에서 군을 떠난 독일군의 수는 7,000명이다. 이들은 장군이나 제독, 55세 이상 직업군인, 군 법무관 및 정치학교 등에 보직된 군인들로서 전체 병력 대비 약 6.8% 정도의 규모이다.²¹¹⁾

우리의 경우도 위에 보직된 북한군은 수용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무위원회 예하 호위사령부 및 총정치국과 보위사령부에 보직된 대다수 고급 장교들과 중대급까지 편성된 정치장교들은 최초수용단계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독일의 예를 살펴보면 연방군에 정규직으로 지원한 장교 5,600명 중 3,200명이 고용되었으나, 이중 1,400명은 과거 슈타지에 협력한 경력을 은폐했다는

210) 동아일보, “北 핵 도발 한 달 만에 ‘한미일-북·중·러’ 냉전구도 급격 회귀”, <http://news.donga.com/>(검색일: 2016. 2.10).

211) 김영탁, 앞의 책, p.193.

이유로 다시 해고되기도 하였다.²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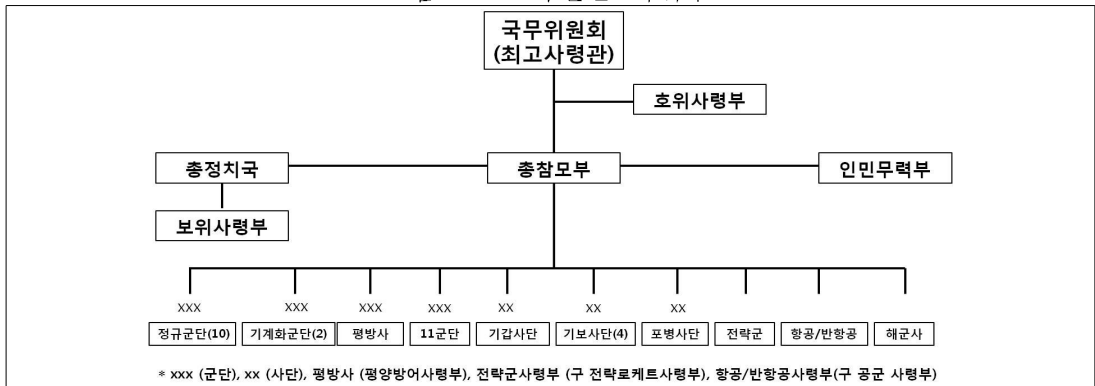
준군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도 1991년 초까지 접수된 지원서가 1,000여건을 넘었으나 이중 실제로 200여명만이 서독경찰에 근무할 수 있는 직무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고위직에 적합한 인원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²¹³⁾

또한 독일은 나치전범자 처리과정의 경험을 통해, 통일 이후에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동조하거나 협조한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서독 양국국민들은 하나의 기준을 갖게 되었으며, 동서독의 분단은 나치에 의해 파생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상호를 이해하고 용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군에서 인권문제나 살인, 파렴치나 부정하게 재산을 축재한 군인들은 통일헌법에 의해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이데올로기 성격의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가지는 공통의 가치관에 입각한 문제이며, 이를 통해서 남북한주민이 통합되는 정서적 배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90년 대 말부터 인민무력부가 ‘반사회주의적 요소’를 직접 색출하여 처벌하기 시작하였다.²¹⁴⁾ 이러한 업무에 보직된 인민무력부 소속 북한군들도 우선 배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인권문제에 연루 된 북한군역시 배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1> 북한군 지휘구조



* 출처: 국방부, 『2014년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p.25를 근거하여 재구성.

212)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5 국방부』, 앞의 책, p.410.

213) 위의 책. 395.

214)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년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5), p.338.

나. 부적응 자 처리문제

재교육 기간 중 부적응을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따라서 추가적인 교육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와 성과가 없는 대상은 추가적인 교육을 별도의 기관에서 재교육해야 할 것이고, 교육내용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대상들은 재교육 수준을 교화의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재교육이 완료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적응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북한군의 수용여부를 판단하고 직업 알선의 가부도 판단하여야 하며, 부적응 자에 대해서는 재교육 여부와 교화시설 입소여부 및 정치범 분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표 4-1> 적응 및 부적응 자 단계별 관리 시스템(안)

구 분	적응자	부적응자
1단계	남한 현역병 기준의 신체 및 체력검사	1차 재교육
2단계	공무원 임용 기준 신체검사	2차 재교육
3단계	군 수용 여부 판단 (희망자)	교화교육 대상자 판단
4단계	청원 경찰 지원 가능여부 판단 (희망자)	교화소 1차 교육
5단계	공무원 지원 가능여부 판단 (희망자)	적응자 판단
6단계	기타 직업교육 가능여부 판단	부적응자 중 정치범 판단
7단계	귀향자 판단	정치범 수용여부 판단

위 표에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단계에서 분류된 부적응 자는 2차에 걸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재교육을 마친 뒤에는 정치적으로 적응자로 분류 할 수 있는가를 재판단하여, 그 판단이 불명확하거나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부적응 자는 상대적으로 재교육 보다 장기적인 교화소 교육이 필요하며, 교화소 교육이 마친 뒤에는 재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정치범을 분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최초부적응자로 분류된 북한군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적응이 가능한 인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며, 무조건적인 배제나 수용은 국가·사회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과 절차는 반드시 필요 하겠다고 판단된다.

2. 경제적 조건

현재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통일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1993년 기준으로 약 1,700억 마르크였다.

이 통계는 순수 동독에 대한 투자금은 제외된 것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서부집단군 철수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서독의 GDP 및 국고세입금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통일독일비용이 분단비용을 위한 군사력유지비 보다 저렴하게 들었기 때문이다.²¹⁵⁾

그러나 독일의 국가통합 당시의 동서독의 경제력의 차이보다 한반도의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가 크므로 이러한 현상이 독일의 경우처럼 무조건 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믿는 것은 환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남북한의 경제력의 차이는 독일과 비슷한 인구비율을 보임에도 2015년 기준으로 명목GNI가 45.4 배, 1인당 GNI가 22.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2>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격차

구분	남/북한	단위	'15	'14	'13	'12	'11
인구	북한(A)	천 명	24,779	24,662	24,545	24,427	24,308
	남한(B)	천 명	50,617	50,424	50,220	50,004	49,779
	(B/A)	배	2.0	2.0	2.0	2.0	2.0
명목 GNI	북한(A)	조 원	34.5	34.2	33.8	33.5	32.4
	남한(B)	조 원	1,565.8	1,490.8	1,439.6	1,391.6	1,340.5
	(B/A)	배	45.4	43.7	42.5	41.5	41.4
1인당 GNI	북한(A)	만 원	139	139	138	137	133
	남한(B)	만 원	3,094	2,956	2,867	2,783	2,693
	(B/A)	배	22.3	21.3	20.8	20.3	20.2
경제 성장률	북한(A)	%	-1.1	1.0	1.1	1.3	0.8
	남한(B)	%	2.6	3.3	2.9	2.3	3.7

* 출처: 한국은행,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d=2236>(검색일: 2016.10. 1)을 근거하여 재구성.

215) Flassbeck, Heiner und Horn, Gustav A., "German Unification - an Example for Korea?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96). p.189-200.

이러한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는 차후 국가통합과정에서 독일의 경우보다 더 많은 통일비용과 북한의 재건비용이 북쪽지역의 경제정상화를 위해 지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교역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2014년 까지 약 4배가량이 성장하였으며, 이는 북한 총 무역액의 23%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69%의 교역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남한과 중국이 북한 대외무역의 92%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²¹⁶⁾

<그림 4-2> 남북교역현황 - 연도별 남북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통일부, 통계자료,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검색일: 2016. 1.26)을 근거하여 재구성.

북한군 수용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독일 군사통합 당시의 동독군의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동독인민군전역자들이 전환보조금(Ubergangsgeld)을 받고 있는 당시의 동독 내 실업자 및 고용 불안자의 수는 1990년 7월 985,000명이었으며, 동독이

216) 박준홍, 『경제의 문 여는 북한, 미래의 돌파구로 활용하자』 (서울: 포스코 경영연구원, 2015), p.2.

서독마르크화를 도입한 8월 말에는 1,340,000명으로 늘었다.²¹⁷⁾

이는 통일 직후의 고용환경이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단기적인 문제로 인하여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 국가통합 시에도 발생 가능한 상황일 수 있다.

구체적인 독일의 사례로는 독일인민군 해고과정에서 최초계획에는 없는 인민군 소속 민간인력과 국경수비대, 민간방위대 소속의 17,500명의 인력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전환보조금과 직업전환교육 비용의 확보와 여건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²¹⁸⁾

이러한 사실은 남북한 군사통합과정에서 다른 통합대상들로 인하여 군사통합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리하면 북한군 수용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에 봉착하고, 궁극적으로 군사통합과 국가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 통일비용과 편익

남북한 군사통합을 위한 경제적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개념의 정리부터 필요하다.

‘통일비용’이란 두 개의 국가가 통일 이후에 하나의 통합국가로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즉,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안정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요컨대 통일이 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기회비용’ 차원의 재화를 말한다. 이에 반해 ‘통일편익’이란 통일을 이루었을 때 얻게 되는 경제적 비경제적인 모든 이익을 말하며, ‘통일순비용’은 ‘통일비용’에서 ‘통일편익’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²¹⁹⁾

또한 통일 이전의 분단비용은 분단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 또는 경제외적으로 들어가는 총체적인 비용을 말하는데, 통일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거의 소멸되는 비용을 말한다.²²⁰⁾

217)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5 국방부』, 앞의 책, pp.413-414.

218) 위의 책, p.409.

219) 박병식, 『남북통일 비용과 편익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박병석 의원실, 2012), p.11.

220)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년 통일문제이해』, 앞의 책, p.260.

<표 4-3> 분단·통일 비용과 통일편익의 개념과 특징

구분	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
개념	분단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경제외적 비용의 총체 • 경제적 비용: 국방비 지출, 외교비용, 이념교육 비용 등 • 경제외적 비용: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 이산 가족 고통, 이념적 갈등과 대립, 국토의 불균형 발전 등	통일에 수반되는 경제적·경제외적 비용의 총체 • 제도통합비용: 정치·행정 제도, 금융 화폐 통합비용 등 • 위기관리비용: 치안,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 실업 등 초기 사회문제 처리 비용 • 경제적 투자비용: 인프라, 생산시설 구축비용 등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경제외적 보상과 혜택 • 경제적 편익: 분단비용 해소, 규모의 경제 실현, 시장의 확대,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등 • 경제외적 편익: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전쟁 위험의 해소 등
특징	• 분단 기간 중 지속 발생 • 통일과 동시에 소멸 (통일의 기회비용)	• 통일의 시기, 방법 등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발생 • 통일 후 일정기간 한시적 발생 • 투자비용 성격 •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신속적으로 조절 가능	•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훨씬 큼 • 통일 이후 영구적으로 발생

* 출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년 북한어해』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5), p.255를 근거하여 재구성.

이것을 군사통합의 경제적 차원에서 적용해 보면, 군사통합비용은 군사통합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보다 통합에 따른 편익이 더 커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군사통합의 비용과 편익은 경제적 비용 및 편익과 함께, 많은 비경제적 비용과 편익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는 ‘목표소득 방식’과 ‘항목별 추정 방식’이 쓰이는데, 기존의 연구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① 학자와 연구기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 ② 대체로 급진적 통일이거나 통일 시점이 늦을수록 비용이 증가함, ③ 통일과 통합의 개념이 혼재되어 통일 이전의 준비와 통합 과정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 있음, ④ 포괄적 추정이 가능한 개념의 정의와 이론과는 다르게 일부 항목 위주의 부분적인 분석, ⑤ 북한 경제의 흡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목표소득 설정, ⑥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의사가 미 고려되고 신축적이지 못함 등이다.

또한 기존의 ‘통일편익’에 대한 연구의 특징과 한계는 다음과 같은데, ① 통일편익의 연구는 항목별로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 함에도 대부분 항목별 추정방식을 사용,

② 추정에 있어서 일부항목만 반영하거나 유무형의 비경제적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③ 북한 지역의 통일 편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④ 통일비용은 한시적인데 반해 통일편익은 시차를 두고 장기간 발생하는데도 편익의 향유기간을 설정하지 못함, ⑤ 종합적으로 고려된 통일편익이나 통일순편익, 동일한 분석 방법이 적용된 통일 비용과 편익연구 등과 같은 자료가 많지 않음 등이다.

이러한 기존의 일반적인 통일비용과 편익의 연구한계를 고려해 볼 때 군사통합을 위한 비용과 편익은 더더욱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²²¹⁾

2015년 통일연구원이 발행한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 분야’ 연구보고서를 보면 안보부분 통일비용과 편익의 의제와 영역에서도 군대유지와 국방비지출, 군 통합과 지휘체계변화, 군사주의 문화해소, 민군관계의 재설정 등을 대내적 의제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통합과정에서 필요한 주요의제와 세부적인 항목을 간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²²⁾

<표 4-4> 국내외 주요기관의 통일비용 추정

추정기관	통일시기	통일비용 개념	추정비용(US \$)
한국개발연구원 (1991)	2000년	• 남북한 소득격차 해소비용 • 2010년 북한 1인당 소득 남한의 60%	2,632억~2,736억
Economic Intelligence Unit (1992)	2000년	• 남북 간 소득격차 해소비용 • 2000년 북한 1인당 소득 남한과 동일	1조 897억
한국산업은행 (1994)	1994년	• 남북한 소득격차 해소비용 • 2004년 북한 1인당 소득 남한의 60%	8,050억
Rand Institute (2005)	-	• 북한 GDP를 2배로 올리는 비용	500억~6,700억
한국조세연구원 (2009)	2011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외한 급속한 통합 비용	남한 GDP의 12%

* 출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년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5), p.255를 근거하여 재구성.

더욱이 비경제적 분야는 연구의 시점과 환경에 따라 비용과 편익의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이를 세부적인 항목별로 단순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설사 분석 했다고 하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221) 박병식, 앞의 책, pp.13-18.

222) 조한범 외 3명,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 분야』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63.

나. 군사통합비용 판단

2014년 국방백서에 명시된 남북한 병력의 수는 남한이 65만 명, 북한이 120만 명이다.²²³⁾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에는 동서독 전체의 병력 수는 67만 명이었으며, 통일 이후 1993년에는 37만 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통일 이전 대비 55%의 수준으로,²²⁴⁾ 이러한 기준으로 통일 한국군의 규모를 산정하면, 약 100만 명의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 군사통합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참고할 것이 예상되는 독일의 모델을 고려한다면 현재 남한의 병력 수 63만 명에 더하여 약 37만 명의 북한군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전체 동독군의 10% 정도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 기준역시 고려한다면 북한군 수용의 적정선은 약 12만 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5만 명의 부족이 나타나는데, 기존 연구에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통합 한국군의 규모가 30~60만 명 사이임을 고려할 때, 북한군 수용규모는 통합 한국군의 병력 규모와 병행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관점은 주변국의 편익을 고려할 경우 단순히 독일의 병력규모의 비율을 고집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전체적으로 독일병력감축 규모보다는 우리의 규모가 낮게 형성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한국군의 병력규모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120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 수용의 문제는 국가통합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독일의 예를 빌어 10% 정도만 수용한다고 가정 할 경우 약 108만 명의 북한군이 사회로 배출됨을 의미하며, 이들을 통합하는데 들어가는 경제·비경제적 비용은 수용에 따른 비용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혹여 수용의 비용이 더 크다 하더라도 전술 했던 바와 같이 이는 정치적 문제이므로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통일 한국군의 병력규모를 최대 약 60만 명이라고 가정 할 경우 수용된 북한군이 통합 한국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독일에 비해 큰 비율임을 알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1993년 기준 약 37만 명의 전체 통일독일연방군에 최종적으로 수용된 동독군은 약 1만 명으

223) 국방부, 『2014년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p.236-239.

224) 조한범 외 3명, 앞의 책, p.65.

로 전체 병력대비 2.7%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인 2.7%를 적용하여 60만 통합 한국군에 수용된 북한군 규모를 고려할 경우 약 16,200명의 북한군이 수용 되게 되는데, 이는 통일 이전 북한군 120만 명의 1.35%의 규모이다.

정리하면 북한군 규모를 고려하여 10%를 수용할 경우 1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통합 한국군 내에서 북한군의 규모를 고려할 시에는 16,200명을 수용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양측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느 경우이던지 108만 명에서 118만 명의 현역 북한 군인이 통일 한국에 배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일반 북한주민들과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수용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교육 비용은 반드시 군사통합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인색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군 수용규모에 대한 연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GDP대비 2.38%, 정부재정대비 14.4%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분쟁지역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다.

또한, 남한의 전체 국방예산 35조 7,058억 원 중에 병력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14조 8,409억 원으로 전체예산대비 41.6%로 병력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²²⁵⁾

<그림 4-3> 국내총생산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추이



* 출처: 국방부, 『2014년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p.158.

225) 국방부, 『2014년 국방백서』, 앞의 책, pp.158-160.

또한 국방부는 2022년까지 현재의 63만 명의 병력규모를 52.2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²²⁶⁾ 이는 역설적으로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약 11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통일 한국군의 병력 수준을 결정할 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4> 2022년 상비병력 감축계획



* 출처: 국방부, 『2014년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p.80.

다. 국방비 감소와 통일 편익

통일비용과 편익을 이야기 할 때 일반적으로 국방비는 감소하고 그 감소한 국방비는 통일편익에 반영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방비가 여러 유·무형적 분담비용에 가장 가시적이고, 사실상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이러한 국방비는 유형적인 통일편익으로 간주되어 남북통합과정에서 일정부분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²²⁷⁾ 이는 안보에 대한 개념을 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박주현 박사는 “통일에 따른 국방 분야의 비용과 효과”연구에서 ‘항목누계방식’으로 통일에 따른 통합비용을 산정하였는데, 항목은 ① 병력통합, ② 부대이전, ③ 장비처리, ④ 탄약처리, ⑤ 장애물 처리, ⑥ 기타 환경 정화 등으로 구성했으며, 역시 북한군 재교육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재원은 판단하지 않았다.²²⁸⁾

다만 병력통합과 관련하여 전역자의 연금이나 일시 보조금을 편성하였는데, 연금

226) 위의 책, p.80.

227)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년 통일문제이해』, 앞의 책, p.250.

228) 박주현, “통일에 따른 국방 분야의 비용과 효과”,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 3호(한국국방연구원, 2014), pp.51-71.

은 비수용 북한군에 대한 퇴직금과는 다르게 그 시행에 있어서 국민적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위의 연구에서 제시한 통일 후 국방 분야의 경제적 효과로는 ① 국방비 축소효과, ② 국가 위험도 감소, ③ 병력 감축의 기회비용 효과, ④ 기타 비경제적 효과 등을 제시하였는데,²²⁹⁾ 이는 북한군의 재교육 및 재취업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순히 국방 분야에만 한정된 것으로 비수용 된 북한군의 재취업과 생활이 불안정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통합 비용과 궁극적인 치안 및 안보요소 등을 미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방비의 감소는 유형적인 통일편익에 속함과 동시에, 군사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과 이후 발생 가능한 사회통합과정에서의 위협에 대해서는 통일비용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통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을 고려해보면, 유형적인 부분과 무형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것을 다시 군사적인 부분과 비군사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예상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유형적인 부분은 남북한통합준비단계에서 북한군에 대한 재·퇴직금, 재교육 및 교화 비용, 군사통합을 위한 기구설치 및 운용비용 등등이 예상되며, 통합과정에서는 무기체계 통합비용, 비 활용 군사시설 철거비용, 통합 한국군 재배치 비용, 비수용 북한군 직업알선 비용 등이 있을 수 있다.

군사통합 마무리 단계에서는 사회간접자본과 연계된 국방 분야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것은 독일통일의 예에서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형적인 부분을 고려해 보면, 통일준비단계에서는 비수용 북한군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박탈감이나, 군사통합 시설이나 기구가 설치되는 지역의 북한주민들과의 접촉 간 위화감 조성 등이 있을 수 있겠으며, 통합과정에서는 수용된 북한군의 차별, 군 관련 각종 범죄, 남한의 사회간접자본 유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및 혼잡 등을 들 수 있다.

군사통합 마무리 단계에서는 비수용 북한군에 대한 관리와 수용북한군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이 있을 수 있겠다.

229) 위의 논문, pp.75-83.

각 연구 기관마다 통일비용과 통일의 완성시기가 다르고 그 편차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유·무형적 비용의 판단 역시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국가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유형적 국방비감소는 단순하게 편익의 차원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방비감소가 편익의 차원으로만 여겨지게 된 배경은 가장 가시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국민정서 측면과 정책결정자의 심리적 측면에서도 어렵지 않게 감소시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 통합에 관련된 연구가 주무행정부인 통일부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군사통합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는 주로 통합의 대상에 대한 규모설정에 국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군사통합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예단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통합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 군사통합은,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된 여러 관련부서에 의해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조건

가. 사회 통합

남북통합과 관련하여 남한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 첫째는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추진된 소위 ‘햇볕정책’으로써, 화해와 협력, 포용을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측과, 국제적 공조와 함께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개발 등 남한에 대한 적대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북한정권의 와해를 유도하려는 측이다.

이 상반된 두 개의 통일논의는 남북통합에 있어서 통일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표 4-5> 2014년 통일의식조사 -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구분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간의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기 위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기타	전체
하위층	47.5	8.3	22.7	4.4	16.5	0.6	100.0 (339)
중간층	44.6	10.3	24.4	4.0	16.4	0.3	100.0 (397)
상위층	36.9	8.0	32.1	3.2	19.4	0.4	100.0 (464)

* 출처: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2014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준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 (서울: 서울대학교, 2014), p.103을 근거하여 재구성.

단재 신채호는 그의 저서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란 시공간적으로 계속되고 발전되는 사회활동의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삼대 원소를 때·시간(時)과 땅(地),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人)이라고 기술하였다.²³⁰⁾

국가역시 사람이 국가구성의 3대요소임으로 사람들의 통합, 요컨대 사회 통합이야말로 국가통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또한 남북한주민들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한(韓)민족 이기 때문이다.

베트남·독일·예멘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통일도 과거의 분단되지 않은 시기에 함께 살아갔던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의 분단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남한에게 있어 이중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경계와 대결상태를 유지하면서, 민족의 번영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상호협력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²³¹⁾

이러한 이중적인 특징은 남한의 정권과 국민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가치이나, 북한주민들과 북한군들에게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주민들과 북한군들에게 남한주민들은 미 제국주의에 탄압 받는 해방시켜야 할 대상이며, 남한의 정부와 군은 타도 및 제거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남한의 주민들은 한반도 통일국가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남북한의 이중적인 관계를 인정하면서, 통일한국의 체제와 사회생활에서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북한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북한의 문화예술은 역시 김일성일가의 찬양이나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책의 목표를 선정하여 시행해 왔는데, 기존의 북한문화예술의 목표는 첫째,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 확보, 둘째, 지도자(수령)에 대한 충성심 확보, 셋째, 대남 적화통일의 정당성 확보로 정리 할 수 있다.²³²⁾

이러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주민들에게 밀접한 문화예술 조차 사회주의체제와 김일성일가에 대한 당위성과 충성심이 강조 되어 있고, 대남적화통일에 대한

230) 단재 신채호 원저, 박기봉 옮김, 『조선상고사』 (서울: 비봉, 2007), p.30.

231)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년 북한이해』 앞의 책, p.14.

232) 위의 책, pp.252-256.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작품들을 보고 생활한 북한주민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발전한 남한 지역의 문화예술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대남적화의 최선봉에서 복무한 북한군의 경우는 일반주민들 보다 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이질적인 정치·사회·문화적 사회에서 생활한 남북한주민들은 사회통합을 연착륙 시키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국가 사회통합역시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원만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안정된 사회구조와 질서의 확립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사회구조와 질서의 확립은 지속적인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반복을 통해서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로 인하여 각기 다른 이질적인 사회 계층을 이루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국가수립과정에서 이러한 사회계층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사회계층이란 구조화된 불평등을 말하며, 이러한 불평등은 경제·정치·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한다고 막스 베버는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차원의 불평등이란 개인의 소득과 부의 축적 등을 통해 발생하고, 정치적 차원의 불평등이란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력 및 권력 등에 의해 발생하며, 사회적 차원의 불평등이란 교육수준과 직업 등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 계층·계급이 생긴다는 것이다.²³³⁾

한반도 통일국가수립과정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계층이 발생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남한의 거대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지역으로 유입되면 북한지역의 주민들은 남한지역의 주민들 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빈곤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작용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북한주민들 중에서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빨리 적응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북한주민들에 비해 단기간 내에 많은 부를 축적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 할 수 있다.

정치적 차원의 계층을 보면, 경제적 차원과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의 경제수준 향상 과정이나 통합과정에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권력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다 상위계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33)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년 통일문제이해』, 앞의 책, p.287.

이러한 정치적 계층이 분화하여 권력이 어느 한 계층에 집중될 경우 경제적 이익과 부를 축적하기 쉬울 것이며, 이는 사회통합에 방해요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사회적 차원의 계층을 살펴보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나 수준에 따라 좋은 직업을 갖기 쉬울 것이며, 이러한 좋은 직업은 사회구조 내에서 권력이나 부의 축적을 쌓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어느 사회나 사회계층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는 하나, 사회구조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인 반복되어서 생기지 않고, 갑작스러운 제도의 변화나, 단 기간 내의 부와 권력의 축적 등을 통해 발생한다면, 구성원들의 불평등은 구조적으로 심화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불만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과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반도 국가통합과정에서 사회통합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계층의 형성에 있어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일정부가 남한지역의 거대자본이 한꺼번에, 또는 계획성 없이 투입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북한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에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제활동이 되도록 국가가 통제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을 억제하는 것은 정치·경제적 불평등을 억제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북한사회의 계층분화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지역의 주민들의 교육을 통한 기회의 평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통합 초기에는 정치·경제적 통합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위해 북한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겠다. 특히, 장기간 군복무를 통해 사회적응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남한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정치 사상교육을 받아온 북한군의 재교육을 통한 사회적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재교육 과제 및 수준

최초수용단계에서 일정규모의 북한군들이 배제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북한군

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에도 연방군 지원자 중에 과거 슈타지에 협조한 경력을 숨긴 동독군들은 차후 검증 과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²³⁴⁾

이러한 북한군들을 대상으로는 일반적인 사회화 교육과 더불어 정치적인 재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과정은 언어·역사·정치제도·법률 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언어와 역사 재교육은 일반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교육 과제이지만 북한군을 대상으로는 더욱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상교육을 받은, 요컨대 주적을 미군과 대한민국국군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간수준의 교육으로는 그들의 적대적 사상을 상대적으로 바꿔놓기 어려울 수 있으며,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제대로 된 재교육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비수용 될 때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살펴보면, 언어의 경우는 북한의 일반적인 언어 이외에도 군 조직에서만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체성과 결속력을 저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언어교육도 일반북한주민들과는 다른 세부적인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역사의 경우는 주적의 개념, 주체사상과 김일성일가의 항일 무장투쟁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중요한 재교육 소요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제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이는 일반북한주민들보다 사상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는 북한군임을 고려 할 때, 상대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역시 김일성일가 및 노동당 1당 지도체제 하에서 교육받은 북한주민이자 군인인 그들의 입장에서, 상호공존과 상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기본질서를 이해하는 데는 일반주민들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교육의 내용과 더불어 수준도 중요한 문제인데, 재교육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234)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5 국방부』 앞의 책, p.410.

는 명확한 재교육목표 설정과 교육과정과 함께 교사들의 자질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일정한 수준이 요구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교사의 신념을 바탕으로 군의 조직문화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야 하겠다. 이러한 자질을 가진 교사들은 통일이 된다고 바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일 이전에 양성되어야 하며, 실제 교사로 임무수행 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부류는 예비역 군 간부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검증되지 않은 예비역 군 출신들을 일정한 양성과정 없이 바로 북한군 재교육에 투입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한 자격과정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게 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6> 북한군 재교육 소요판단(안)

교육 분야	전 북한군(수용 전)		수용 북한군	
	내 용	수 준	내 용	수 준
국어교육	기초 생활 한국어	한국어 능력평가(3급)	군사용어	간부임용 수준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능력평가(초급)	국난극복사	한국사 능력평가(중급)
정 치	자유민주주의 제도 국민의 의무 인권	중등교육 수준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헌법, 군 인권	고등교육 수준
사회 제도	시장경제체제 기초 생활 교육	중등교육 수준	군법 교육	현역병·간부 수준

제 2절 북한군 수용의 규모와 대책

1. 적정 수용규모

가. 통합 한국군 적정 규모

오늘날 동북아정세의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중심의 동맹체제 강화,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추구, 러시아의 영향력 재등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세변화는 남한의 국내외적인 여러 정책과 상호영향을 미치며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다.²³⁵⁾

23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문제이해』, 앞의 책, p.166.

통합 한국군의 적정규모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국제외교·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적정규모를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한반도 상황은 통일의 시점조차 판단하기 어렵고, 그 통일의 시점에서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일한국군에 최적화 된 적정수준의 군사력이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통일한국군의 적정규모가 개략적이더라도 판단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있는 북한군의 규모와 그렇지 않은 북한군의 규모를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시점의 안보상황과 유사한 국가들의 병력수준을 고려하여 판단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보면 통일한국군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다양하고, 고려사항에 대한 중점이 상이한 관계로 최소 21만 명에서 70만 명까지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표 4-7> 통일한국군 적정규모 기존연구

연구 년도	연구자	판단기준 (고려 사항)	인구대비 비율(%)	적정 군사력(명)
1991	박재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GDP와 안보위협도 무기체계 수준 남북한과 유사한 국가와 비교 	0.93	57만
1992	김충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수 고려 	0.6~0.7	40~46만
1992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병력 수와 인구, 국방비 및 국민 총생산에 관한 회귀 모델 적용 	최고: 0.5 중간: 0.4 최저: 0.3	최고: 41만 중간: 31만 최저: 21만
1997	이춘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수 고려 	1.0	70만
1998	윤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수 고려 	0.6~0.7	42~48만
1999	이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한국의 안보환경과 경제규모 등이 비슷한 선진국과 인접국을 비교 	0.3~0.35	24~28만
2002	한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CFE 협정 기준과 실제 유럽국가 군사력 규모 통일 한국과 안보상황이 유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독일과 일본 등 	0.35~0.4	28~32 만
2014	주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연구가 7인 평균 현역 군인 및 안보전문가 델파이 설문 	0.7~0.9	47.4~55.9 만

* 출처: 한관수, “통일한국의 군사통합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2), pp.93-94; 주용식,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연구”, 『승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승실대학교, 2014) p.218을 근거하여 재구성.

위의 표를 보면, 통일한국군의 규모가 최소규모인 21만 명이라고 가정 할 경우 독일 군사통합의 수용 비율인 10%를 고려해 볼 때 통합 한국군에 수용 될 수 있는 병력은 약 21,000 명 규모이며, 최대 규모인 70만 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는 약 7만 여명을 수용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20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 중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북한군 수의 편차는 118만 명에서 113만 명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이다. 그러나 이는 남북 군사통합 시 최소 약, 110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배출됨을 의미한다.

기존연구과 독일군사통합의 예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체 120만 명의 북한군 중에서 통일 한국군에 수용 되는 북한군의 규모를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8> 통일 한국군 내 수용 북한군 적정규모 판단

구분	전체 북한군 규모	기존 연구 최대치	기존연구 최저치	기존연구 평균 값	독일 연방군 수용 규모	통일 한국군 수용규모(안)	비수용 북한군 규모
명	1,200,000	700,000	240,000	470,000	11,000(10%)	120,000(10%)	1,080,000

위 표를 보면 기존 연구의 통일한국군 평균규모는 약 47만 명이다. 이 중 독일연방군내의 동독인민군 수용률인 10%를 고려하면 약 12만 명의 북한군이 통합한국군에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 전체 통합한국군의 26%가 북한군 출신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통일 한국군의 초기 전투력 발휘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의 주제를 고려했을 때 비수용 북한군에 대한 규모는 개략적으로 110만 명으로 한정하여 기술하였다.

나. 수용 북한군 선정

북한노동당규약에 의하면 북한군은 대내적으로는 노동당의 군대이며 수령의 군대로서 김정은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며, 대외적으로는 북한지역에 대한 자위와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통한 한반도 전역의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또한 북한 헌법에는 선군노선 관철, 혁명수뇌부 보위, 근로인민 옹호, 외부의 침략

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북한의 자유와 독립 및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²³⁶⁾ 이러한 북한군의 성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 및 주권을 지키는 국군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

수용에 있어서 정치적 조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기타 조건들과 병행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전술한바와 같이 군사통합과정에서 북한군의 수용규모가 커지면 통합한국군의 군사비용이 커지고 통합에 따른 편익을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국가통합과정에서 사회통합 비용일 늘어날 것이다. 또한 사회안전망이나 치안 및 안보에 변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증가된 변수들은 궁극적인 국가통합에 위협이나 리스크로 작용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용하는 북한군의 자질과 역량을 엄격하게 검증하여야 하며, 수용되지 못한 북한군에 대해서는 재교육과 기본적인 직업 알선을 통해 기본생활이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동독인민군 수용에 있어서 정치적인 조건이 큰 틀이었으나, 수용의 대상자인 동독인민군에게는 개인적인 요소인 해고, 실업, 임시고용 유지, 전환 보조금, 전환기 기간제 군인으로서 보내는 시간, 직업 전환교육, 지속적 고용 승계 등이 주된 관심사였다.

이러한 관심사와 더불어 예고된 병력 축소, 헛된 희망, 모순된 정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결정, 정치적 배경에 대한 심사, 해고 조치에 대한 모욕감 등에 의해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자신을 물론이고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²³⁷⁾

북한역시도 위에 언급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용되지 못한 북한군들은 반사회 및 국가적인 성향과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국가통합에 매우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발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국가통합을 위해 백제나 고구려출신 유민들에게 관직을 준예가 있는데, 이는 포용 정책을 통하여 점령

236)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문제이해』, 앞의 책, pp.124-125.

237)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5 국방부』, 앞의 책, pp.407-408.

지역에 대한 안정과 국가통합에 걸림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일신라의 군사통합의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통일신라 중앙군 편제에 9서당(九誓幢)과 삼무당(三武幢)을 조직한 것을 들 수 있다.²³⁸⁾

통일신라는 백제유민과 고구려 유민, 말갈인 등으로 구성된 부대를 편성함으로써 신라와 고구려를 비롯한 말갈인의 불만까지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그들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줌으로써 부흥운동의 억제와 사회통합을 통한 궁극적인 국가통합에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³⁹⁾

남북한 국가통합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지역 내에서 기존의 북한체제에 동조하거나 과거정권 핵심인물들의 반국가 투쟁은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다.

신라가 백제의 인적자원들을 수용하여 얻은 효과처럼,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북한군의 수용과 더불어 통합한국군에 비수용 된 북한군에 대한 처우와 생활안정은 북한지역의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4-9> 9서당의 설립순서 및 구성원

편성시기	서당 명칭	구성원 계열
진평왕 5년 (AD 583)	녹금서당 (綠衿誓幢)	신라 계
문무왕 12년 (AD 672)	백금서당 (白衿誓幢)	백제 계
문무왕 17년 (AD 677)	자금서당 (紫衿誓幢)	신라 계
신문왕 3년 (AD 683)	황금서당 (黃衿誓幢)	고구려 계
신문왕 3년 (AD 683)	흑금서당 (黑衿誓幢)	말갈 계
신문왕 6년 (AD 686)	벽금서당 (碧衿誓幢)	보덕성민(報德城民) - 안승 고구려 계
신문왕 6년 (AD 686)	적금서당 (赤衿誓幢)	보덕성민(報德城民) - 안승 고구려 계
신문왕 7년 (AD 687)	청금서당 (靑衿誓幢)	백제
효소왕 2년 (AD 693)	비금서당 (緋衿誓幢)	신라 계

* 출처: 김기홍, 『신편 한국사: 제 9권(통일신라): II』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2), pp.136-135를 근거하여 재구성.

남북분단 이후 7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통일의 형태와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통일을 달성했을 때 통합의 주체로서 흡수된 북한주민과 북한군에 대한 처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238) 김기홍, 『신편 한국사: 제 9권(통일신라): II. 전제왕권의 확립』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2), p.136.

239) 위의 책, pp.136-137.

물론 통일의 시기와 방법은 예측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국내외 환경과 여건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통일관련 시기와 방법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주민들과 북한군의 처우와 생활안정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통합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통합의 동력을 유지 할 수 있게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수용되지 못한 북한 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제거하고 반국가· 반사회적 변수로 작용하지 않게 하려면 전술했던 바와 같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선발기준에 의해 수용 군인들이 선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는 전술했던 바와 같이 독일의 예처럼 전역 희망자를 포함하여 정치적 성격이 강한 고위군인들과 정치장교 인권탄압군인들은 우선 배제하고, 1차적으로 징병 시 신체기준과 무기체계상 활용자원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북한군에 대해서는 징병 시 신체기준을 현 남한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겠다.

<표 4-10> 한국군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

구분 (cm)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40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6급
140초과 ~146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5급	
146이상 ~159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이상 ~161미만			17 ~ 32.9	17 미만, 33 이상		
161이상 ~204미만	20 ~ 24.9	18.5 ~ 19.9 25 ~ 29.9	17 ~ 18.4 30 ~ 32.9	17 미만, 33 이상		
204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 BMI (체중kg/신장m²) •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 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 출처: 국방부령 제872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5. 10. 19).

1차적으로 신체등급에 의해 비 수용자를 배제하고 난 후, 나머지 수용가능한 대상자 중에서 선별하는 것이 통합의 대상인 북한군의 불만을 다소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군의 젊은 병사들은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출생한 병사들이 대다수로, 현재 남한의 군 입대 신체기준에 못 미치는 병사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8월에 기존의 입대 최저 신장을 145cm에서 143cm로 낮춘데 이어 2015년 3월에 들어서는 이마저 철폐하고 ‘장애가 없으면 무조건 입대 시킨다’²⁴⁰⁾ 소식이 들릴 정도로 현재 북한군에 복무하는 군인들의 신체등위는 대한민국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검사를 통과한 인원에 대하여 통합 한국군에서의 활용여부를 고려하여 선발하고, 약 10만 명의 수용인원 이외의 비수용 북한군은 기타 군·경 관련 업종에 우선 배정 할 수 있겠다.

또한, 수용되지 못하는 110만 명은 정치적 성향은 배제하고서라도 두 가지의 그룹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예 민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류와 군사통합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다.

현재의 북한군의 신체등위별 자료의 접근이 어려워 신체적으로 배제될 정확한 북한군의 수는 알 수 없으나, 군사통합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룹은 최소단계서부터 통일한국사회로 유입되는 자원이므로 적시적인 재교육과 직업교육이 필요하며, 초기 국가통합 시기에 적극적인 생활안정이 필요한 부류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군 재교육 대책

통일 이전의 북한의 체제는 기존의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징과, 북한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갖는 보편적인 특징은 국가계획경제와 당 우위체제 등이 있으며, 북한만의 갖는 특수성은 김일성일가에 의한 수령중심의 권력집중과 세습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북한은 ‘김일

240) 뉴시스, <http://www.newsis.com/>(검색일: 2016. 8.15).

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백두혈통'에 의한 독재체제이고, 둘째는, 공식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고도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셋째는, '사회주의 대 가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⁴¹⁾

특히, 북한의 교육제도의 목적은 소위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두고 있으며,²⁴²⁾ 더 정확하게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 4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로 명시 되어있다. 이러한 북한의 교육목적은 남한의 교육 목적과는 매우 이질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언론관역시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언론관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인민의 교육, 당과 정부선전, 공산주의 사회로 인민들을 동원, 비판과 자아비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²⁴³⁾

요컨대, 통일한국은 기존의 남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보편적인 교육의 목적을 추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인 교육의 목적과 중점, 내용과 방법은 사실상 통일한국에서 살아가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주민과 북한군에 대한 재교육이 사회통합에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한반도에서 정치적 통합을 이루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교육의 문제가 발생한다. 베트남의 경우는 사실상 재교육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의 수감이나 강제노동의 수준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베트남도 재교육이라는 미명아래 국가통합을 위한 사회통합을 계획하고 실천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도 재교육의 필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베트남의 예처럼 사회통합을 위한 재교육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나아가 국가통합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 요컨대 이러한 과정으로 보면, 70여 년 이상 서로 다른 정치체제에서 살아온 남·북한 국민들에게는 표면적으로 사회통합이 정치통합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241)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년 북한이해』, 앞의 책, pp.16-22

242) 위의 책, p.224.

243)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년 북한이해』, 앞의 책, p.275.

더욱이 투철한 사상교육과 즉각적인 무장활동이 가능한 비수용 북한군의 사회부적응과 차별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통일비용을 유발하거나 안정된 국가통합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일반주민들의 재교육보다 통일한국군에 수용되지 못한 북한군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재교육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안정적인 국가통합과 군사통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베트남의 ‘빈손사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베트남군에 수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재교육을 병자한 차별과 억압을 당한 남베트남 군인들이 암살이나 테러 등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차별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군사통합 초기의 문제점은 있었으나 구동독군 장교들은 최초로 1~3계급 낮게 시작했기 때문에 서독군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교육 내용은 민주주의 체제 하의 지휘통솔, 정신교육, 헌법과 군인법 같은 법률교육, 연방군 전술, 무기체계, 군사지식과 국·내외 안보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통일 직후에는 중대장과 선임하사 등 중대급 핵심간부를 2주간 소집하여 지휘통솔 및 부대관리를 교육하였고, 장기복무 직업군인들 대상으로는 4주간의 부대지휘실습, 2주간의 정신교육, 12주의 지휘통솔 관련 보수과정, 근무지 소개, 자습 등 다양한 교육을 시켰다.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동독출신 군인들도 서독 출신에 못지않은 자질을 함양하게 되었고 승진 여건도 개선되기 시작했으며,²⁴⁴⁾ 근무지역의 경우도 1992년 7월 1일부터 동독출신들은 서독지역에서, 서독출신들은 동독지역에서 근무 할 수 있었으며, 1993년부터는 동독출신 장교와 하사관도 서독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²⁴⁵⁾

베트남과 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통합과정에서 기존의 피수용 국가의 군의 재교육 성패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통합의 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44) 김영탁, 앞의 책, p.197.

245) 위의 책, pp.196-197.

가. 단계 및 대상별 교육

북한군 재교육은 군사통합 초기에는 전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통합한국군 수용대상과 비수용 대상이 구분이 되면, 수용북한군의 경우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비수용 북한군의 경우는 정부 및 민간 주도하의 사회교육을 일반북한주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통합한국국민으로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가치를 이해하면서 법과 사회질서를 준수하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최초 단계의 북한군 재교육은 이러한 교육을 수용하고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재교육은 단계별, 수준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1> 단계·대상별 북한군 재교육 방안

구 분	교육 시기	교육 대상	교육기간	교육 내용	주관
1단계	통합 초기	전 북한군	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민주주의 체제이해 • 법과 사회질서 •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 • 한국어 교육(2급) 	국방부 및 군 관련 기관
2단계	분류 완료 후	수용 북한군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민주주의 체제이해 •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 • 직무관련 규정 및 방침 • 한국사(2급) 	
		비 수용 북한군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해 •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 • 기초 직업보도 교육 • 한국사(2급) 	
3단계	수용 및 분리 후	수용 북한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생활법률 • 직무관련 규정 및 방침 • 한국어(4급) 	국방부
		비수용 북한군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생활법률 • 사회적응 훈련 • 직업알선 및 실무교육 	정부 및 민간 교육기관

나. 주요 교육 내용

1)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해

남북한은 분단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립의 시기나 화해·협력을 위한 대화의 시기 중에도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상호대립적인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다²⁴⁶⁾

246) 오수열, 앞의 책, pp.135-136.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남북 상호간 체제가 다름에서 오는 필연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통일한국에서 기존의 북한주민들의 혼란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과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교육받고 전의를 다졌던 북한군의 혼란은 일반 북한주민들 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란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대 정책과 거기서 비롯된 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⁴⁷⁾

이는 남한의 사정도 마찬가지로였지만 남한은 김대중 정부 이후 이러한 적대 정책은 과거보다 그 수준이 낮아 졌으며, 상호이해와 협력의 대북정책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 냉전당시의 과거보다는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교육정책 수립과 지도총괄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정책의 집행과 행정 총괄은 내각 산하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는 고등교육성과 보통교육성으로 대상에 따라 나뉘고 각 급 학교에 대한 총괄지도는 도나 직할시 및 인민위원회교육처에서 담당한다.²⁴⁸⁾

결론적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로부터 말단 인민위원회교육처까지 주체사상교육과 사회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12> 북한 교육학제

구분	연령	기간	비고
박사·연구원	22-26세	2-3년	고등교육
대학	17-22세	4-6년	
단과대학	17-20세	3-4년	
고용전문학교	17-18세	2-3년	
고급 중학교	14-17세	3년	중등교육(의무)
초급 중학교	11-14세	3년	
소학교	6-11세	5년	초등교육(의무)
유치원	4-6세	2년	학교 전 교육 높은 반(1년, 의무), 낮은 반(1년)
탁아소	1-4세	1-4년	학교 전 교육

*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검색일: 2016.7.8)을 근거하여 재구성.

247) 위의 책, p.135.

248)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검색일: 2016.10. 1).

앞의 표에서 보듯이 북한의 학제는 총 12년으로써, 이러한 학제를 통하여 북한주민들은 농어촌지역의 지역특성에 맞는 일부 교과편성을 제외하고 국가와 당이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을 직접 통제한다.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은 4년간 총 12개 과목을 학습하는데 그 중 핵심 3개 과목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이며, 기타 나머지 과목의 구성도 사회주의와 김일성 부자의 이상화에 집중되어 있다.

<표 4-13> 북한 소학교 교과과정

구 분	교 과 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1	1	1	2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1	1	1	2
3	항일의 녀성 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어린 시절				1
4	사회주의 도덕	2	2	1	1
5	수 학	6	6	6	6
6	국 어	6	6	7	6
7	자 연	2	2	2	2
8	위 생				1
9	음 악	2	2	2	2
10	체 육	2	2	2	2
11	도화공작	2	2	1	1
12	영 어			1	1
13	컴퓨터			1	1

*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검색일: 2016. 8.10)을 근거하여 재구성.

초급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총 16개 과목 중에 3과목은 동일하고 추가로 김정은에 관련된 과목이 신설 되었으며, 사회주의 도덕과 더불어 ‘조선력사’가 포함되어 있다. 고급중학교 과정에는 총 22개 과목 중에 초급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이상화 과목에 당 정책, 사회주의 도덕과 법, 심리와 논리, 군사 활동 초보 등의 사상교육과목이 포함되어 있다.²⁴⁹⁾

북한군은 군에 오기 전에 이미 12년간 김일성일가의 이상화 교육과 주체사상, 사

249)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검색일: 2016.10. 2).

회주의 이론을 학습한 사람들이며 군 복무 중에는 각종 정치사상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재교육은 일반주민들에 비해 좀 더 정교하고 강도 높아야 하며, 동시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재교육 수준은 중등 교육과정 사회·도덕 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된 추가 과목을 편성하면 타당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 개정된 사회·도덕 분야 관련 과목을 바탕으로 편성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해를 위한 재교육 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4-14> 자유민주주의체제이해분야 재교육 과목(안)

구 분	2009년 개정 교육과정	2015년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 (경감) 지방의회 등 내용을 삭제하고 민주주의 관련 내용으로 적정화 · (통합) 여성, 신분제도, 인권 내용을 타 영역(지리, 일반사회 영역)과 통합
중학교	· 남북분단과 통일	· (이동) 남북분단, 통일 지리영역으로 이동
고등학교		· (추가) 국제 관계에 한반도의 국제 질서 · (교과 신설) 통합사회
재교육 과목	· 자유민주주의 이해 · 국제관계와 통일한국	· 남북 통일의 의의 · 통합사회로 가는 길 · 인권과 평등 · 지방자치와 국민의 3대 의무

* 출처: 교육부,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충청남도: 홍보담당관실, 2016), p.23을 근거하여 재구성.

3)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특징인 중앙집권적인계획경제의 특징은 세 가지의 특징을 보이는데, 첫째로 토지 등의 소유는 국가만이 가능하며, 둘째로 경제활동의 위한 자원 배분은 당국이 주요 역할을 하고, 셋째로 최종단계의 경제활동은 당의 지도나 명령 지표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²⁵⁰⁾

이러한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공급의 부족이나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했으며, 탈냉전시기 이후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 개입에서 시장의 논리를 일부 적용하면서, 소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또는 ‘시장사회주의 체제’ 등으로 변모해 나갔다.

250)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년 북한이해』, 앞의 책, p.171.

<표 4-15> 북한 경제정책 기초

경제정책기초	내 용
김일성 3대 경제건설 노선 (1960년 대)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노선 ·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군사·경제 병진 노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 “남에게 예측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건설 노선” · 생산수단 및 최종 재화의 생산을 자체 조달을 기본으로 하여 대내 수요를 충당하고, 확대재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자체 인민경제 구조 내에서 해결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 ‘자립적 민족경제’를 전면 구현하는 수단으로 채택된 노선 ·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재건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 · 이 노선은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 전략을 기본으로 하면서 과거 소련, 중국 등이 ‘사회주의 발전법칙’으로 오랫동안 신봉해 온 경제발전 전략.
경제·국방 건설 병진 노선	· 경제 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노선 · 과거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선도 국가들이 자본주의 진영과의 체제 경쟁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 · 사회주의 진영 내 독자 노선과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군사력 우위 확보를 의도 · 1966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 노선을 당의 경제건설 노선으로 확정
선군경제건설노선	· 김일성시대의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이 김정일 시대에 선군경제건설노선으로 변모 · 김정일시대에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으로 의미 일부만 약간 변화 · “국방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노선”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2013년)	· 김정일의 선군경제 건설 노선보다 더욱 확장된 김정은 정권의 노선 · 핵무력 강화가 ‘혁명발전의합법칙적 요구’이므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발전 주장 · 경제건설도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

* 출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년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5), pp.177-184를 근거하여 재구성.

이에 반해 북한은 1980년대 말까지 중앙집권적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다가 더 이상 유지가 어려워 졌음에도 원칙을 고수한다는 미명하에 공식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계획경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는 중이며, 이에 따라 국가 정책과 현실이 괴리되는 이중적인 모습을 초래하고 있다.²⁵¹⁾

북한은 1945년 까지만 하더라도 소상품 경제 형태와 자본주의 경제형태가 존재했었으나, 1959년에 이르러서는 소상품 및 자본주의적 경제형태가 완전히 사라졌으며, 1963년에는 국영이 전체 공업생산량 중에 91.2%나 차지하게 되었으며, 나머지는 협동경영 형태이다.

25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검색일: 2016.10. 3).

<표 4-16> 총 공업생산액 중 소유 형태

구 분	1945	1949	1956	1959	1960	1963
사회주의 경제형태(%)	72.4	90.7	98.0	100.0	100.0	100.2
(국영)	(72.4)	(85.5)	(89.9)	(89.5)	(89.7)	(91.2)
(협동경영)	(0.0)	(5.2)	(8.1)	(10.5)	(10.3)	(8.8)
소상품 경제형태(%)	4.4	1.5	0.7	0.0	0.0	0.0
자본주의 경제형태(%)	23.2	7.8	1.3	0.0	0.0	0.0

* 출처 : 통일부 북한정보 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검색일: 2016. 8.17)을 근거하여 재구성.

사실상 이미 북한주민들은 당국의 계획경제 실패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국경제대에서의 밀수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부의 축적을 위해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군인이나 보위부 등의 관료와 결탁하여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초기 시장경제에서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이며, 시장경제 체제란 단순히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와 정상적인 납세 등, 시장경제체제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질서가 존재한다.

반세기 이상을 중앙 집권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생활한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한 쪽 면만을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군복무 기간 10여 년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북한군은 그나마 변화하고 있는 북한주민들 보다 더더욱 시장경제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통합 초기에 북한군에 대해서는 최초수용여부를 떠나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비수용 되어 사회로 나갈 때 불필요한 상실감이나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오해는 국가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해와 마찬가지로 중등교육과정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과목편성은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 준하여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7>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분야 재교육 과목(안)

구 분	2009년 개정 교육과정	2015년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	.
중학교	·국제 경제 단원에 환율, 국제 수지 등 학습	·(삭제) 국제 수지 학습 삭제 ·(추가) 금융, 기업가정신 등 내용
고등학교	·[경제]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삭제)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재교육 과목	·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이해 ·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 국제경제와 통일한국 경제 · 생활 경제 (1) · 금융 및 기업 이해 · 생활 경제 (2)

* 출처: 교육부,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충청남도: 홍보담당관실, 2016), p.23을 근거하여 재구성.

이러한 교육은 군사통합 최초단계부터 수용 및 비수용 북한군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며, 과목의 목표달성 수준은 중등교육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이후에는 재교육 기간 중에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수준이 저조한 북한군은 수용여부판단 시 일정부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법과 사회질서

국가통합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중 하나는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인식의 문제일 것이다. 반세기 이상을 김일성일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에서 살아온 북한주민들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개인을 절제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자유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살아온 대한민국국민들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률과 관련된 북한이 겪게 될 문제는, 첫째로,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기본 인식과 자세이고, 둘째는 인식과 자세가 되어 있더라도 기본적인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각종 법률적 지원제도가 있고, 설사 법을 잘 모르더라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개인이 노력한다면 일정부분 해소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생활환경에서 생활 해 본적이 없는 북한주민들은 통합초기단계에서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며, 탈법과

무법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더욱이 북한군은 군 조직 특성상 상명하복의 문화에서 장기간 생활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한 것을 실천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재교육은 국가 및 사회 통합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교육은 군사통합 최초단계부터 수용 및 비수용 북한군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며, 과목의 목표달성 수준은 중등교육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8> 법과 사회질서분야 재교육 과목(안)

구 분	2009년 개정 교육과정	2015년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교통과 통신 수단의 변화	·(변형) 이동과 소통하기로 변형 ·(신설)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중학교	.	.
고등학교	·[사회·문화]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	·(삭제)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 ·(과목명 변경) 법과 정치→정치와 법
재교육 과목	· 일상생활과 사회제도(1) ·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2)	·법과 사회규범

* 출처: 교육부,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충청남도: 홍보담당관실, 2016), p.23, 재편집.

법과 사회질서에 관련된 교육역시 재교육 기간 중에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수준이 저조한 북한군은 마찬가지로 수용 여부 판단 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민족동질성 교육(한국사)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함께 남북한의 역사의식은 큰 차이를 보여 왔으며, 북한의 역사인식은 시대구분부터 남한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의 경우 고구려의 건국을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명시된 기원전 37년을 준용²⁵²⁾

252) 삼국사기 제13권 고구려본기 제1(三國史記 卷第十三 高句麗本紀 第一).

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중국 삼국지 제 13권에 명시된 기원전 3세기 중엽에서 2세기 중엽²⁵³⁾을 개략적인 고구려의 건국으로 보고 있으며, 공식적인 건국은 BC277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대구분도 남한과 다르게 보고 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단군·동명왕·왕건 등의 능을 재건축 및 복원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국가를 남한지역의 통일신라가 아니라 개성 중심의 고려라고 인식하고 있다.²⁵⁴⁾

남북한 역사의식의 이질화는 근·현대사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많이 나타나는데, 남한은 역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학술적 논의에 따라 그 가치와 개념이 재정립 되는데 반해, 북한은 김일성 일가와 노동당의 지도에 의해 철저하게 정치적 관점에서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나 사회주의 체제의 당위성과 우월성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기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19>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원시시대	• 남한은 선사시대로 통칭 (원시시대+선사시대) -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 고조선	• 선사시대~고조선 성립이전
고 대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 고조선 건국~진국 멸망
중 세	• 고려	• 고구려~1985년 - 고구려, 백제, 전기 신라, 후기 신라, 고려, 조선
근 세	• 조선 개항 이전	•
근대사	• 조선말 개항기~광복이전	• 1860~1925
현대사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 1926~ - 항일부장투쟁사 - 민주 건설사 (1945~6.25 전쟁 이전) - 조국해방투쟁사 (6.25 전쟁) • 사회주의 건설사(1961~) - 사회주의전면실시시기 (1961~1963)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시 (1963~1980) -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시기 (1990)
특 징	• 국가의 성립과 사회병화에 기준을 둠	• 정치사상 관점에서 역사를 다룸

* 출처: 김대식 엮음, 『EBS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서울: 신지원, 2012), pp.85-32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검색일: 2016.5.20)을 근거하여 재구성.

253) 《三國志》권 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夫餘濊東沃沮.

254)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검색일: 2016. 5.24).

따라서 남북통합초기부터 남북한의 역사의식 통합을 위한 공동의 역사가 연구되어야 하고, 북한주민들과 북한군에 대한 교육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역사가 가지는 특수성, 즉 이데올로기 적인 요소가 많은 역사교육은 상대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우리의 역사를 무조건 적으로 수용하라고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실제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역사라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동의 연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민족의 대외 투쟁사, 요컨대 대중국, 대몽골, 대일본, 서양세력과의 투쟁은 남북한 역사가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특히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사 같은 부분은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공동의 항일투쟁사로 묶어 기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한 국가의 공통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이 통일 되지 않고서는 국가통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며,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 언제든지 붕괴 될 수 있는 미완의 통합이 될 수 있다.

교육 내용과 수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최초 수용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공통으로는 남한의 한국사 검정시험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국난 극복사, 대외 항쟁사, 독립운동사 등을 반영하는 것이 국가 및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수준은 초등학생 수준인 한국사능력평가 6급 수준이 적당하고, 수용 북한군의 경우는 이후 과정에서 남한의 공무원 임용시험 역사과목 면제 기준인 3급까지로 점진적 향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역사인식에 대한 통합을 위한 교육과목과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표 4-20> 북한군 한국사분야 재교육 과목(안)

구 분	교육 내 용		
공 통	• 한국사 능력시험 6급 교육내용	• 국난 극복사	• 독립투쟁사
수용 북한군	• 한국사 능력시험 3급 교육내용	• 6.25 전쟁사	• 통일한국과 세계사
비 수용북한군	• 한국사 능력시험 5급 내용	• 6.25 전쟁사	

5) 한국어 교육

남북한이 분단된 이래 남북한 간의 언어 역시 이질화 되어 갔다. 통일 이후 군사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언어상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통일 한국군에 수용된 북한군에 대해 기존 한국군의 군사용어를 이해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비수용 북한군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과정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있다.

통일한국의 통합군에 편입된 북한군의 경우는 일정기간의 군사통합과정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수용되지 못하고 사회로 배출되는 인민군의 경우에는 사회배출 이후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안정적인 국가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재교육과정에 언어교육이 편성되어야 한다.

교육의 주체로 볼 때, 첫 번째 경우는 교육의 주체가 통일 한국군이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나, 두 번째의 경우는 교육의 주체를 통일한국군이 주도 것이 효율적인가 국립국어원 등 정부나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비수용 북한군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의 주체는 후에 기술하겠으나 교육의 실천 가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어 교육은 통일한국군이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남북언어 연구를 총 43개 분야에 대해 연구한 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나, 군과 관련된 연구 자료는 없다. 국립국어원의 연구결과물의 분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4-21> 국립국어원 남북언어 연구자료

연구 분야	자료 수	연구 분야	자료 수
남북 고문헌 자료	2	북한의 우리말 의미	1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북한의 외래어	1
남북 언어 순화 자료	2	북한 이탈 주민 / 새터민	6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1	북한 국어화 용어 분류 체계	1
남북 언어 예절	1	북한 문학 작품	1
남북 체육 용어	1	북한 방송 용어 조사 연구	1
남북한 어문 규범	3	북한 사전 미등재어	1
남북한 외래어	1	북한 시나리오 어휘 조사 연구	1
남북한 친족 호칭 지칭어	1	북한 신문 용어 조사 연구	1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1	북한 영화 어휘 조사 연구	1
남한 정착 북한출신 주민	1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외래어 조사	1
북남 대역 사전	1	북한 주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	1
북한 국어 사전	7	북한 연구 논저	1
북한의 언어 정책	1	계	46

* 출처: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front/bookData/>(검색일: 2016. 3. 15)를 근거하여 재구성.

이미 북한에서는 1964년과 1966년에 걸친 김일성교시로 인해 내각 주도로 ‘국어사정위원회’,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를 직속으로 두고 우리의 표준어에 해당하는 ‘문화어’를 제정하고 ‘비혁명적, 비문화적’ 요소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문화어’란 평양 말을 중심으로 한 언어로써, 대중화된 단어를 제외하고 한자어와 외래어는 쓰지 못하게 하고 한글 고유어로 바꾸었으며, 고유어가 없을 경우는 ‘풀이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문법적으로는 음운에 있어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품사의 경우 남한의 9품사 중에 ‘조사’를 빼 8개의 품사를 사용하고 있다.²⁵⁵⁾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러한 북한의 언어정책과 남한의 경제성장과 국제화로 인한 외래어와 외국어 혼용은 남북한주민들 간의 언어혼란을 가져왔다. 남한주민들은 남한 내 지역 방언보다 북한어에 대한 차이를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차이 정도에 있어서도 북한어에 대해 51.6%가 매우 차이를 느끼는 반면, 지역 방언에 대해서는 14.9%에 그쳤다.²⁵⁶⁾

<그림 4-5> 지역 방언 및 북한어와 표준어를 비교했을 때의 차이



* 출처: 송철의,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2015), p.189.

또한 통일을 대비한 남한 사람들에 대한 북한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2015년 조사결과는 64.1%가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북한말을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4.4%에 그쳤다. 이러한 비율은 2005년 기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비율은

255)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검색일: 2016. 3. 5).

256) 송철의,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2015), p.189.

11.5%가 줄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은 12.5%가 증가하였다.²⁵⁷⁾

이는 남한주민들이 점차 북한과의 통일을 대비해 남한의 언어를 통일 한국의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역설적으로 북한주민들 입장에서는 남한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남한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예를 보면, 같은 설문조사에서 남한어와 북한어의 통합 시에 어떤 표준어 정책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으로 ‘남한어’가 50.8%를 차지하였고, 이어 ‘남한어와 북한어를 적절히 통합하여야 한다.’ 47.1%로 북한어만을 표준어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2.0%로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²⁵⁸⁾

북한의 초급학생들이 사용하는 ‘조선말 사전(학생용)’을 분석한 논문을 보면, 북한 초급학생들이 사용하는 표제어(단어와 어휘)가 1만 1천개가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남한의 경우 3만 2천개 이상의 표제어가 실려 있다.²⁵⁹⁾ 이는 초등학교수준에서 3배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통일국가성립 시 북한주민입장에서는 최소 3배 이상의 언어적 이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표 4-22> 초급학생용 사전의 남북 차이점 분석

대 분류(%)	중 분류 (%)
규범의 차이 (54.9)	맞춤법 (23.6)
	외래어 (3.7)
	표준 (27.6)
뜻 풀이 차이 (2.0)	.
어휘 차이 (24.3)	단어화 한 언어 (2.4)
	어형 변화 (0.5)
	사회 (3.7)
	생활 (8.8)
	일반 (5.4)
의미 (3.3)	.
표제어 등재의 차이 (15.5)	구의 등재 (14.1)
	남한의 미등재 (1.2)
	표제 (0.2)

* 출처: 양명희, 『북한의 조선말사전(학생용) 분석』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2002), pp.17-20을 근거하여 재구성.

257) 위의 책, p.191.

258) 송철희, 앞의 책, p.197.

259) 남한의 경우는 「금성출판사 프르넷 국어사전(2001)」에는 3만 2천개 실렸으며, 「두산동아 연세 초등국어사전」에는 3만 5천개 실려 있다. 양명희, 『북한의 조선말사전(학생용) 분석』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2002), pp.7-8.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언어규범(54.9%), 뜻풀이(2.0%), 어휘(24.3%), 의미(3.3%), 표제어 등재 여부(15.5%)의 차이 등의 차이를 보였다.²⁶⁰⁾ 뜻풀이와 어휘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가장 비중이 큰 언어규범이나 어휘 등은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재교육 과정에서의 국어교육은 대상별로 수용북한군과 비수용 북한군으로 나누어져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I 단계 2급 수준으로 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TOPIK I단계 2급 수준은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로, 중도입국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며,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친숙하면서 사적인 화제에 대해 문단단위로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는 단계이다. 또한 이 단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공식적인 상황과 비공식적인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 할 수 있다.

재교육 과정에서 모든 북한군은 한국어능력시험 2급까지 교육을 받고, 수용 북한군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4급까지의 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TOPIK II단계 4급은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단계로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 할 수 있는 단계이다.²⁶¹⁾

이러한 것을 근거로 북한군에 대한 한국어 재교육 분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3> 북한군 한국어분야 재교육 과목과 수준(안)

구 분	교육 내용	수 준
공 통	• 한국어 능력평가 1~2급	• 외국인 결혼 이민자 국적취득 • 외국인 중도입국자 학생 고등학교 입학 가능 수준
수용 북한군	• 한국어 능력평가 4급	• 외국인유학생 석사 학위과정 가능 수준
비 수용북한군	• 한국어 능력평가 3급	• 외국인 유학생 대학입학 가능 수준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경우, 각 단계별 10주간의 교육 시간이 소요되나 북한주민들

260) 위의 책, pp.17-20.

261) TOPIK 한국어능력시험, <http://www.topik.go.kr>(검색일: 2016.10.12).

의 경우 이보다는 짧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며, 2단계까지 필요한 총 한국어 교육 기간은 외국인 일 경우 1일 4시간 20주 정도로 판단되나, 북한군의 경우 약 4주 정도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 되는 단어와 문장들은 충분히 학습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3. 재교육의 주체 및 예산확보

독일통일 당시 구동독군 103,000명 중에 약 7,000명이 바로 군을 떠났다. 이렇게 바로 떠난 군인들은 전술한바와 같이, 장군과 55세 이상의 직업군인, 군 법무관, 정치학교 등에 보직된 인원들로서²⁶²⁾ 남한주도의 남북한군사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라도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대상들이다.

이러한 이들은 사회적응을 위한 언어교육 보다는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교화 및 통제에 교육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군인들이라고 하겠다.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기해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2만 여명을 제대시켰으며, 이후 병무행정으로 전환한 인원을 포함하여 4,000여명을 전역시켰고, 나머지 인원도 2년간의 복무연장상태로 수용 하였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보면 전체 103,000 명중에 통합과 동시에 제대한 7,000명을 제외하고 약 25%가 3개월 어간의 짧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까지 남은 직업군인 및 장기복무 군인들의 수는 10,800명이었다.²⁶³⁾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체 동독군인들의 약 10%정도만 독일연방군에 수용되었는데, 이를 북한 정규군 규모를 고려하여 비교하면 약 120만 중 12만 명 정도만이 수용되고, 108만 명이 사회로 배출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총 동독군 병력 대비 수용인원을 고려한 것으로 독일연방군에서 구 동독군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았을 때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독일통일 직후인 199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연방군 병력 476,300명 중 구 동독 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0.023% 이다.²⁶⁴⁾ 이 비율을 기준으로 기존 연구가들

262) 김영탁, 앞의 책, p.193.

263) 위의 책, p.195.

264)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5 국방부』, 앞의 책, p.412.

의 통일 한국군의 평균 규모인 47,000만 여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역시 수용 할 수 있는 북한군은 약 10,810명으로 구동독군의 규모와 같다.

또한 기존연구의 최소 규모인 240,000명과, 최대 규모 700,000명을 고려했을 때의 수용규모는 21,000명에서 70,000명사이라고 볼 수 있다.²⁶⁵⁾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피수용 대상인 전체 구 동독군의 규모에서 재임용 된 수준인 약 10%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110만 명의 비수용 북한군에 대한 교육의 주체가 필요하며, 또한 이에 맞는 교육능력과 지원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 교육의 주체

약 110명 여명에 달하는 비수용 북한군에 대한 재교육의 주체는 국가와 민간교육 시스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과는 다르게 북한군은 장기간 사회와 동 떨어져 있었고 국가통합이 이루지기 전까지 한국군에 가장 적대적인 집단이었으며,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이상과 가치관을 가진 집단이므로 북한주민들이 받는 사회화 교육이전에 그들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아야 함은 전술한 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장기적으로 복무한 이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사의 능력과 자질, 교실과 통제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 검증과 교육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은 군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타당성의 배경은 정부나 공공교육기관은 북한군 이외에도 북한전체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해야하는 부담이 있고, 이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며, 군인이라는 특수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넓은 이해의 폭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이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교육장소 문제를 고려했을 때에도 현 북한군 주둔지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장소소요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군 출신들에게는 익숙한 환경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군의 재교육을 위해서는 기회교육위주가 아닌 체계적인 조직에 의한 교

265) 한관수, “통일한국의 군사통합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2), pp.93-94; 주용식,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연구”, 『승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승실대학교, 2014) p.218.

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조직문화는 군이 가장 익숙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방부나 군이 북한군 재교육의 주체가 되어 1차적으로 재교육을 시킨 다음, 북한주민들이 받는 사회화 교육을 추가로 받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대한 불안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 교사의 확보

국방부나 군이 북한군의 재교육의 주체가 될 경우 교사의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남한의 중학교 학생의 수는 1,585,915명이고, 이 정도 규모의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111,247명의 교사와 11,619명의 사무직직원, 86,222개의 교실이 필요하며, 학급은 54,855개가 소요되고 있다.²⁶⁶⁾

교사 당 학생 수는, 교사 1인당 15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며, 사무직원 1인당 학생 135명을 담당하고 있고, 1개 학급당 약 29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규모이다.²⁶⁷⁾

남한의 중학생 수 대비 북한군 정규군 규모는 약 76%로써, 이를 기준으로 북한군 재교육을 위한 교사의 규모를 판단하면 약 84,547명의 교사가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직 직원은 약 8,830명이 필요하다. 교실의 경우는 현 북한군 편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큰 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4> 2015년 전국 중학교 통계

구 분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교실 수	학급 수
계	3,207	111,247	86,222	54,855	1,585,951

* 출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isticsList/>(검색일: 2016. 3.15)를 근거하여 재구성.

교사확보 문제는 수용북한군의 경우에는 필요 내용을 현역 군 주도하에 실시하고, 비수용 북한군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예비역 간부들을 활용해 실시하면 교사 수급에는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으로 매년 군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중기 복무자 이상의 간부들, 약 2,000여

266)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isticsList/>(검색일: 2016. 3. 5).

267)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검색일: 2016. 3. 6).

명이 제대를 한다.

이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군 복무 기간 중 대적관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교사들 보다는 북한군을 이해하고 그들을 관리·통제하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복무기간에 따라 전직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통일 이후에 비수용 북한군에 대한 필수교육내용을 이수하게 하여,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게 준비 시킬 수 있겠다.

<표 4-25> 연간 전역예정자 교육계획

구분	주관	교육기관	기간/과정 수	연 회수	연인원	대상	
진로교육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1박 2일	24회	1,200	장기복무자	
기본교육			1주	24회	2,400		
컨설팅			1주	36회	1,080		
연계교육			-	연중	2,000		
주문식 교육			1개월	4회	200		
진로교육			중기복무자	국방전직교육원	1박2일	24회	1,200
기본교육					1주	24회	2,400
연계교육					-	연중	1,200
주문식 교육					1개월	16회	800
중기복무자 취업지원Pro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해당지역)	7회	5일	140
진로교육 (부대순회)	국방부	해당부대 (사단 급 이상)	1박 2일	16회	800	단기복무자	
기본교육 (부대 순회)			1일	50회	2,500		
진로설계 (온라인)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79개 콘텐츠	1회	16,000	전원	
사이버 전직지원 (온라인)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4개 콘텐츠	-	-		

* 출처: 육군본부, 『전역예정군부를 위한 2016년 전직지원 교육 및 행정안내서』 (계룡: 육군인쇄창, 2016) p.36을 근거하여 재구성.

요약하여 정리하면 북한군 재교육에 필요한 교사의 수는 약 84,547명이 필요하고 지원 행정사무원은 약 8,830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3년간의 교육기간을 고려한 것이므로 비수용 북한군을 교육하는데 있어서는 큰 규모이다. 따라서 교육내용과 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사의 수를 선정해야 하겠다.

예비역 군 간부들은 자질 면에서 대다수가 다양한 학과출신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그동안의 민간 경험요소가 있고, 군 조직에 익숙한 자원이므로 차후 북한군 재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 교육 예산 확보

110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을 약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예산과 자원이 필요한 실정을 고려할 때, 재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약 110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을 재교육 없이 바로 사회로 배출했을 경우, 오히려 예상하기 어려운 사회통합에 소모되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이 보장 되지 않는다면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수도 있으며, 국경을 접한 중국이나 러시아로 대거 유입되어 외교문제를 유발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전술한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통합과정에서 추진력을 잃고 국론이 분열 되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남북 예멘의 경우처럼 내전을 야기 시키는 국가 전복세력으로 확장되어 그들을 제거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소요 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북한군에 대한 재교육을 위한 예산의 확보는 성공적인 국가·군사·사회통합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 추정 예산 항목

북한군 재교육을 위한 추정예산은 각각의 국가통합의 대상들과 관련이 있고, 통합 당시의 국내외 정세와 경제상황 때문에, 그 규모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재교육기간과 내용을 기준으로 개략적인 규모와 항목 및 예산을 추산해 볼 수 있다.

전술한바와 같이 북한군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교육은 약 1개월 정도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은 한국군 수준의 복무환경에 필요한 경비가 소요 될 것이다. 또한 수용북한군과 비수용 북한군의 분류가 완료된 2단계는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에 수용결정이 난 약 10만 여명의 북한군은 직무를 수행

할 해당 군 관련 시설이나 부대에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하겠다.

이에 반해 수용되지 못한 110만 명의 북한군은 최초 1단계 교육 장소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고, 분류가 완료된 3단계는 수용된 북한군의 경우는 현 직에서 직책관련 업무학습과 재교육을 받고, 수용되지 못한 북한군은 1·2단계 집체 교육장소를 수료하고 자신의 거주지 내의 정부나 민간 시설의 직업보도교육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겠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군이 주도하는 북한군 재교육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4-26> 북한군 재교육에 필요한 추정 예산소요 항목

구분		교육기관(장소)	교육 기간	예산 소요 항목	교육 인원
1단계	공통	북한군 주둔지 (자신의 부대 배제)	1개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 리모델링 • 의식주 비용 • 장병 급여 (한국군수준) • 교육 행정비 • 교사 급여 ※ 순수 군 재교육 예산 	120만 명
2단계	수용	해당 군 관련 시설, 군 부대 등	3개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 비용 • 장병 급여 • 교육 행정비 • 교사 급여 ※ 정부 예산(국방부) 	약 10만 명
	비수용	북한군 주둔지 (교육장 순환)	3개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 비용 • 장병 급여 (한국군수준) • 교육 행정비 • 교사 급여 ※ 순수 군 재교육 예산 	약 110만 명
3단계	수용	해당 군 관련 시설, 군 부대 등	6개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 비용 • 장병 급여 • 교육 행정비 • 교사 급여 ※ 정부 예산(국방부) 	약 10만 명
	비수용	거주지 내 정부 및 민간 직업보도 시설	6개 월	※ 정부 및 SOC	.

예산의 출처는 수용북한군의 경우 1단계는 순수한 재교육 예산을 활용하고, 2·3단계에는 해당 시설에 재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반영하며, 비수용 북한군의 경우는 1·2단계는 순수 재교육예산으로 실시하고, 3단계는 자신의 거주지 지역에서 정부나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재교육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재교육 기간 중에 취업이 되면 개인에게 할당된 잔여 재교육 기간과 예산은 적립

하여, 상대적으로 직업 안정성이 취약한 북한제대군인들에게 국가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는 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

(2) 예산 확보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은 전체예산의 30%를 군사에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1972년 이후 부터는 경상유지비 만 공표하고 여타 예산의 대부분은 은폐하고 있다.

2008년 4월 제 11기 제 6차 회의에서 2008년도 군사비는 국가총예산의 15.8% 수준임을 공표하였으며, 4월 ‘제 12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당 해년도 예산지출 총액이 15.8%로 책정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13년 4월 ‘제 12기 7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16%로 발표하였고, 2015년 4월 ‘제 13기 최고인민회의 3차 대회’에서는 2014년과 동일한 전체 예산의 15.9%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군사비는 북한 당국의 발표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질 군사비는 국민총소득의 30%정도를 상회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⁶⁸⁾

<표 4-27> 2016년 남북한 경제지표

구 분	남/북한	단위	2016년	2014년
인 구	북한(A)	천 명	24,779	24,662
	남한(B)	천 명	50,617	50,424
	(B/A)	배	2.0	2.0
명목GNI	북한(A)	조 원	34.5	34.2
	남한(B)	조 원	1,565.8	1,490.8
	(B/A)	배	45.4	43.7
1인당GNI	북한(A)	만 원	139	139
	남한(B)	만 원	3,094	2,956
	(B/A)	배	22.3	21.3
경제 성장률	북한(A)	%	-1.1	1.0
	남한(B)	%	2.6	3.3

* 출처: 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 <http://www.bok.or.kr/>(검색일: 2016. 9.27)를 근거하여 재구성.

268) 통일부 북한정보포탈,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검색일: 2016. 7.24).

이것을 근거로 북한의 군사 예산을 추정해 보면 2016년의 경우 북한 명목 GNI 34조 5,000억 원²⁶⁹⁾의 30%인, 약 10조 3,500억 원으로 정도로 추정된다. 상기의 예산은 남북통합이 이루어지면 불용예산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불용예산은 군사통합과정에서 일정기간 소요되는 군사력 재배치나 불용시설 및 장비처리, 북한군 퇴직금 및 재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전체 국방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약 38조 7,995억 원으로, 이중 방위력 개선비 11조 6,398억 원을 제외한 전력운영비는 27조 1,597억 원이다. 이 전력운영비 중에서 기존의 전력유지에 들어가는 10조 7,530억 원을 제외한 순수 병력운영비는 16조 4,067억 원이다.²⁷⁰⁾

2014년 기준 한국군 총 병력은 약 63만 여명이지만, 기존연구의 통일한국군의 규모인 최소 21만 명에서 70만 명을 근거로 순수 인건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추정해 볼 수도 있고, 또한 2014년 국방백서에 명시된, 2022년까지 52만 2천 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추가로 산정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감축 계획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추정한 결과이므로 통일 한국군의 전체 병력 규모는 이보다 낮은 규모로 예상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연구의 최소 병력 규모와 최대 병력규모, 평균 규모와 2022년 병력 감축 계획을 고려하여 순수 병력 운영비에 투입되는 예산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8> 통합 한국군 병력규모에 따른 순수 병력운영비 추정

구분	병력 규모	현 한국군 대비 비율	병력운영비	차감 예산	
기존연구 결과	최소	21만 명	33.3%	5조 4,634억 원	+ 10조 9,433억 원
	평균	45만 명	71.4%	11조 7,143억 원	+ 4조 6,924억 원
	최대	70만 명	111.1%	18조 2,278억 원	- 1조 8,211억 원
2022년 감축안(52만)	52만 명	82.5%	13조 5,355억 원	+ 2조 8,712억 원	
※ 기준 : 현 한국군 병력 63만, 순수 병력운영비 16조 4,067억 원					

269) 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d=2236>(검색일: 2016.10. 1).

270) 2015년 12월 3일자 국방부 보도자료, p.1.

이렇게 추정된 예산 중, 잉여예산은 북한군 재교육을 위한 재원 마련에 활용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남북한 군사통합과정에서 북한의 군사예산이나 남한의 국방예산을 불용예산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술한바와 같이 북한군의 재교육의 성공여부는 통일한국의 국가통합과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남북한 국방비는 군사통합과 북한군 재교육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기존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고, 통일 한국군의 규모의 축소로 발생하는 예산은 항목을 재교육관련 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해야 하겠다.

위 표에서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용한 예산은, 약 4조 7천억 원 정도이다. 63만 여명의 한국군이 1년 간 사용하는 병력운용비는 약 16조 4천억 원으로 개략적으로 월 별로 계산하면 1조 3,672억 원 정도이다. 이중 대부분이 급여임을 고려하더라도 재교육기간 중에 교사의 급여도 지급해야함으로 재교육 예산과 비교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정리하면, 63만 명 한국군이 1개월 동안 1조 3,672억 원의 병력운용비를 사용하는 데, 이를 통합한국군 평균규모인 45만 명의 비율인 71.4%로 계산해 보면 9,761억 원이며, 결론적으로 63만 명의 한국군이 45만 명의 통합 한국군으로 감축·개편 될 경우, 1개월 동안 병력 운용비에서 약 3,911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북한군 재교육 1단계에 사용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3911억 원을 최초 1단계 교육대상인 북한군 120만 명으로 나누면 1단계 교육기간동안 북한군 1인당 약 325,900원을 배정 할 수 있으며, 1단계 재교육 북한군 경우 수용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1개월 동안은 간부와 병사의 구분 없이 한국군 병사의 80% 수준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재분류가 완료되어 2단계로 전환 될 경우 수용된 간부는 독일의 예처럼 한국군 보다 2단계 낮은 계급과 급여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지속적으로 간부의 경우는 엄격한 재분류를 통해 수용 자원과 교화자원으로 분류한 후에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의사결정을 통해 수용여부를 재판 단하거나 재교육자원 또는 교화자원으로 분류해 나가야 한다.

2단계가 되면 약 3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비수용 북한군은 1단계와 동일한 방법

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수용북한군의 경우는 수용된 기관이나 부대에 별도의 예산을 정부에서 할당하여 운용하는데, 별도의 예산은 비수용 북한군의 3단계 교육이 종료되는 6개월 뒤 부터는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3단계가 되면 수용북한군의 경우는 2단계와 동일한 예산으로 운용하고, 비수용 북한군의 경우는 2단계가 종료하면 본인의 거주지로 귀향하여 거주지에 설치된 북한주민들의 직업보도 시설에서 약 6개월 동안 지원을 받고, 이때 필요한 예산은 정부예산이나 민간기관 및 사회간접 자본을 이용하면 효율적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전체 북한군 재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1~2단계까지 약 4개월 기간 동안이며, 나머지 6개월은 정부예산과 기타 사회간접자본을 이용하여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교육 장소는 기존의 북한군 주둔지를 교육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10조 7,530억 원에 이르는 전력유지비 중에 병력 감축 비율 71.4%를 고려하여 계산하면 약 7조 6,776억 원으로 예산을 감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확보된 3조 754억 원은 기존의 북한군 주둔지를 재교육 장소로 개선하는데 사용하고 북한군 재교육이 완료되면 재교육 시설들은 공공목적의 장소로 활용하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교사의 급여 관련 예산은 앞서 계산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남한의 중학교 기준으로 약 84,547명이 필요하고 사무직 직원은 약 8,830,명이 필요한데, 대부분이 남한에 거주하는 자원들이므로 숙식은 교육장소인 북한군 거주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 들의 보수는 7~9급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계약직으로 운용할 경우, 2016년 기준 7급 공무원 12호봉의 기본급인 약 250만 원 정도를 책정하고, 교사의 경우도 계약직으로 약 250만 원으로 책정하며, 추가적으로 원거리 근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해 보면, 교사들의 경우 1개월에 약 2,114억이 소요되고, 비수용 북한군이 귀향하는 시점인 4개월 동안 8,4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력유지비에서 3조 754억 원에서 고려하면 될 것이다.

제 3절 비수용 북한군 활용방안

1.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

가. 분야별 통합 기구 설립 및 활용

독일의 경우 1969년에 이미 서독에서 ‘직업교육법’을 제정하고 실시하던 것을 1990년 7월 19일 동독인민회의에서 수용함으로써 동서독 양국 고등학교 졸업생의 50% 이상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직업교육의 책임은 민간이 주도하였으며, 2010년 기준 약 7,000여개의 직업훈련소가 동독지역에서 운용되고 있었다.²⁷¹⁾

약 11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비수용 북한군의 재교육은 다양한 군 조직에서 복무한 특성을 고려하여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인원 수 만을 고려하거나 재교육의 행정편의주의 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특성과 능력을 배제 한 채 획일화된 재교육 과정을 하는 것은 비효율 적이라 하겠다.

또한, 활용 측면에서도 통합적인 활용을 해야 한다. 즉 재교육을 받고 취업이 된 비수용 북한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경우 연간 전역하는 중기복무 이상의 간부들 2,000여 명 이상 규모의 전직교육을 위해 국방부 예하의 국방전직교육원, 각 군 본부에서 운용하는 취업지원센터, 보훈처 취업지원센터,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전역간부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²⁷²⁾

이러한 조직과 기구들은 군사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군이 구성될 경우 현 남한의 군인들을 수용하기에도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순수 비수용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기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3단계 직업교육과 직업알선은 이 기관이 주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구는 중앙에 본부를 두고 각 시도 별로 비수용 북한군이 많은 지역부터 설치 운용되어야 하며, 3단계 교육이 종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이후 이러한 기구는 북한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업교육 센터나 구직창구로 활용하면 효율적이라 하겠다.

271)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3 교육부』 (서울: 통일부 통일정책실, 2011), p.274.

272) 육군본부, 『전역예정간부를 위한 2016년 전직지원 교육 및 행정안내서』 (계룡: 육군인쇄창, 2016) p.36.

나. 남한 자본과 인적자원진출 통제

국가통합과정에서 낙후된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기위해 필연적으로 많은 재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건을 위해 무분별한 남한의 기업과 사회간접자본들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또한 북한주민들의 경제 및 생활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채 남한지역으로 대거 유입된다면 북한주민들은 물질적 곤궁과 함께 심리적 박탈감마저 갖게 될 것이다.

이미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는 2015년 기준으로 명목 GNI는 45.4배, 1인당 GNI는 22.3배나 차이가 난다.²⁷³⁾

<표 4-29> 남북한 명목GNI, 1인당 GNI 차이

구 분	남/북한	단위	2016년	2014년
명목GNI	북한(A)	조 원	34.5	34.2
	남한(B)	조 원	1,565.8	1,490.8
	(B/A)	배	45.4	43.7
1인당GNI	북한(A)	만 원	139	139
	남한(B)	만 원	3,094	2,956
	(B/A)	배	22.3	21.3

* 출처: 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2236>(검색일: 2016. 8. 25)를 근거하여 재구성.

독일의 경우 통일선언 이후에 자유로운 동서왕래와 1:1화폐통합으로 인해 통일독일의 경제는 붕괴되었다. 당시 동독의 화폐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았으며, 1989년 동독의 자체계산에 의하면 1:4.7의 화폐가치의 차이가 있었고, 이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동독 산 제품들이 국제시장에서 거래 될 때는 서독의 23마르크가 동독 100마르크와 같았으며, 심지어 암시장의 비율은 1:8~1:10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와 임금의 격차는 동독 경제의 붕괴 이유라 하겠다.²⁷⁴⁾

당시의 인구 규모 역시 동독의 인구는 1,660만 명으로써 서독인구 6,270만 명의 26.5% 수준²⁷⁵⁾으로 현재의 남북한 인구의 비율의 1/2 수준이다²⁷⁶⁾

273) 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2236>(검색일: 2016. 8.14).

274)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1권 분야별 연구: 1.5 통일정책과 재정정책』(서울: 통일부 통일정책실, 2011), p.429.

<표 4-30> 통일 당시의 동서독 인구비율과 2014년 남북한 인구비율

구 분		인 구
동서독	동 독	1,660 만 명
	서 독	6,270 만 명
	서독 대비 %	26.5
남북한	북 한	2,466 만 명
	남 한	5,042 만 명
	남한 대비 %	48.9

* 출처: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1권 분야별 연구: 1.5 통일정책과 재정정책』 (서울: 통일부 통일정책실, 2011), p.429;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검색일: 2016.11. 4)를 근거하여 재구성.

이러한 독일의 예를 고려해 볼 때, 국가통합 이후에 무분별한 남한 기업이나 자본의 북한진출은 북한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주민이나 수용되지 못한 북한군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남한의 구직자들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제 3차 핵실험이후 대북강경정책이 예상되었음에도 2014년 1월초 연두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은 북한의 남한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통일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소위 ‘통일 대박론’은 통일의 주체인 남한과 북한에 공히 적용 되어야 한다. 통일이 되어 남한사람들은 대박이 나고 북한사람들은 취업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이 된지 20년이 지난 2010년의 통계를 보면 삶의 수준에 있어서 동 서독의 격차를 아직도 느끼고 있으며, 노동의 영역과 소득의 영역에서 동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개인의 발전의 기회가 제한된다고 느끼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및 연금 상승률, 실업, 일자리 제공과 관련하여 65~85% 이상의 동독주민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보다는 높지 않으나 구서독 지역에서도 48~68% 정도가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²⁷⁵⁾

275) 위의 책, p.429.

276)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검색일: 2016.11. 4).

만약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3D 업종과 같은 저임금 기피 직업군에만 일하게 된다면, 북한주민들은 결코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비교 우위가 비교적 적었던 과거 북한정권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남북통합과정에서 일정부분 남한기업이나 자본이 통일한국정부의 통제를 받고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북한에 진출 하여야 하며,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해서는 안 되겠다.

더불어 남한의 자본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직업의 질을 위해서도 남한 구직자들의 무분별한 북한 진출이 억제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더불어 일정부분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재교육과 지속적 관리

재교육 이후 비수용 북한군이 취업능력을 확보하면 단순히 취업률 향상에 그치면 안 된다. 이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남한국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함으로 그들이 직장 내에서 잘 적응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지 별도의 기관을 두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은 전술한 바가 있다.

이러한 기구는 직업교육과 직업알선을 위한 조직과는 별도로 북한군과 북한지역 주민의 여론과 성향분석 및 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수렴된 내용이 중앙 정부에 보고되고 보고된 내용이 조치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남한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언론이나 학계, 기타 여론을 형성 할 수 있는 SNS 등이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북한지역에서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통제된 사회주의 체제하에 생활한 북한주민들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자신들의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정관서와는 다른 별도의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남한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행정 기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해소 할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 이러한 경험적 요소가 적고 문화도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상 북한지역에 새로 구성되는 중앙 및 지방 행정조직은 국가통합의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만 하더라도 많은 업무가 예상되며, 따라서 북한주민들과는 별도로 비수용 북한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277) 통일부,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 의식변화 분석』 (서울: 통일부, 2010), pp.21-22.

2. 준군사 분야

북한군 크게 3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첫째로, 비교적 직업이질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군사 분야, 둘째로, 준군사분야, 셋째로 비군사분야이다.

첫 번째 군사 분야는 재교육 과정에서 수용자원으로 분류된 북한군을 말하고, 준군사분야란 경찰, 군사업무관련 민간기업 등을 말하며, 비군사분야는 민간보안업체, 일반기업과 산업시설 등을 말한다.

실제로 군사 분야는 수용 할 수 있는 북한군의 수가 정치·경제적 이유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준군사 분야는 그들의 그동안의 직업특성을 살리면서, 군사통합 및 국가통합에 필요한 분야로써 그 직업군은 다양하고 그 수도 많다고 할 수 있다.

가. 군사통합 분야

군사통합은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없는 일이며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장기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통합과정에서 비수용 북한군을 활용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기존의 북한군 군사시설과 무기들의 저장, 폐기, 해체 분야를 들 수 있다.

<표 4-31> 독일연방군의 구동독군 무기인수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전투장비	• 전차 2,300대, 전투장갑차/특수장갑차 9,000대, 화포 및 대공포 5,000문
소화기	• 약 120 만 여정
항공기	• 전투기 368대, 훈련기 59대 및 헬기 포함 700대
합 정	• 전투합 82척을 포함 총 192척
차 량	• 화물차 약 85,000여 대
탄 약	• 약 29,500톤
액체연료	• 로켓추진 연료를 포함 약 4,500톤

* 출처: 통일부, 『독일통일총서: 군사 분야 통합관련 정책분석』(서울: 통일부, 2013), p.43을 근거하여 재구성.

위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통일독일연방군은 구동독군으로부터 전차 2,300여대를 비롯한 무기와 탄약을 인수하였는데, 연방군은 이를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제 1범주는 계속 사용, 제 2범주는 잠정적 사용, 제 3범주는 폐기로 구분하였다.

제 1범주와 2범주를 합하여 약 10,5%만이 통일독일연방군에서 재사용 되었고, 나머지는 폐기처분 되었으며,²⁷⁸⁾ 폐기처분에 들어간 비용은, 무기판매금액 3억 4천 5백만 마르크였으며, 폐기에 들어간 비용은 14억 1천 6백만 마르크였다.²⁷⁹⁾

1995년 기준 달러당 마르크화의 환율은 1:1.27로서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약 15억 4천 400만 달러로 이를 다시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조 8천 5백 28억 원이며, 이중 순수하게 감시 및 저장을 위해 들어간 비용은 2억 3,890만 마르크로써,²⁸⁰⁾ 원화로 환산하면 약 3조 340억 원이다.

<표 4-32> 구동독군, 무기·장비 처리현황 단위: 대(문/정)

구 분	계	연방군 사용	통일조약에 따른 처리	제3국 제공/판매	박물관 제공/판매	VEBEG를 통한 판매	산업체 파기	
CEO협약상 보유제한 장비	전투기	368대	25	5	21	29	120	168
	공격형 헬기	51대	4		42	5		
	전차	2,761대	138		263	33		2,327
	장갑차	6,050대	120		1,730	50		4,160
	화포(문)	2,199문	38		832	27		1,302
	계	11,429						
기타 CEO 협약대상 장비	기타 장갑차	3,417대	36		998	46		2,337
	훈련용 비행기	52대			24	10	18	
	기타 헬기	134	21	10	10	29	48	16
	계	3,603						

* 출처: 통일부, 『독일통일총서: 군사 분야 통합관련 정책분석』(서울: 통일부, 2013), p.48을 근거하여 재구성.

폐기되지 않은 무기와 장비들은 연방군이 일부 사용하거나 통일조약에 의해 처리, 제 3국에 공여 또는 판매, 박물관에 판매 또는 제공, ‘연방재산매각청(VEBEG)’에 의해 제 3국에 판매되었다.

동독군은 평시에 17만여 명이었으며, 무기는 전시병력 33만 명에 맞춰 있었다. 직장에비군 경우는 약 50만 여명이었으며, ‘군사스포츠협회’ 60만여 명까지 약, 222만

278) 통일부, 『독일통일총서: 군사 분야 통합관련 정책분석』(서울: 통일부, 2013), pp.44-45,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en Abschluß der

Verwertung des überschüssigen Materials der ehemaligen NVA, Bonn, den 30. Juli 1997, p.5.

279) Nina Leonhard, “ ‘Armee der Einheit’: Zur Integration von NVA-Soldaten in die Bundeswehr”, (2006), p.64.

280) Ehlert, Hans, Hrsg,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Berlin: Ch. Links Verlag, 2002), S.525~528.

여명의 예비병력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비해 북한군은 동독의 현역 병력 수준의 7배 이상 많고, 예비군은 약 3.5배가 많다.²⁸¹⁾

주요 무기 및 장비를 비교해 보면 전투기의 경우 2.2배, 전차 1.9배가 많다. 이러한 수치는 남북 군사통합 시 무기 및 장비의 통합 분야는 독일통합의 그 예보다 수배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3> 구동독군과 북한군의 주요장비비교

구 분	세 부 내 용	
	동독 인민군	북한 인민군
전투장비	• 전차 2,300대, • 전투장갑차/특수장갑차 9,000대, • 화포 및 대공포 5,000문	• 전차 4,300대 • 2,500대 • 14,900 문
항공기	• 전투기 368대, 훈련기 59대, 헬기 포함 기타 항공기 등 총 700대	• 전투기 820대, 훈련기 170대, 헬기 포함 기타 항공기 등 총 1,650대
합 정	• 전투합 82척을 포함 총 192척	• 전투합 430척을 포함 820척
예비병력	• 220만 명	• 770만명

* 출처: 국방부, 『2014년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p.239; 통일부, 『독일통일총서: 군사 분야 통합관련 정책분석』 (서울: 통일부, 2013), p.48을 근거하여 재구성.

실제로 연방독일은 초기에 무기와 탄약의 경계를 구동독 군이 수행하였으며, 이후에 연방군에 편입된 구동독군이 연방군 장비와 무기로 무장하고 훈련이 필요해지자, 별도의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방군의 물자를 저장하는 서비스 센터(MDSG)를 설립하고 1992년 8월 7일부터 구동독군의 무기와 장비를 보관하고 감시하게 하였다. 이 MDSG(社)는 실제로 1,820명을 신규 고용하였으며, 고용된 인원은 대부분 구동독군 출신들이었다.²⁸²⁾

둘째로, 군사시설 처리 분야로써, 전술한바와 같이 군사통합 초기에는 기존 주둔지 시설은 재교육 시설로 사용 하다가, 3단계 재교육이 마치고 나면 리 모델링을 통해 이를 활용하거나, 최초부터 불용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나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필요한 노동력은 독일의 예에서처럼 장비 및 물자 처리방법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우선적으로 비수용 북한군을 활용하게 해야 한다.

281) 통일부, 『독일통일 20년 계기: 독일통일·통합정책연구』 (서울: 통일부, 2010), pp.391-392.

282) 통일부, 『독일통일총서: 군사 분야 통합관련 정책분석』, 앞의 책, p.47.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en Abschluß der Verwertung des überschüssigen Materials der ehemaligen NVA, Bonn, den 30. Juli 1997, p.8.

구동독군의 경우는 2,280개의 군 기지 중 405개만을 인수하고 121개 기지를 한시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매각했으며, 최종적으로 매각에 걸린 시간은 4년 이었다(283). 또한 동독인민군 기지를 현대화 하는데 최소 100억 유로가 들어갔다고 판단하였는데(284)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약 127억 달러이며 이를 다시 원화로 환산하면 약 15조 2천 400억 원이다.

통일한국군 규모는 1990년대 초, 독일연방군의 규모와 비슷하므로 그 시설의 현대화 역시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처리시간동안 필요한 노동력은 노동숙련도나 경제효율성의 고려보다, 국가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비수용 북한군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로, 군사분계선을 복원하고 해안선이나 국경 등에 대한 경계시설들을 철거에 활용 할 수 있는데, 특히 군사분계선 지역은 수많은 방호 장애물과 지뢰지대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한 위험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같은 해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 1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결과 남북은 경의선 철도 연결을 합의했다. 합의의 결과로 경의선은 문산~군사분계선까지 약 12km 구간의 단선 철도를 복구하고 통일촌 북단으로부터 군사분계선까지 약 5.1km 구간을 복원하게 되었으며, 북측은 군사 분계선~개성까지의 4.9km의 구간에 4차선을 신설하였다.

<표 4-34> ‘남북군사보장합의서’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남북관리구역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 폭 250m (기존 철도 노반 중심 동 50m, 서200m) • 동해선: 폭 100m (기존 철도 노반 중심 동 70m, 서30m)
지뢰제거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시간: 일일 09:00-17:00, 폭파 공사는 오후에 한정 • 군사분계선 일대 쌍방이 400m로 근접 시 남·북 교대 작업 (남측·화·목 토, 북측·월·수·금)
철도·도로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작업장 거리 200m 접근 시 남·북 교대작업 (남측·월~수, 북측·목~토) • 마감단계 공사를 위해 인원·차량 군사분계선 20m 범위 내에 월경 허용
통신 및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은 유선 2회선(자석식 전화 1회선, 팩스 1회선) 연결 • 경비인원은 10명 이내, 군사분계선 방향은 15명 이내로 운용 * 경비인원은 개인화기 휴대(1인당 실탄 30발), 그외 전투장비 반입 금지

* 출처: 육군본부, 『백서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 (계룡: 육군인쇄창, 2005), p.80을 근거하여 재구성.

283) 위의 책, p.50.

284)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5 국방부』, 앞의 책, p.413.

또한 동해선은 사천리 출입사무소부터 군사분계선까지 약 7km 단선철도 복구와 2차선 도로를 신설하였고,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해 금강산 전망대~군사분계선까지 약 3km의 임시도로를 개설하였으며, 북한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온정리까지 약 18km의 구간에 대해 단선철도와 2차선 도로를 신설 하였다.²⁸⁵⁾

이 두 곳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데 4년이라는 긴 시간과 순수 군에만 약 737억 7,600만원예산이 투입되었으며,²⁸⁶⁾ 공사를 위해 투입된 순수 군 병력만 5,526명이다.²⁸⁷⁾

<표 4-35> 경의선 군 예산 확정(안)

단위: 억 원

구 분	국방부	통일부
계	411.99	325.77
군사/역사 경계시설	79.38	70.02
장비구입	151.31	104.61
지뢰제거	41.84	32.53
토목공사	133.18	112.77
사업단 시설	5.0	4.56
전염병 예방	1.28	1.28

* 출처: 육군본부, 『백서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계룡: 육군인쇄창, 2005), p.429를 근거하여 재구성.

위 표에 명시된 시간과 예산은 단순히 2개소의 통로개설만을 위한 시간과 군에 편성된 예산이며, 투입인원역시 순수 군 병력 만 계산한 것으로 민간인력까지 포함한 다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다.

남측의 경의선의 경우는 도로 폭 52m 와 철도 폭 30m, 동해선의 경우 철도 폭 24m 와 도로 폭 28m을 공사하였는데, 판리구역까지 포함하면 각각 250m 와 100m 의 폭으로 공사가 시행되었다.²⁸⁸⁾

이 두 곳의 비무장 지대에 잇는 지뢰제거 만을 고려해 보았을 때, 2002년 9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1,500점의 지뢰 및 폭발물을 수거 하였는데, 전체 비무장 지대의 규모인 약 동서 길이 250km, 남북 4km로서 면적은 약 1,000km²를 고려한다

285) 육군본부, 『백서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계룡: 육군인쇄창, 2005), pp.81-82.

286) 위의 책, p.429.

287) 육군본부, 『백서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 앞의 책, pp.498-506.

288) 육군본부, 『백서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 앞의 책, p.88.

이러한 소요를 바탕으로 동부, 중부, 서부 3개 사업단으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남북연결도로를 완성하고, 도로연결 사업이 끝나면, 기타지역에 대하여 지뢰제거 제거 사업으로 전환 할 수도 있다.

각 사업단이 기존의 사업단의 규모로 가정하면, 사업단 당 약 10개소의 연결도로를 책임지게 되며, 2개소의 공사기간이 4년임을 고려했을 때, 남북도로개설에만 2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은 비수용 북한군의 고용 창출에 매우 귀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곳에 많은 비수용 북한군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적 여론과 인권문제를 고려했을 때 그들의 안전과 급여, 후생복지 부분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자발적 지원에 의한 취업이 되어야 하겠다.

나. 경찰조직

비수용 북한군이 가장 많이 활용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찰이나 준 경찰 조직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통일한국은 경제·정치·외교적인 문제로 통일 이후의 군사력은 감축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주변국가나 내부적 적대세력들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남북한 통합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설득과 이해가 필요함은 주지한 바가 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길 바라고 미국은 중국의 진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에게는 현 북·중 국경선을 기준으로 상호 약 50km 정도의 공지(空地)지역 두어 지상군을 배치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이 지역을 경찰행정구역화 하고 통일한국과 중국과의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상호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음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게는 한반도 지상군의 주둔 명분은 없어졌지만 중국의 아시아의 패권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함으로 기존의 남한지역 내 군사공항 및 부산항 제주항등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불안을 해소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현 북중국경선에는 많은 경찰자원이 필요하다. 이

러한 소요에 대하여 비수용 된 북한군을 활용하면 많은 수의 비수용 북한군의 직업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표 4-37> 북한 국경선지역 행정구역

국경인접국가	현 북한 행정구역(좌로부터)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안북도 : 신도군, 용천군, 신의주시, 의주군, 삭주군, 함성군, 벽동군, • 자 강 도 : 우시군, 초신군, 위원군, 시종군, 만포시, 자성군, 중강군, • 양 강 도 : 김형직군, 김정숙군, 삼수군, 혜산시, 보천군, 삼지연군, 대흥단군, • 함경북도 : 무산군, 회령군, 회령시, 온성군, 새별군, 은덕군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경북도 : 선봉군, 나진시

*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main/>(검색일: 2016. 9.17)을 근거하여 재구성.

북한과 중국과의 국경선의 길이는 총 1,353.2km 이고 러시아와는 16.2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전체 국경의 총 길이는 1,369.4km이다.²⁹⁰⁾ 이는 휴전선의 길이인 약 250km의 5.5배에 해당하는 길이이며, <표4-37>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총 5개시, 24개 군으로 남한이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행정구역 1개시, 7개 군의 약 3.4배에 이른다.²⁹¹⁾

휴전선의 경우 남북한의 대치상황 때문에 많은 병력이 밀집해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한의 각 도를 담당하고 있는 향토사단의 경우 1개 군에 감편된 1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통일한국과 중국과의 국경에는 23개, 러시아와는 일반 경찰병력과 별도로 500명 정도로 편제된 1개 대대병력 규모의 경찰기동대가 필요하며, 5개시에는 여단급 기동대 본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동대 편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약 기동대 병력 약 12,000여 명과 본부 인원들로 구성할 수 있겠다. 통일이후 북한주민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넘어가 난민이 되면 외교적 문제로 될 수 있고 이는 국가통합에 주변국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방해요소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경 통제 측면과 중국의 우려를 불식 시키는 측면, 더 나아가 중국과 통

290) 통일부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09), p.16.

29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main/portalMain.do>(검색일: 2016. 9.17).

<표 4-39> 남북 해안선 인접행정구역

구분	현 북한 행정구역(좌로부터)
남한지역	강화군, 김포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신안군, 목포시,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고흥군,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남해군,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창원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북한지역	신의주시, 통천군, 철산군, 선천군, 광산군, 정주시, 박천군, 안주시, 숙천군, 룡강군, 남포시, 안악군, 과일군, 장연군, 용진군, 해주시, 연안군, 통천군, 원산시, 문천시, 함흥시, 흥원군, 신포시, 북청군, 리원군, 단천시, 김책시, 길주군, 명천군, 경성군, 청진시, 선봉군

*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main/>(검색일: 2016. 9.17)을 근거하여 재구성.

해안의 경우 국경지역보다 안보적 위협요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중대급 경찰기동대가 해안순찰 및 밀입국 등을 방지하고, 시 지역에는 이를 통제 할 수 있는 규모의 조직이 편성되어야 하며, 광역시는 약 500명, 일반시는 약 200명 규모의 대대급 경찰 기동대를 운용 할 수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해안경비에 필요한 경비병력을 추정해 보면, 실질적으로 해안 경비를 담당하는 기동대의 병력 수는 4,300여 명이고, 광역시 1,500여 명, 일반시 약 7,400여 명으로 13,200여명의 해안경비담당 경찰기동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해안경비 경찰기동대는 지역 내 군부대 및 경찰, 국경지역 경찰기동대들과 함께 관할 행정구역내의 통합방위임무를 수행하며, 이곳에 비수용 북한군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 교정시설

국가통합 초기에 치안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각종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통일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교정하고 교화하는 시설도 필요하다.

이때, 이곳에 현지 주민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북한주민이나 북한군을 활용하는 것이 남한출신들을 활용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남한의 경우 총 1,933,835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이중 1,518,792건이 검거되고, 검거 비율은 78.5%이다.²⁹³⁾ 제도와 문화, 가치관 등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남북한 국가통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자본주의를 지향

하기 때문에 남한인구와의 비교를 해보면 범죄율도 약 50%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국가통합이 이루어지면, 교정시설과 교정요원도 남한인구대비 약 50% 정도 수준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자원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북한교정시설의 인원들의 재임용은 타당하지 않다.

남한의 교정시설은 교정본부 예하에 법무연수원과 서울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있으며, 서울지방교정청예하에 교도소 10개소와 구치소 5개소, 지소 1개소가 있고, 대전지방교정청 예하에는 교도소 7개소, 구치소 1개소, 지소가 2개소가 있으며, 광주지방교정청에는 교도소만 7개소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구지방교정청에는 교도소가 13개소가 있고, 구치소가 5개소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군교도소가 경기도 이천에 있다.

총 수용인원은 2013년 기준으로 46,690명을 수용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 내의 수용시설도 부족한 현실이며, 교도관 1명당 평균 3.2명의 수감자를 관리하고 있어 수용시설의 신축과 더불어 교정 교도관의 수도 증가시켜야 할 상황이다.²⁹⁴⁾

<표 4-40> 남한 교정시설 수용인원 단위: 명

구 분	수용정원	연도 말 수용인원	1일 평균수용인원
2013년	45,690	46,708	47,924

* 출처: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행정』(경기도: 교정본부, 2014), p.64를 근거하여 재구성.

특히 북한은 체제운동과정에서의 비효율성과 경제난 이후 사회 부조리와 일탈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며²⁹⁵⁾, 북한정부조차 공공연하게 마약을 생산하고, 북한주민들의 마약사범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²⁹⁶⁾ 국가통합과정에서 북한지역의 교정시설 수요 증가는 예상 할 수 있겠다.

또한 남한역시도 북한지역의 개발과 투자, 남북주민의 이주 및 교류과정에서 마찰

293) 대검찰청, 『2015년 범죄분석』(대구: 대검찰청, 2015), p.94.

294) 법무부 교정본부, https://www.corrections.go.kr/HP/TCOR/cor_01/cor_1070.jsp(검색일: 2016. 9.17).

295) 통일부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앞의 책, p.337.

296) 중도일보,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증가세, 마약사범 최다”, <http://www.joongdo.co.kr/jsp/article/>(검색일: 2016.10. 2).

의 증가가 예상되고, 물질적 심리적으로 상대적 빈곤을 겪을 북한주민들의 일탈행위도 예상되는 바다. 따라서 현재 남한지역 내의 부족한 수용시설을 2배로 확충함과 동시에 15,171명의 교도관의 수도 현재 4배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교정시설에 수용은 일괄적으로 수용시설 여유가 있는 곳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유형과, 형량, 성별 등에 따라 다르게 수용하고 있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따라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²⁹⁷⁾

북한지역의 경우도 인구대비와 범죄율 증가를 고려하여 남한지역과 동일한 규모의 교정시설과 인원이 확충되어야 하며, 특히, 국가통합 초기의 정치범, 인권관련 범죄자 등의 교화대상자 수용도 필요하므로 북한지역도 남한에 준하는 교정시설이 있어야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소요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41> 국가통합이후 교정시설 수용인원 및 교정인원 확충(안) 단위: 명

구 분	수용인원	교도관 수
계	180,000	120,000
남한 지역	45,690 ⇨ 90,000	15,171 ⇨ 60,000
북한 지역	90,000	60,000

북한지역의 교정시설과 인원의 확충은 예산되는 범죄증가와, 최초단계에서의 필연적인 교화대상자의 교정과 더불어, 국제사회에 통일 한반도의 통합과정이 인권을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 할 수 있으며, 통합대상인 북한주민들에게도 북한의 교화소 수준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중시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교정시설의 확충과정에 필요한 건설, 교도관 지원, 행정업무 분야에 비수용 북한군을 우선 수용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297) 파이낸셜뉴스, “교정시설 수용률 매년 급증해 122.5%... 교화기능 부실에 사건사고 증가도”, <http://www.fnnews.com/> (검색일: 2016.10. 2).

3. 비군사 분야

비군사 분야에 대한 취업은 남북한주민들과 비수용 북한군에게 모두 해당되는데, 동등한 자격조건 하에서 북한주민들 보다 가산점을 주어 비수용 북한군의 생활 안정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겠다.

가. 지방행정조직과 학교교육

국가통합과정에서 통합한국정부는 김일성일가와 사회주의체제의 북한의 정부기능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부형태로 재조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기능과 더불어 지방행정조직도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는데, 행정공무원의 재분류와 이에 따른 소요의 충원을 포함하여 통합초기의 불안한 치안력과 북한주민들의 이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관서에 대한 경비소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과정이 진행되면 치안력확보는 주로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겠지만, 현 남한의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체보안요원들도 필요할 것이며, 그 수 역시 상대적으로 많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북한주민들은 물론이고 기존의 북한정권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던 기득권세력들이 완전히 식별되고 재교육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위협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협을 제거 및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조직 내에 경찰조직과 별도의 지방행정 경호기관이나 민간용역업체가 이 분야를 담당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필요한 적합한 인력은 비수용 된 북한군 중에 정치적으로 문제없는 자원들이 참여 할 수 있다. 남한 출신들로만 구성된 경호 기관이나 민간단체는 지역지리와 정서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북한주민이나 북한군 출신보다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과의 접촉이 많은 직업의 특성상 북한주민이나 북한군출신으로 직원으로 구성된 업체들은 위화감을 덜 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저렴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수용 북한군의 직업안정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비수용 북한군을 고용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또한 학교교육에 관련된 분야에서도 비수용 북한군을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인문사회계열의 과목은 불가피하게 다수의 교원이 교체되어야함으로 교원의 확충과정

에서 남한의 교원자원들과 더불어 자격을 갖춘 북한주민들과 특히, 비수용 북한군에게 가산점등을 통한 우선적인 수용이 있어야 하겠다.

북한의 교원양성과정은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으로 나뉘는데, 남한과 마찬가지로 정규과정은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졸업생들로 충원된다.

비정규과정은 통신대학, 교원사범대학 야간학부 등을 졸업 후 자격검정시험을 거쳐 임용되며, 199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경력자 중, 6개월에서 1년간의 단기과정의 교원양성소를 거쳐 교원이 되는데²⁹⁸⁾, 이 단기과정을 활용하여, 북한주민이나 비수용 북한군들에게 교사직종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임용이 쉬운 교과목은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수학, 자연과학 분야라 할 수 있으며, 행정교직원 역시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한지역의 국·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북한지역의 학교에도 적용 할 수 있는데, 국가통합 초기의 치안상태를 고려해 볼 때 북한지역은 중·고등학교까지 운용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통합초기에는 통합에 불만을 갖거나 국가전복세력, 부랑자, 사회부적응자, 마약사범, 성범죄자 등, 통합초기에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하여,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체제의 우수성과 국가통합의 당위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1993년 이후 북한은 ‘조선중앙연감’을 통해서 매년 총인구만 발표하고 있어,²⁹⁹⁾ 정확한 북한의 학생 수와, 교육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인원, 수용소와 꽃제비 등 거주지 불명의 인원, 북한 내 연령비 등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정확한 교육 대상자역시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인구 대비로 추산해 할 수는 있겠다.

남한 내의 고등학교까지의 전체 학교의 수는 20,623개 이다. 남한의 50% 수준의 북한인구와 남한과 동일한 교육환경을 위해 고려한다면, 북한지역에 약 1만 여개의 학교가 필요하며, 여기에 필요한 학교보안관은 학교당 2명씩, 약 2만 여명의 학교보안관이 필요하며, 고용 규모는 북한지역의 치안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면 되고, 이와 더불어 교사도 이 규모에 맞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298) 통일부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앞의 책, pp.393-394.

299) 위의 책, p.22.

<표 4-42> 2015년 기준 남한의 학교·학생·교원 수 단위: 개/명

구 분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총 계	20,623	6,826,916	488,444	
유치원	8,930	682,553	50,998	
초등학교	5,978	2,714,610	182,658	
중학교	3,204	1,585,951	111,247	
고등학교	소계	2,511	1,843,802	143,541
	일반	1,537	1,278,008	90,878
	특성화	498	302,021	26,588
	특수목적	148	67,529	7,245
	자율형 사립	161	170,708	10,288
	특수학교	167	25,536	8,542

*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chedi.re.kr/index>(검색일: 2016.10. 3)을 근거하여 재구성.

나. 산림 및 수자원 관리

북한은 1995년 12월 「환경보호법시행규정」을 제정하고 2000년 10월에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각종 대형사업과 1980년대 시작된 ‘새 땅 찾기 사업’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고, 특히, 정치적 목적에 따라 주요명산의 절경지역에 김일성일가의 우상화글귀를 새겨놓는 등, 금강산지역에만 70여 개소에 4,500글자와 전국적으로는 390여 개소에 2만여 글자에 달하는 정치문구 등을 새겨 놓았다.³⁰⁰⁾

또한 1990년대 이후,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산림을 농지로 개간하면서 북한산림은 점점 더 황폐해 졌다. 따라서 국가통합과정에서 북한산림의 복구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조림사업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많은 시간과 인력,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장기간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곳에 비수용 북한군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면 장기간 동안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다.

산림관리원의 주된 임무는 우리나라 산림감시원과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전술한 정치적 구호나 글귀들을 제거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수자원의 경우 북한지역의 강과 하천들은 고산지역의 경사가 심한 곳에서 발원하

300) 통일부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앞의 책, pp.375-379.

여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고 수량도 풍부하여 동력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³⁰¹⁾ 이러한 북한의 수자원을 이용하여, 부족한 북한지역의 전력과 사회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지역에는 자연 및 인공 호수가 다수 존재한다. 자연호수로 5km²이상 되는 호수만도 5개에 이르고, 인공호수의 경우도 수풍호를 비롯해 5km²이상의 호수가 25개 이른다.³⁰²⁾ 이러한 호수를 이용하여 관개시설을 정비하면 상수원 및 산업용수로 활용하는데 적합하며, 또한 남북수자원을 연결하는 사업은 대규모 노동력과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곳에 북한주민들을 비롯하여 비수용 북한군을 우선적으로 취업시켜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겠다.

<표 4-43> 5km² 이상의 북한 대표 호수 예

구 분	자연 호수	인공 호수
대표 호수(5km ²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 지 (양 강 도, 9.5km²) • 광포호 (함경남도, 9.0km²) • 장연호 (함경북도, 7.7km²) • 만포호 (함경북도, 8.6k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풍호 (298.2km²) • 운봉호 (104.9km²) • 장진호 (46.1km²) • 부전호 (20.3km²)

* 출처: 통일부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09), p.17을 근거하여 재구성.

다. 건설현장근로자

국가통합과정에서 북한지역개발과 인프라구축을 위해 국가예산과 사회간접자본을 이용한 각종 시설이 확충될 것이다. 국가통합에 필요한 시설을 새로 짓거나 증축 및 개보수, 철거 등 많은 일자리 수요가 있다.

이러한 건설 일자리 수요를 크게 나눠보면, 첫째, 국가통합에 관련된 건설소요로써,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행정시설과 각 통합대상별 관련시설 등이 있으며, 둘째, 사회간접자본에 관련된 건설소요로써, 교통인프라든지 에너지 및 자원관련시설, 도시 개발 및 공공주거시설 등이 있고, 셋째,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민간시설로써, 남한 지역의 민간기업 관련시설이나 북한지역주민의 민간주거 및 편의시설과 등이 있다. 이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1) 위의 책, pp.16-17.

302) 통일부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앞의 책, p.17.

<표 4-44> 북한지역 건설사업 소요 추정(안)

구 분	주요 시설
국가통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지방정부 행정시설 • 군 재배치 시설, 북한군 재교육 시설, 기존 북한군 시설 폐기 • 각종 학교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분교) • 경찰 및 교정시설 • 북한 주민 재교육 시설
사회간접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인프라(공항, 철도, 항만, 고속도로, 지하철) •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발전소, 변전소, 송전탑 등) • 산림 및 수자원 시설 (산림 기관, 정수장, 관개시설 공사) • 도시개발 및 북한 주민 주거시설 • 역사 및 문화재 시설 발굴 및 보수
민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민간기업 진출 (사업장 및 공장) • 북한 주거 및 편의 시설 (은행, 도소매 시장 등) • 북한 주민 여가시설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공원 등)

전술한바와 같이 중앙 및 지방행정시설 공사, 군 관련시설 확충 및 폐기, 학교 및 민간 기업 증개축, 교통인프라 사업구축, 북한주민 주거시설 개선, 사회기반시설 확충, 김일성일가의 우상화조형물 철거 등등, 남북국가통합이 이루어지면, 북한지역의 건설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난개발에 의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대상들은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통합이 되면 북한지역의 개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못한 북한주민들에게는 재교육과 직업 교육이 끝나고 구직능력이 확보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건설 노동자는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창구기도 하거니와 건설전투에 투입된 경험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적응이 빠를 수 있는 직종이기도 하다.

위 표에 제시된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북한지역개발을 위한 건설사업은 이루어 질 것이다. 주지한바와 같이 건설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우선 순위와 적절한 통제에 의한 단계별 추진이 되어야 하며, 비수용 북한군들은 우선적으로 취업을 통한 생활안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4장 3절에서 제시된 비수용 북한군의 활용 방안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4-45>와 같다.

<표 4-45> 비수용 북한군 활용방안 종합

구 분		분 야	비 고
군사통합분야		무기폐기처분	• 폐기 추정 비용 약 3조원, 저장/감시 추정 비용:5천억
		시설관리 및 기지현대화	• 15조 2,400억 원 이상(동독 대비 병력 7배)
		DMZ 남북도로연결	• DMZ 남북 연결도로 31개소 약 3조 1,930억 원
		DMZ 지뢰제거 및 복원	• 미 산정
준 군사분야	치안관련 분야	한중 국경 경비	• 한·중·러 국경경비 약 12,000여명(24개 중대, 5개 대대 규모)
		북한 지역 치안	• 인구대비 약 55,000여명
		한반도 해안 경계	• 약 13,200여명(남북 해안 행정구역 고려)
	교정시설 분야	교정시설 현대화 및 확충	• 남한지역은 2배 규모로 확충, 북한 지역은 남한의 4배
		교도관 확충	• 상동
비 군사분야	정부기관 및 학교	정부기관 경비	• 지방자치단체, 일반 기업, 은행 및 관공서 등
		북한지역 학교 보안관	• 북한 지역 학교 약 10,000여 개 당 2명씩 배치
		북한지역 교사 및 교원	• 북한지역 학교 약 1만개에 필요한 소요의 50% 이하
	산림 및 수자원	조림산업 및 환경 복원	• 미 산정, 고용 기간은 장기간으로 안정적
		산림관리	
		수자원 관리	
	민간 건설	건설현장 노동자	

크게는 군사통합 분야, 준군사분야, 비군사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군사통합 분야는 무기통합과정에서의 무기폐기와 시설관리, 통합 한국군을 위한 시설 및 기지 현대화, 남북도로연결 및 DMZ 복원에 관련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준군사분야에서는 치안 및 교정시설과 관련된 인력 및 시설에 관련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비군사분야에서는 정부기관이나 산림 및 수자원 관리, 민간시설 있어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표에 명시된 분야 이외에도 비수용 북한군의 활용은 다양한 분야에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것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5장 결 론

북한의 제 5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와 한반도의 외교안보정세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북한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권력 장악을 위한 북한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북한엘리트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북한주민들과 일선군인들은 남한을 비롯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탈북을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국제외교 고립에서 오는 북한의 경제난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의 남북한통일논의는 남북한 상호신뢰회복을 위한 대화나 이산가족문제 등에 대한 문제나 남북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통일의 형태를 두고 서로 대화와 대립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와 대립 속에서 북한의 대남도발은 지속되었으며, 오히려 남한은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에 이용당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의 창구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였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개발 등을 통한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은 외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신뢰구축과 호혜의 원칙을 저버리고 있으며,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통일 논의를 추진하기에는 정권의 안정성과 신뢰도의 수준이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은 김일성과 김정일 사망 이후부터 논의되어 왔던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갑작스러운 통일이 가시화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상호신뢰구축과 단계적인 통일 논의는 사실상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인 연구자의 판단이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과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정세를 고려했을 때, 통일의 시기와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없는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통일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어떠한 시기와 방법에 의한 통일이더라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처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연구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남한 내의 통일논의는 남남갈등을 유발할 정도로 양극화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통일의 형태와 방법, 경제적 효과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는 있지

만, 각각의 연구는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연구에 그치거나 학문적 틀에 고정되어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예측하기 어렵고 불완전성과 가변적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과거의 정권보다 남북대화에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의 형태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연구만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통일이 되었을 경우 국가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통일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국가통합은 정치체제는 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는 통일국가로 가정하여 연구하였으며,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남북한 국가통합 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북한군 수용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 하였다.

첫째, 남북한 군사통합은 사회통합과 연계되어 고려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군사통합을 비롯한 각각의 통합대상들은 국가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통일 한국군의 규모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인구 및 국가경제 등을 고려하여 적정선을 선정하되 북한군의 수용은 정치·경제적 한계를 고려하여 독일 수준의 10% 내외를 수용한다.

셋째, 군사통합과정에서 통일 한국군에 수용되지 못한 북한군은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화교육 이전에 군이 주도하여 일정기간 그들의 특성에 맞는 재교육을 시키고, 그들의 직업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국가·사회통합의 위협요소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북한군 직업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국가사업 및 군사·준군사·비군사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의 확보 및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남한자본과 시설의 북한 진출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통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비단 독일의 예뿐만이 아니라도, 통일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날 수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은 분명히 우리민족에게 큰 이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북한 김정일 정권은 통일의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개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고, 정통성 없는 세습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엘리트그룹과 주민들을 통제·탄압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주민들의 인권탄압문제는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어느 국가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1인 독재 세습체제는 불과 60여년 사이에 수천 년을 같이 살아온 우리민족 정신과 문화를 이질화 시켰으며, 급기야 유전적 특징마저도 바꿔 놓을 정도로 만행을 저질러 왔다. 5천 년 한민족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더 이상 북한의 기형적인 1인 독재체제는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와 호혜의 정신으로 통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그러한 환경을 북한 정권 스스로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권의 정통성이 없고, 식물국가 상태이며, 북한주민들에 대한 비인권적인 공포정치로 간신히 수명연장을 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와해되었을 때, 한반도 통일국가의 완성을 위해 북한주민들과 특히, 반사회적 무장 세력으로 전락할 수 있는 비수용 북한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는 정책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구의 주제와 제목을 선정한 이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정책으로의 회귀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대북 강경정책이 예상되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굴기와의 패권이 강화되고 특히, THAAD배치를 문제로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과 러시아의 아시아정책 등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세부적인 부분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더욱이 북한에 대한 공개된 정보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과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은 그 완성도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역시 군사 분야에 국한되어 연구된 경향이 있으며, 경제·사회·문화예술·역사 등 각각의 통합의 대상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추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또한 각각의 통합의 대상들이 국가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각각의 대상들에게 미치는 긍정·부정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추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제와 제목에 대해 방향성을 한정하고, 또한 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논조로 기술하여 논문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사실상 비수용 북한군의 재교육과 직업알선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은 각개 각층의 전문가와, 통일논의에 있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선택의 기준을 가진 집단 간에 많은 토의와 연구를 통해 그 간격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다.

국민적 합의가 없이 국가권력의 독단적인 결정은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국가통합에 저해 또는 위협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논문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국가통합 단계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 가정으로 한정된 것은 실천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으나, 실제로 북한의 급변사태 이후 북한지역 내 새롭게 정권을 장악한 세력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수용을 위한 합의에 이른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 시간이 소요 될 것이며, 극단적으로 남북한 통합이 북한지역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면 남북한 국가통합을 위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다만 전술한바와 같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남북한 국가통합을 위한 구상과 과정에 있어서 실천적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총론이나 선언적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국가통합의 구상과 방법은 국제외교안보환경과 동북아 정세 및 남북한 관계에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진하고, 통일과정에서 실천적인 부분은 모델화 하여 대비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고찰하면서 차후 관련 연구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할 수 있겠다.

첫째, 남한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국가통합 준비기구’에 대한 기능과 역할, 권한과 책임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정부를 비롯하여 현재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각각의 통합의 대상들에 의한 개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을 통합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국가통합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기구는 남한의 정치적 변화, 요컨대 정권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연구의 방향성을 선회하는 등의 소모적인 행태는 지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 등, 국가권력의 정치적 성향과는 상관없는 항속적인 기구가 운용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구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의 범위가 개별적인 통합의 대상들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통합의 대상에게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통합과 사회통합이 유사한 연구로 인해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시간과 노력, 예산 등이 중복될 수 있고, 반대로 군사통합이 경제통합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된다면 실현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탁상공론식 연구가 될 것이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통합의 대상들은 자기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에 선행하여 자신의 통합분야가 다른 통합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국가통합에 있어 각각의 통합대상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주변국에게 이익을 해치지 않고 상호호혜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독일통일의 예는 물론이거니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강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내의 통일국가에 대한 정책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동적인 이러한 상황에 적시에 대응 할 수 있는 외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자국에 분명히 이익이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통일 구상

이나 과정에서 주변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에 대하여 우리는 중국에게 전향적으로 제안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미국 이익 침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 줘야 한다.

한반도 통일국가 수립에 있어 미·중·일·러 등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원론적으로는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간다면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실제로 현 동북아와 한반도 상황도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연구나 탁상공론식의 연구가 아닌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인 연구가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심도 있게 연구되어 적시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북한 국가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며, 또한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연구 결과의 실행을 위해서는 각각의 통합대상들의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하기에는 본 연구자의 전문성의 한계로 어려웠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남북통일 과정에서 각각의 통합의 대상들 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결과가 상호수용과 융합을 통해 한반도 통일국가 수립에 대한 연구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가. 단행본

- 교육부,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충청남도: 홍보담당관실, 2016.
- 국방부, 『2014년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 김계동, 『남북한 체제통합론』, 서울: 명인문화사, 2006.
- 김기흥, 『신편 한국사: 제 9권(통일신라): II. 전제왕권의 확립』,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2.
- 김대식 엮음, 『EBS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서울: 신지원, 2012.
- 김동명,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파주: 한울, 2010.
- 김산호, 『대주신제국사 I』, 서울: 동아출판사, 1994.
- 김수남, 『분단국통일의 필요조건과 충분조: 사례연구를 통해서 얻은 교훈』, 서울: 봉명, 2006.
-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파주: 법문사, 2013.
- 김영탁, 『독일 통일과 동독재건 과정』, 파주: 한울, 1997.
- 김의식, 『남북한 군사통합과 북한군 안정화 전략』, 서울: 선인, 2014.
- 김종욱 번역, 『승리의 교훈, 베트남 전쟁』,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 김학준, 『소련정치론』, 서울: 일지사, 1976.
- 대검찰청, 『2015년 범죄분석』, 대구: 대검찰청, 2015.
- 동아일보사 안보통일문제연구소, 『중공의 어제와 오늘』, 서울: 동아일보사, 1997.
- 박병식, 『남북통일 비용과 편익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박병석 의원실, 2012.
- 박상식, 『국제정치학』, 서울: 집문당, 1986.
- 박용운, 『신편 한국사: 제 12권(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I.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2.
- 박제규, 『냉전과 미국의 아시아정책』, 서울: 박영사, 1981.
- 박준홍, 『한반도 평화와 안보』, 서울: 박영사, 1985.
- _____, 『경제의 문 여는 북한, 미래의 돌파구로 활용하자』, 서울: 포스코 경영연구원, 2015.
- 백경남, 『국제관계사』, 파주: 법문사, 1990.

- 연합뉴스, 『북한연감』, 서울: 연합뉴스, 2001.
-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2014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준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 서울: 서울대학교, 2014.
- 송철의,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2015.
- 신채호 원저, 박기봉 옮김, 『조선상고사』, 서울: 비봉, 2007.
- 안병준, 『강대국관계와 한반도안보론』, 파주: 법문사, 1986.
- 양명희, 『북한의 조선말사전(학생용) 분석』,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2002.
- 역사인물편찬위원회 지음, 『불멸의 세월: 김유신』, 서울: 역사디딤돌, 2009.
- 연합통신, 『북한연감』, 서울: 연합뉴스, 2003.
- 오수열, 『강대국의 동북아 정책 및 한반도』, 부산: 신지서원, 2004.
- 유제현, 『월남전쟁』, 파주: 한울, 1992.
- 유지호, 『예멘의 남북통일-평화통일의 매혹과 위험성』, 서울: 서문당, 1997.
- 육군본부, 『백서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 계룡: 육군인쇄창, 2005.
- _____, 『전역예정간부를 위한 2016년 전직지원교육 및 행정 안내서』, 계룡: 육군인쇄창, 2016.
- 윤근식, 『현대국제정치론』, 파주: 대왕사, 1991.
-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서울: 박영사, 2013.
- 이영희, 『베트남 전쟁』, 서울: 두레, 1991.
- 이준선 외, 『한국역사지리』, 서울: 푸른길, 2011.
- 이중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파주: 한울, 1998.
- 이호영, 『신편한국사: 제 9권(통일신라): I. 삼국통일』,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2.
- 일 연,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서울: 을유문화사, 2003.
- 조재관, 『국제정치학』, 파주: 법문사, 1976.
- 조한범 외 3명,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 분야』,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존 편스톤 엮음, 정연석 외 옮김, 『동남아의 정부와 정치』, 서울: 심산, 2004.
- 주독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 서울: 통일부, 1993.
- 최경락 외, 『한일관계론』, 파주: 대왕사, 1985.
- 최용호, 『물어보세요!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최종기, 『소련외교정책론』, 파주: 법문사, 1988.

- 토모다 세키(友田 錫) 저, 양창식 역, 『배반당한 베트남 혁명: 튜뉴탄의 증언』, 서울 : 알파, 2002.
- 통계청, 『2014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서울: 통계청, 2014.
- 통일부, 『2000년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0.
- _____,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 의식변화 분석』, 서울: 통일부, 2010.
- _____, 『독일통일총서: 군사 분야 통합관련 정책분석』, 서울: 통일부, 2013.
- _____,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1권 분야별 연구: 1.5 통일정책과 재정정책』, 서울: 통일부 통일정책실, 2011.
- _____,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3 교육부』, 서울: 통일부 통일정책실, 2011.
- _____,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 2권 부처·지방정부연구: 2.5 국방부』, 서울: 통일부 통일정책실, 2011.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년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5.
- _____, 『2016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5.
- 통일부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09.
- _____, 『2016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5.
- 하정렬, 『한반도의 평화통일 전략』, 서울 : 박영사, 2004.
- 황병덕 외,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 독일 20년 발전상』, 서울: 늘품플러스, 2011.
- 황진환,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서울: 봉명, 1998.
- Katherine Palmer Kaup 편, 민병오 외 3 옮김, 『현대동아시아의 이해』, 서울: 명인문화사, 2008.

나. 논문

- 강봉구,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20권 1호,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996.
- 강원식,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한반도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논총』, 제5집, 관동대학교 동북아평화연구소, 2000.
- 고재남, “전환기에 있어서 러시아 정치 및 경제,” 『국제관계연구』, 제9집, 충북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1996.
- 권태영·김수영,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국방논총』, 제 20호, 한국국방연구원, 1992.

- 금상문, “남북예멘의 통일노력과 통일장애에 대한 소고”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10집, 한국중동학회, 1989.
- 김국신, “예멘통합 군사연구”, 『연구보고서』, 93-19, 민족통일연구원, 1993.
- _____, “예멘 統一方式이 한반도 統一에 주는 示唆點”, 『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집』, 세미나시리즈 94-04,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덕중, “소련개혁정책의 성과가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3권 2호, 통일원, 1991.
- 김세균, “소련의 평화옹호정책: 그 국제정치적 파장,” 『사회와 사상』, 1989 9월호
- 김재창, “미국의 군비축소 실태 및 그 과정 분석,” 『국방학술 논총』, 제 10집, 한국국방연구원, 1996.
- 김정옥, “미국의 신아·태전략과 한국의 국방,” 『국제정치논총』, 제35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5.
- 김태효,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한반도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논총』, 제5집, 관동대학교 동북아평화연구소, 2000.
- 박주현, “통일에 따른 국방 분야의 비용 및 효과,”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국방연구원, 2014.
- 박홍석, “일본과 한반도 안전보장의 지정학 담론,”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0.
- 서동만, “북일수교 전망과 정치·경제적 대응과제,” 『통일경제』, 제 63호, 현대경제연구원, 2003.
- 안인혜, “최근 중조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 가능성,” 『통일경제』, 제55호, 현대경제연구원, 1990.
- 알렉산더 티모닌, “북러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북한 경제의 오늘과 내일』,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 유종해, “동남아 안보정세와 동북아 안정과의 연계성,” 『국제문제』, 1985년 2월호, 사회과학원, 1996.
- 유지호, “예멘 統一 以後 問題點-政治·軍事 問題點을 中心으로”, 『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집』, 세미나시리즈, 94-04,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이노구이 다카시, “2차 대전 이후의 일본과 아시아,” 『계간사상』, 여름호, 사회과학원, 1996.
- 이영주,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한중수교전망”, 『통일문제연구소』, 제3권 2호, 통일원, 1991.

- 정종욱, “4대 국가의 한반도정책,” 『계간사상』, 제 12권 3호, 사회과학원, 2000.
- 제나디 추프린(Gennady Chufirin),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정책: 변화하는 목표들,” 『계간세상』, 제8권 2호, 사회과학원, 1996.
- 주용식,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연구”,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2014.
- 한관수, “통일한국의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2.
- 현인택, “일본의 역량: 그 허상과 진실,” 『계간사상』, 제 3권 2호, 사회과학원, 1991.
- 홍완석, “푸틴시대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전략: 분석과 전망,” 『국가전략』, 제6권 3호, 세종연구소, 2000.
- Michael Oksenberg,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계간 세상』 제 9권 3호, 사회과학원, 1997.
- Mikhail L. Titarrenko, “극동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한러관계: 러시아측 관점”, 『중소연구』, 제20권 2호,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996.

다. 기 타

- 삼국사기 제13권 고구려본기 제1(三國史記 卷第十三 高句麗本紀 第一)
- 三國志 권 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夫餘·濊·東沃沮.
- 경찰청, <http://www.police.go.kr>.
-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http://db.history.go.kr>.
- 국제연합(UN), <http://www.un.org>.
-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https://reunion.unikorea.go.kr>.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
- 매일경제, <http://news.mk.co.kr>.

법무부 교정본부, <https://www.corrections.go.kr>.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헤럴드 경제 뉴스, <http://news.heraldcorp.com>.
TOPIK 한국어능력시험, <http://www.topik.go.kr>.
UN, <http://www.un.org>.
YTN 뉴스, <http://www.ytn.co.kr>.

2. 외국 문헌

가. 단행본

Arend Lijphart,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9.

Benjamin Baber,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New Ag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en Abschluß der Verwertung des überschüssigen Materials der ehemaligen NVA*, Bonn, den 30. Juli 1997.

Dillip Hiro, *INSIDE THE MIDDLE EAST*,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82.

Ehlert, Hans, Hrsg, *Armee ohne Zukunft. Das Ende der NVA und die deutsche Einheit*. Berlin: Ch. Links Verlag, 2002.

Fred Halliday, *Arabia Without Sultan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4.

Graham Allison and Phillip Zelikow,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2nd edition, New York: Longman, 1999.

Hans-Joachim Gießman, *Das unliebsame Erbe: Die Auflösung der Militärstruktur der DDR*, Baden-Baden: Nomos, 1992.

J. S. Nye, *Peace in Parts: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 Boston: Little, 1971.

Pietter Farwick, *Ein Staat-Eine Armee: Von der NVA zur Bundeswehr*, Bonn: Report, 1992.

Pietter Farwick, *Ein Staat-Eine Armee: Von der NVA zur Bundeswehr*, Bonn: Report, 1992.

Ronald Lewcock, *The Old Walled City of Sanaa*, UNESCO, 1986.

Text of Tayif Agreement, *Yemen Times(Sanaa, Yemen)*, February 6, 1995.

Vadim Medish, *The Soviet Union*, New Jersey: Prentice Hall, 1991.

나. 논문

Christine Kalenborn and Christine Lessmann, "The Impact of Democracy and Press Freedom on Corruption: Conditionality Matter," *Journal of policy Modeling*, vol. 35, no. 9, 2013.

Elise Boulding, "Peace Culture: the problems of Managing of Human Difference," *Cross Currents*, vol. 48, no. 4, 1998.

Flassbeck, Heiner und Horn, Gustav A, "German Unification - an Example for Korea? Aldershot"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Limited* , 1996.

James Fearon, "Domestic Political Audience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3, 1994.

Johan Galtung, "A Structural Theory of Integr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 No. 4, 1968.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Community," in *International Political Communities*, Anchor Anthology, New York: Doubleday, 1966.

Siegfried Kupper, "Die Inner deutschen Wirtschaftsbeziehungen und ihr politischer Stellenwert," *Politische Bildung*, January, 1990.

Susanne Karstedt and Gary Lafree, "Democracy, Crime Justic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05, 2006.

William R. Thomson, "Identifying Rivals and Rivalries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5, no. 4, 2001.